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양미선·김은영·엄혜경



연구보고 2019-0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양 미 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염 혜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 2019-0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대로 2558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리드릭 02) 2269-191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04-3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함께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였고, 교육부도 유아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유아학대 예방 CCTV 설치를 제시하였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아동학대 발견의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부모의 열람권과 교사의 프라이버시권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설치 목적이었던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CCTV 설치와 같은 소극적 대처방안 외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기관 보육·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정책화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서울시, 송파구, 굿네이버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송파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부모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4. 연구범위 및 한계	21
II. 연구의 배경	23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25
2. 관련 법 및 제도	27
3. 아동학대 예방·조치·사례관리	32
4. 아동학대 관련 연구 분석	38
III.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교육 실적	49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51
2.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	68
IV.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의견	95
1.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97
2. 아동학대 관련 교육	111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119
4. 시사점	138

V.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3
1. 개요	145
2. 사업 내용	147
3. 시범사업 성과	153
VI. 정책 제언	157
1. 아동 및 부모, 교사 인권 감수성 강화	159
2. 기관-부모 간 신뢰 회복	161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162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개입체계 개편	162
5. 맺는 말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73
부록	177
부록 1. 부록 표	177
부록 2. 조사표	180
부록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교육자료	186



표 목차

〈표 Ⅰ-3- 1〉 조사 내용	16
〈표 Ⅰ-3- 2〉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17
〈표 Ⅰ-3- 3〉 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	18
〈표 Ⅰ-3- 4〉 사업 내용	20
〈표 Ⅱ-1- 1〉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6
〈표 Ⅱ-2- 1〉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조문	31
〈표 Ⅱ-3- 1〉 2018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34
〈표 Ⅱ-3- 2〉 아동학대 관련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결 사례	36
〈표 Ⅱ-4- 1〉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예측요인 분석	40
〈표 Ⅱ-4- 2〉 아동학대 전달체계 선행연구	45
〈표 Ⅲ-1- 1〉 연도별 신고 접수건수	51
〈표 Ⅲ-1- 2〉 신고자 유형	53
〈표 Ⅲ-1- 3〉 경찰 통보 건수	55
〈표 Ⅲ-1- 4〉 신고접수 경로	55
〈표 Ⅲ-1- 5〉 현장조사 횟수	56
〈표 Ⅲ-1- 6〉 현장조사 동행현황	57
〈표 Ⅲ-1- 7〉 아동학대 발생 장소	58
〈표 Ⅲ-1- 8〉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59
〈표 Ⅲ-1- 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 아동 성별	60
〈표 Ⅲ-1-10〉 피해 아동 연령	61
〈표 Ⅲ-1-11〉 시설종사자 유형별 피해 아동 특성	62
〈표 Ⅲ-1-12〉 어린이집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62
〈표 Ⅲ-1-13〉 유치원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63
〈표 Ⅲ-1-1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63
〈표 Ⅲ-1-15〉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	64
〈표 Ⅲ-1-16〉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특성	65
〈표 Ⅲ-1-17〉 아동학대 사례 유형	66
〈표 Ⅲ-1-18〉 피해 아동 초기 조치결과	67
〈표 Ⅲ-1-19〉 피해 아동 최종 조치결과	68

〈표 Ⅲ-2- 1〉 2018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실적	69
〈표 Ⅲ-2- 2〉 2018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69
〈표 Ⅲ-2- 3〉 3개년 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집합교육) 현황	70
〈표 Ⅲ-2- 4〉 2018년 기타 안전교육 현황	70
〈표 Ⅲ-2- 5〉 3개년 간 기타 안전교육 현황	71
〈표 Ⅲ-2- 6〉 2018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역별 추진 현황 :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72
〈표 Ⅲ-2- 7〉 3개년 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 현황 :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73
〈표 Ⅲ-2- 8〉 3개년 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내용	73
〈표 Ⅲ-2- 9〉 시·도 교육청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보장 교육 내용	75
〈표 Ⅲ-2-10〉 2019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개요	78
〈표 Ⅲ-2-11〉 2019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내 아동학대 및 권리 지표	82
〈표 Ⅲ-2-12〉 제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개요	82
〈표 Ⅲ-2-13〉 제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내 아동학대 및 권리 지표	86
〈표 Ⅲ-2-14〉 어린이집 지도점검 아동학대 위반 처분기준	87
〈표 Ⅲ-2-15〉 부모모니터링 지표	88
〈표 Ⅲ-2-16〉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내 아동학대 지표	89
〈표 Ⅲ-2-17〉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크리스트 비교	90
〈표 Ⅲ-2-18〉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 비교	91
〈표 Ⅳ-1- 1〉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어린이집	98
〈표 Ⅳ-1- 2〉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유치원	98
〈표 Ⅳ-1- 3〉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 어린이집	99
〈표 Ⅳ-1- 4〉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 유치원	100
〈표 Ⅳ-1- 5〉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 어린이집	101
〈표 Ⅳ-1- 6〉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 유치원	102
〈표 Ⅳ-1- 7〉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 어린이집(1+2순위)	103
〈표 Ⅳ-1- 8〉 제 특성별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 어린이집(1순위)	103
〈표 Ⅳ-1- 9〉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유치원(1+2순위)	104

〈표 IV-1-10〉 제 특성별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 유치원(1순위)	105
〈표 IV-1-11〉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 어린이집(1+2순위)	106
〈표 IV-1-12〉 하루 일과 중 제 특성별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어린이집(1순위)	106
〈표 IV-1-13〉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 유치원(1+2순위)	107
〈표 IV-1-14〉 제 특성별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유치원(1순위)	108
〈표 IV-1-15〉 아동학대 행위 발견 또는 목격 시 대처행동: 어린이집	109
〈표 IV-1-16〉 아동학대 행위 발견 또는 목격 시 대처행동: 유치원	110
〈표 IV-2-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	112
〈표 IV-2-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유치원 ···	113
〈표 IV-2- 3〉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 된 교육기관 : 어린이집	114
〈표 IV-2- 4〉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 된 교육기관 : 유치원	115
〈표 IV-2- 5〉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116
〈표 IV-2- 6〉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유치원	117
〈표 IV-2- 7〉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 중 가장 도움된 교육기관: 어린이집 ·	118
〈표 IV-2- 8〉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 중 가장 도움된 교육기관: 유치원 ···	118
〈표 IV-3- 1〉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119
〈표 IV-3- 2〉 기관-가정 간 신뢰 관계 형성된 어린이집 CCTV 미설치 관련 의견: 어린이집	120
〈표 IV-3- 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유치원	121
〈표 IV-3- 4〉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유: 유치원	122
〈표 IV-3- 5〉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 유치원	122
〈표 IV-3- 6〉 기관-가정 간 신뢰도: 어린이집	123
〈표 IV-3- 7〉 기관-가정 간 신뢰 회복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어린이집 ···	124
〈표 IV-3- 8〉 기관-가정 간 신뢰도: 유치원	125
〈표 IV-3- 9〉 기관-가정 간 신뢰 회복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유치원	126

〈표 IV-3-10〉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인권 보호 정도: 어린이집	127
〈표 IV-3-11〉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인권 보호 정도: 유치원	127
〈표 IV-3-12〉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어린이집	128
〈표 IV-3-13〉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유치원	129
〈표 IV-3-14〉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어린이집	130
〈표 IV-3-15〉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유치원	131
〈표 IV-3-16〉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어린이집	132
〈표 IV-3-17〉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유치원	132
〈표 IV-3-18〉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어린이집	134
〈표 IV-3-19〉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반대 이유 : 어린이집	134
〈표 IV-3-20〉 유치원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유치원	135
〈표 IV-3-21〉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 유치원	135
〈표 IV-3-22〉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필요성 - 아동: 어린이집	136
〈표 IV-3-23〉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필요성 - 아동: 유치원	137
〈표 V-2- 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148
〈표 V-2- 2〉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1회차 프로그램 내용	149
〈표 V-2- 3〉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회차 프로그램 내용	150
〈표 V-2- 4〉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4회차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151
〈표 V-2- 5〉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 프로그램 내용	152
〈표 V-2- 6〉 아동 권리 보장 및 학대 예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153



그림 목차

[그림 II-3-1] 아동학대 개입절차	35
[그림 III-1-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2
[그림 III-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54
[그림 III-1-3]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장소	58
[그림 III-1-4]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60
[그림 III-1-5]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특성	66
[그림 IV-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2순위	104
[그림 IV-1-2]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 1+2순위	108
[그림 IV-1-3] 아동학대를 목격(발견) 했을 때 대처행위	111
[그림 IV-3-1]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129
[그림 V-1-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일정	147
[그림 V-1-2]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진행 일정	147
[그림 V-2-1]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1회기 원장 및 교사 교육	149
[그림 V-2-2]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회기 대표교사 교육	150
[그림 V-2-3]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3회기 교사 워크숍	151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Ⅲ-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77
〈부록 표 Ⅲ-2-2〉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178
〈부록 표 Ⅲ-2-3〉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179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원인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정책 화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함.
-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사건 판례를 검토함.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황 및 추이를 살펴봄.
-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내용을 파악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 점검체크리스트(안)을 마련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및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선행 연구 등을 수집·분석함.

-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대법원 판례 자료, 아동학대 예방·조치·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관련 제도 및 가이드라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 및 참여 현황, 교육 내용 등을 수집·분석함.
-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누적·관리되고 있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및 한국어린이집유치원총연합회, 교사, 원장, 굿네이버스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에 운영될 프로그램을 개발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에는 예산이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유치원 대상 시범사업은 2020년 연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함.
 - 중앙정부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보육사업으로 추진 시 운영주체, 사업 대상, 점검 지표, 사업내용(또는 프로그램) 등을 개선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등 관련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 및 방법, 시범사업 운영, 조사 문항, 정책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2.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의견

가.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원인이 아동 개인요인인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78.2%는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 12.2%는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를 선택함.
 - 유치원 교사 77.1%는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으며, 14.5%는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 5.3%는 기질을 꼽음.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요인인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6.2%는 직무스트레스, 29.8%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11.3%는 아동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을 들음.
 - 유치원 교사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가 34.4%, 직무스트레스 31.7%,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이 16.8%, 나머지는 5% 미만 정도임.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환경 요인인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8.7%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8.9%는 과도한 업무량, 11.3%는 장시간 근무시간, 7.6%, 7.1%는 각각 교사처우와 교사양성과정 문제 순임.
 - 유치원 교사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50.8%, 과도한 업무량 21.4%, 장시간 근무시간 9.5%, 교사 양성과정 문제 5.7% 순임.
- 어린이집 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84.0%, 교사 처우 54.6%, 교사 휴게시간 21.0%, 교사 양성과정 16.0% 순임.
- 유치원 교사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83.6%, 교사 처우가 43.1%, 교사 양성과정 23.7%, 교사 휴게시간 21.0%, 교사 현직교육 10.7% 순으로 답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일과시간을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급식시간이 62.6%고,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57.1%, 낮잠시간 25.6%, 하원시간 23.5% 순임.
- 유치원 교사는 급식시간 60.7%, 오전 자유놀이와 방과후과정시간 각각 36.3%, 32.8%, 하원시간 18.3%, 등원시간 13.7%,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 시간 12.6% 순임.
-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38.7%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 48.7%는 고민, 2.1%는 못 본체한다고 답함.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51.3%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 36.1% 고민한다고 답하였고, 기타 의견도 11.8% 정도임.
- 유치원 교사가 원장동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에는 목격 즉시 신고한다 42.4%, 고민한다 47.7%, 못본체 한다 0.4% 정도임.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61.5%는 목격 즉시 신고한다, 31.7%는 고민한다, 6.9%는 기타 의견을 제시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9.6%가 2018년 한 해 동안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고, 교육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80.2%, 재직 중인 어린이집 46.8%, 인권교육전문기관 26.2%, 시도청 16.5% 순임.
 - 유치원 교사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97.7%가 2018년 한 해동안 1시간 이상 이수를 받았고, 교육기관은 재직 어린이집/유치원 58.6%, 시도교육청 55.5%, 인권교육 전문기관과 유아교육진흥원 각각 19.5%, 17.2%, 기타 10.2% 순임.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7.9%가 2018년 1년 한해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고, 교육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0.7%로 많음.
 - 유치원 교사 중 93.1%만 2018년 한해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고, 교육기관은 시도 교육청이 59.8%로 다수를 차지함.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교사 중 26.4%만 동의하고, 동의정도는 5점 평균 2.6점임.
 -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68.5%가 찬성하고 동의정도는 5점 평균 2.9점임.
-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유치원 교사 중 44.7%가 찬성함.
 -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유로 교사의 인권 보호가 39.3%임.
 -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로 43.4%가 교사 교권 침해 꼽음.
-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4.1%는 부모의 인권 인식, 25.6%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13.9%는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13.0%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선택.

- 유치원 교사 중 54.2%는 부모의 인권 인식, 26.0%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8.8%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8.0%는 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 지적함.
- 교사 인권 보호 정도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9.7%, 유치원 교사 중 22.1%만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함.
 -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로 어린이집 교사 중 62.1%, 유치원 교사 중 71.3%는 부모를 지목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교사 인권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69.3%, 유치원 교사는 55.0% 정도에 그침.
 -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56.7%, 유치원 교사 중 71.4%는 도움된다고 답함.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채용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5.8%, 유치원 교사 중 98.5%가 찬성함.
- 아동학대 발생시 해당 어린이집 이용하는 다른 아동, 재직 교사 대상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 사례관리는 92.9%, 교사 사례관리는 9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유치원 교사 중 아동 사례관리는 98.1%, 교사 사례관리는 96.9%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개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 권리 민감성 향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이해 증진과 영유아인권 옹호자로서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둬.

-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통해 시범사업 추진 지역 선정하고, 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총 408개소 중 시설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개소를 선정함.
- 시범사업에 실시될 프로그램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 시범사업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
 - 시범사업 협의체와 설명회에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이 아닌,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를 반영함.

나. 시범사업 성과

-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권리 보장으로 관점을 전환함.
 - 어린이집을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인권 및 권리 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함.
-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둠.

4.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체크리스트와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개발함.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는 아동, 보육교사, 보육환경, 교육 및 연수 4개 영역, 총 16개 지표로 구성

5. 정책 제언

- 어린이집·유치원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보다는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 교육으로 관점 전환함.

-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대부분 아동권리 보장에서부터 아동학대 처리 절차까지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교육을 추진함.
- 부모 자신도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아동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장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모두 학부모를 꼽음.
- 아동학대 발생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부모 포함)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이용 아동 뿐만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함.
-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부모, 관계기관 면담에서 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 다수의 피해가 파악됨.
-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를 강화함.
 - 어린이집·유치원의 개방성을 높이고, 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회복함.
-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부분 대집단으로 실시되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표교사 연수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보급이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동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파견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육·유아교육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함.
 - 보육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유놀이 활동이 방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례의 사전 예방이 가능함.
- 아동학대 조정위원회에 아동, 유아교육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고, 보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범위 및 한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학률 40% 확대 등을 설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2017)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은 미래사회 투자’ 라는 목표 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아동학대, 건강·영양·안전, 보조금 유용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와 더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 CCTV 운영관리, 신고포상금 제도 등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육부도 유아교육혁신방안(2017)을 통해 유아학대 예방 CCTV 설치를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4년 어린이집 273건, 유치원 94건 정도이었으나 2018년 3월 기준 어린이집 825건, 유치원 26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학대행위자로 동 기간 동안 보육교직원 267명, 유치원종사자 93명에서 보육교직원 815명과 유치원교사 및 교직원이 276명으로 유치원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7). 그리고 2015년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아동학대 발견의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부모의 열람권과 교사의 프라이버시권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설치 목적이었던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강은진·이정림·조혜주, 2015).

한편,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영유아

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 및 영유아를 위한 심리적 안전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157)의 연구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교사의 심리적 건강 문제, 자격취득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과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한 바 있고, 많은 연구(김은영 외, 2016: 174; 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들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의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강화,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관련 상담, 영유아 행동문제 지도에 대한 상담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의 다양한 원인이 제기됨에 따라 CCTV 설치와 같은 소극적 대처방안 외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기관 보육·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원인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정책화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원인 및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사건 판례를 검토하였다.

셋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

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 학대유형, 조치 현황 등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내용을 파악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 및 참여 현황을 정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참여, 부모-기관 간의 신뢰관계 회복 방안,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여섯째,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 점검체크리스트(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일곱째,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및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선행연구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대법원 판례 자료, 아동학대 예방·조치·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관련 제도 및 가이드라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 및 참여 현황, 교육내용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나. 아동학대 통계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누적·관리되고 있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자료를 추출하여 아동학대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별(어린이집·유치원) 신고접수 건수,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 학대유형, 조치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다. 조사 연구

1) 조사개요

2018년 말 기준 어린이집은 39,171개소이고(보건복지부, 2019; 2), 유치원은 9,021개원으로(KESS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기관 유형 및 정원규모,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각 300개소를 임의 추출하여 해당 어린이집·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 조사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기관-가정 간의 신뢰 강화 방안, 교사 인권보호 등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3-1>에 정리하였다.

<표 I-3-1>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운영	- (공동) 기관 유형, 정원, 현원, 시도, 지역규모 등 - 담당 연령, 담당 아동 수, 출퇴근시간 - 연령, 성별, 최종학력, 최초 교사자격 취득기관
아동학대 관련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여 여부, 교육기관, 도움되는 기관 -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 여부, 교육기관, 도움되는 기관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 아동학대 원인(아동, 교사, 환경 요인), 아동학대 예방 위한 개선 방안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높은 일과 시간 - 원장 및 교사 아동학대 목격 또는 가정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행동 - CCTV의 교사 인권 보호 도움 정도, 기관-가정 신뢰관계 형성 시 미설치 관련 의견, 유치원 CCTV의무화 관련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화 관련 의견, 찬성 및 반대 이유

구분	조사내용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교사 대상 사례관리 필요성 - 부모 대상 누리과정 이해 교육 필요성
기관-가정 간 신뢰 강화	- 기관-가정 간의 신뢰 정도, 신뢰 회복 방안
교사 인권 보호	- 교사 인권 보호 정도, 교사 인권 침해 주체, 교사 인권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 기관, 교사 인권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3) 조사 결과

어린이집 조사에는 238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I-3-2〉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명)	구분	백분율(명)
성별		재직 기관유형	
여자	99.6(237)	국공립	16.0(38)
남자	0.4(1)	사회복지법인	4.6(11)
연령		법인단체	2.5(6)
30세 이하	11.3(27)	민간	30.3(72)
31~35세	11.3(27)	가정	46.6(111)
36~40세	18.1(43)	지역규모	
41~45세	24.4(58)	대도시	43.7(104)
46세 이상	34.9(83)	중소도시	38.7(92)
학력		읍면지역	17.6(42)
고졸 이하	10.1(24)	담당 아동연령	
전문대졸	49.1(117)	0세반	20.6(49)
4년제 대학 졸업	30.7(73)	1세반	23.5(56)
대학원 졸업(석사)	10.1(24)	2세반	28.6(68)
최초 교사자격 취득기관		0,1세반	3.8(9)
보육교사 교육원	42.0(100)	1,2세반	8.4(20)
전문대	44.5(106)	2,3세반	0.4(1)
4년제 대학	13.0(31)	3세반	5.5(13)
대학원	0.4(1)	4세반	0.8(2)
		5세반	3.4(8)
		3,4세반	2.1(5)
		4,5세반	2.9(7)
전체	100.0(238)	전체	100.0(238)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다수가 여자이고, 연령은 46세 이상이 다 빈도이고, 다음으로 41~45세 사이이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최초 교사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전문대와 보육교사 교육원이 각각 40~45% 사이로 많다. 재직 기관은 가정이 절반 가까이 되고, 지역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이다. 담당반은 0,1,2세 영아반이 각각 20% 대로 다빈도이다.

유치원 교사 대상 조사는 최종적으로 262명이 참여하였다. 여자가 대다수이고, 연령은 30세 이하가 절반 가까이 되고, 다음으로 31~35세, 36~40세 순으로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고졸, 4년제 대학 졸 순이다. 최초 교사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각각 48.5%이다. 현재 재직기관은 공립 병설이 45.4%, 사립 사인이 36.3%로 다수를 차지하고 지역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이다. 담당 유아 연령은 5세반이 36.6%, 3세반 26.0%, 4세반 15.6% 순이었다.

〈표 1-3-3〉 유치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명)	구분	백분율(명)
성별		재직 기관유형	
여자	98.9(259)	공립 단설	5.0(13)
남자	1.1(3)	공립 병설	45.4(119)
연령		사립 법인	13.4(35)
30세 이하	42.4(111)	사립 사인	36.3(95)
31~35세	21.4(56)	지역규모	
36~40세	17.9(47)	대도시	41.6(109)
41~45세	8.8(23)	중소도시	37.4(98)
46세 이상	9.5(25)	읍면지역	21.0(55)
학력		담당 아동연령	
고졸 이하	22.5(59)	3세반	26.0(68)
전문대졸	56.9(149)	4세반	15.6(41)
4년제 대학 졸업	20.2(53)	5세반	36.6(96)
대학원 졸업(석사)	0.4(1)	3,4세반	5.3(14)
최초 교사자격 취득기관		4,5세반	16.4(43)
보육교사 교육원	1.1(3)		
전문대	48.5(127)		
4년제 대학	48.5(127)		
대학원	1.9(5)		
전체	100.0(262)	전체	100.0(262)

라. 시범사업 추진

1) 협의체 구성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사, 원장, 굿네이버스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시범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에 운영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원장 및 보육교사,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 수록하였다.

3) 사업 운영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에는 예산이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단, 유치원 대상 시범사업은 2020년 연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가) 시범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는 서울시와 23개 자치구 보육담당 공무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및 서울시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대상 지역 및 사업 대상 규모, 사업내용, 추진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설명회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하여 자치구 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하였다.

3차 설명회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업 추진방법, 일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요구 등을 청취하였다.

나)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시범사업 신청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받고, 신청 완료된 후에는 협의체에서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어린이집 유형 및 정현원 등을 고려하여 총 20개소를 선정하였다.

다) 프로그램 운영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부모, 원장 및 보육교사, 지역사회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 등),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또는 조치), 사후관리(상담, 컨설팅, 모니터링 등)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I-3-4〉 사업 내용

구분	조사내용
시범사업 지역	- 자치구 1개소 선정 -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와 논의 후 선정)
사업 대상	- 어린이집 20개소(※ 어린이집 유형, 정원 규모 등 고려) ※ 서울시 송파구 내 어린이집 총 408개소(보건복지부, 2019) 소재 (총 408개소, 국공립 72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137개소, 가정 176개소, 협동 2개소, 직장 15개소)
사업 기간	- 2019. 8 ~ 2019. 9 (1.5개월) - 시범사업 지역 및 사업대상 선정, 프로그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3개월 정도 소요
사업 주체	육아정책연구소, 굿네이버스

4) 시범사업 평가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인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적용성 및 정책화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보육사업으로 추진 시 운영주체, 사업 대상, 점검 지표, 사업내용(또는 프로그램) 등을 수정하였다.

마. 간담회 및 자문회의

원장,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부모 등을 대상으로 FGI 면담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관련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외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등 관련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 및 방법, 시범사업 운영, 조사 문항, 정책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연구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당초 ‘아동학대 없는 보육교육기관 인증사업 도입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 제목으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착수하였으나,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어린이집 현장에서 ‘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본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송파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등을 개별 방문하여 설득해 나갔으나 ‘인증’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급기야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였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연구과제 제목을 ‘아동학대 없는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으로 수정하여 시범사업을 재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3월부터 착수하여 5~6월까지 2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설명한 다양한 어려움 등으로 7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7~8월에는 프로그램 개발, 8월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프로그램 실시기간을 4주로 단축하였다. 또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의 제한으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을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향후 연구비 확보 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II

연구의 배경

- 0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02 관련 법 및 제도
- 03 아동학대 예방·조치·사례관리
- 04 아동학대 관련 연구 분석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관련 법 및 제도, 아동학대 예방·조치·사례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측요인을 검토하였다.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¹⁾.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이나 훈육까지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2019 재인용)²⁾.

나. 아동학대 유형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학대 행위로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4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3조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성적 학대(Sexual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2019.6.25 인출).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concept.php> 2019.6.25. 인출).

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³⁾.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은 성학대 행위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고 있다⁴⁾.

〈표 II-1-1〉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세부 조항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료: 국가법령센터 아동복지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33&efYd=20190612#> 2019. 6. 25 인출).

신체 학대(Physic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⁵⁾. 신체학대 행위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⁶⁾.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 6. 25 인출).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 6. 25 인출).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 정서 학대(Emotion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⁷⁾. 예를 들면,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⁸⁾.

유기 및 방임(Neglect)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⁹⁾.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행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나뉘며, 유기는 아동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¹⁰⁾.

2. 관련 법 및 제도

2절은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학대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복지법¹¹⁾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6.25 인출).

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1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6.25 인출).

1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참고하여 작성함(2019.6.25 인출).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는 아동의 보호 조치,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학대 금지행위, 제22조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9조의3는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4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¹²⁾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 법 제15조의 4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 및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 6호와 8호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제23조와 제23조2의1에서는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45조1항의4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 조치, 제48조1항의3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9조의3 2항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영유아보육법 참고하여 작성함(2019.6.25 인출).

다. 유아교육법¹³⁾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2는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과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조1항 2의2호는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에도 운영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구성·운영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의사항에는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설립자, 원장 및 교사 등의 교직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¹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 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절차,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벌칙 등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은 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사건관리회의, 피해아동의 의견 청취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은 친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 개정) 참고하여 작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41&efYd=20180209#0000> 2019.6.25. 인출).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255호, 2017.12.19. 일부개정) 참고하여 작성(<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72&efYd=20180620#0000> 2019.6.26 인출).

권상실청구 등,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입시조치, 입시조치의 청구 및 변경, 검사의 결정전 조사, 송치, 보호처분의 변경 등, 의무위반사실의 통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¹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5조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동법 제1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¹⁶⁾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제34조는 「유아교육법」의 제2조2호의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3조 10호의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1호, 2018.3.13, 일부개정) 참고하여 작성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51&efYd=20180914#0000> 2019.6.26. 인출).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5호, 2019.1.15, 일부개정) 참고하여 작성함(<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28&efYd=20190716#0000> 2019.6.26. 인출).

사. 아동보호심판규칙

아동보호심판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 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¹⁷⁾을 목적으로 한다¹⁷⁾. 대법원 규칙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명령 등의 사건 처리에 대한 규칙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2-1〉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조문

법령	조문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15조~제29조의7)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5장 아동복지시설(제45조~제58조) 제7장 벌칙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6조(결격사유)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장 벌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6.26 인출).

앞서 살펴본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령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하고 심신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과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786호 2018.4.27 일부 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442&efYd=20180620#0000> 2019.6.26. 인출).

이 외에도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¹⁸⁾.

3. 아동학대 예방·조치·사례관리

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제공 중인 교육 자료 외에도 타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 자료(ppt, 사이버 강의 등) 중 앞서 제시한 항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은 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사이버 강의로 가능한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를 통한 강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만 인정한다.

단, 기관 및 시설장이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 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교육자료 및 유사교육, 교육 사이트 이용

1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2019.6.25 인출).

관련 사항은 <주석 표 1>¹⁹⁾에 정리하였다.

2) 어린이집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²⁰⁾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공동 주관으로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내용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 성폭력 및 실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신고의무자교육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은 <표 II-3-1>과 같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과 보수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3시간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자료 등

<주석 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세부 내용
유사 교육	신고자의무교육(26조) 및 국가기관 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 의무교육(26조의2)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시간 이상 의무이수 또는 통합하여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단,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버교육자료(1시간)는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 콘텐츠로도 사용가능 함.
교육 자료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급하는 무료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장 - 민간기관에서 자체제작한 콘텐츠는 올해까지는 필수내용 포함시 교육실적으로 인정
교육 사이트 이용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은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개개인이 구별된 이수증 출력가능 -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의 개인회원 가입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관의 결과보고 자료 및 수료인원 수와 함께 대조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인정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내부자료.

2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중앙, 시도 18개소, 시군구센터 83개소 총 102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표 II-3-1〉 2018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집 제작을 통한 원활한 교육 지원 • 강사진 교육 진행과 강사진 인력풀 공유 및 관리를 통한 표준화된 교육 지원 •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지원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보육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기회 제공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 39. 서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아동학대 개입 절차²¹⁾

최근 정부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하면서 아동학대사례 업무시스템에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른 아동학대 개입 절차는 [그림 II-3-1] 과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19)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등을 수집하고, 신고 접수된 의심사례 외에 추가적인 학대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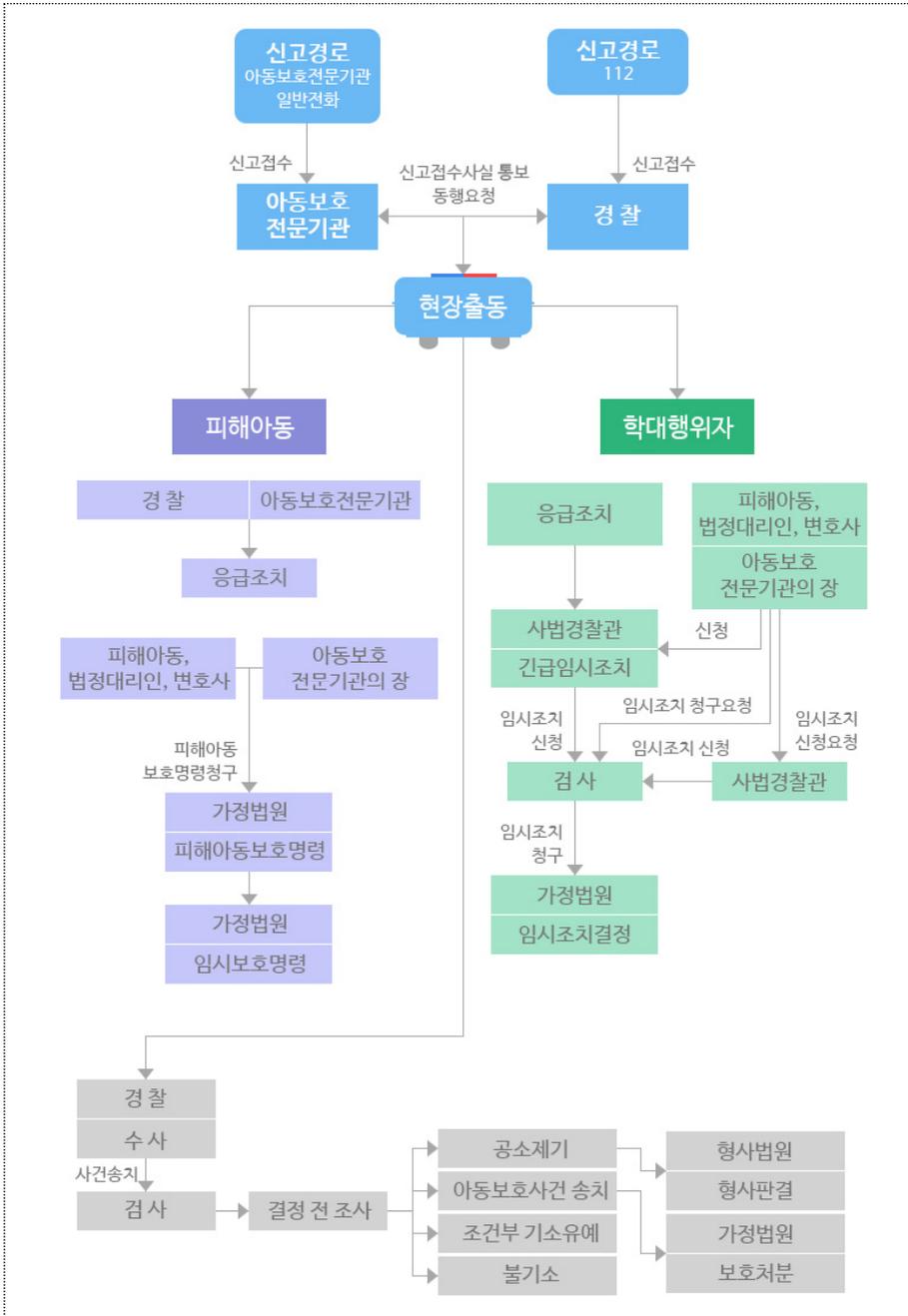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학대 여부 판단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회 이상 이루어지기도 한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로 확인될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검사는 결정 전에 조사를 실시하며,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구분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한편, 피해아동은 응급조치를 취하게 되며 학대행위자에 따라 긴급입시조치를 하는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2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work_system.php 2019. 6. 19 인출)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II-3-1] 아동학대 개입절차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work_system.php 2019. 6. 19 인출).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아동학대 판례 검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 중, 기관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실제 판례를 검토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최근 4년 내의 판결이 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7건의 사례 중 2건은 유치원 교사와 원장, 5건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고인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2심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처분이 취소된 것에 대해 의정 부시가 상고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로 보육교사가 ‘구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례 이외의 판례들은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항은 아니었으며, 벌금형이 많았고,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여러 차례 발생 된 경우에는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판례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이로 인한 아동의 상해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이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유치원에서의 학대보다는 영아의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 아동학대 관련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결 사례

사건번호	상고·항소 및 청구이유	법원의 판결
공2016두64371	2심에서 원고의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 취소된 것에 대한 상고	원심에서 검사가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원심 처분 당시 약식명령만 청구함. 원심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2018고단3579	유치원 담임교사인 A는 108호에 걸쳐 상습적으로 F반 18명의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가함 유치원 원장인 B 역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함	피고인A: 징역 1년에 처함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피고인B: 벌금 500만원에 처함
2018가단232019	유치원 교사, 원장, 이사장인 피고인들이 유치원 유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가함	피고들은 원고인 아동과 보호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70%씩 부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사건번호	상고·항소 및 청구이유	법원의 판결
2015고단13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만3세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함	선고유예
2016고단3238 2016고단5101 (병합)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	- 피고인A(어린이집 원장) :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 피고인B(보육교사) : 징역 6개월,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2015노945	보육교사 A와 어린이집 원장 B의 영유아 아동학대 행위 - 피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A: 벌금 500만원 피고인B: 벌금 200만원) - 재판결 피고인 A: 5,000,000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 무죄
2016노1654	원심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양형(벌금 15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아동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당·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에 처함
2013고단457	어린이집 교사가 갓 돌을 지난 피해 유아가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 입힘	- 피해자인 보육교사: 징역 8월 - 어린이집 원장: 벌금 300만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

자료: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2019.6.14. 인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prevUrl=interSrch&tblId=0&q=%EC%95%84%EB%8F%99%ED%95%99%EB%8C%80#//](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prevUrl=interSrch&tblId=0&q=%EC%95%84%EB%8F%99%ED%95%99%EB%8C%80#/) 2019.6.14. 인출.)

대전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3고단4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223201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65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323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13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357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4. 아동학대 관련 연구 분석

가. 아동학대 예측 요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교사 개인요인, 아동 개인요인, 그리고 환경요인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교사 개인요인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자기평가, 직무스트레스, 개인의 기질, 전문성 등의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 개인요인으로는 영유아의 연령이나 기질, 성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며, 환경요인으로는 교사 근무조건 및 처우, 물리적 환경 등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

1) 교사의 개인요인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유발요인을 교사의 개인적 요인으로 다룬 선행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충일(2017)은 교사의 학대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대처 전략,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업무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교사의 개인적인 상황과 교사로서의 역할몰입, 교사로서의 좌절감이 영·유아 보육기관 교사의 학대 충동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충일, 2017:251).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발생원인은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 교사의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큰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개인의 기질과 성향, 인성, 심리적 불안정 등의 요인들이 아동학대의 유발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장희선·박은영, 2018; 장영인·정민자, 2016; 이경숙·박진아·신의진, 2015; 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박진아·이경숙, 2015).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아동학대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태도, 부적합한 훈육방법, 미숙한 대처기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정선아·장화정·김경희·김미경·박보영, 2018; 강신해·안지령, 2017; 장영인·정효정, 2017; 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더불어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부족도 아동학대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인숙·이기중, 2017; 서동미·연선영, 2016; 최은영 외, 2015; 이경숙·박진아·신의진, 2015; 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2) 아동의 개인요인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측요인을 해당 기관에서 보육·교육 받고 있는 아동의 개인요인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충일(2017)은 영·유아의 연령, 영·유아의 문제행동 종류, 영유아의 기질과 같은 아동의 개인요인들은 교사의 스트레스 증가와 통제력 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천적인 기질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인관계와 발달 단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주의산만과 불안 애착등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공격성 혹은 시설부적응 등의 적응행동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학대받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장영인·정민자, 2016; 박은미·윤혜진, 2008). 더불어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학대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미·윤혜진, 2008).

3) 환경적 요인

교사의 개인요인이나 아동의 개인요인이 아닌 그 외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서동미·연선영(2016)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실제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유아학대 비율이 높으며, 영유아학대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학대 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관 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에서 비롯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진원, 2017; 서동미·연선영, 2016; 박진아·이경숙, 2015).

장시간의 근무와 과도한 업무, 그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들은 아동 보육·교육 기관의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유미·조명자, 2018; 한진원, 2017; 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더불어 원장이나 교사들 간의 갈등(정선아 외, 2018; 이경숙·박진아·신의진, 2015; 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아동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이윤진 외, 2018; 유계숙·양수진·조선아, 2016)도 아동학대의 유발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과도한 업무량과 시간,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교사들 간의 관계나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4-1〉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예측요인 분석

구분	아동학대 예측요인		
	교사	아동	환경
강신해· 안지령 (2017)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급여 낮은 처우개선 열악한 환경 아동발달에 대한 인식 부족 교사의 과거 학대받은 경험 아동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학대 교육의 부족 	-	-
고영자 (2018)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개인적 변인 연령·학력·경력 -보육교사 교육인지변인 유아학대예방교육 이수 여부 UN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유아인권교육 이수 여부 	-	-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 • 신고체계-사후관리 통합체계 구축 필요 •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 강화
김영은 (2016)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인성 자기평가 • 인간애(유아에 대한 사랑 등) • 긍정적 자아개념(자아존중감 등) • 사회관계(자기조절력, 배려, 의사소통 등) • 직무수행(책임감, 사명감, 성실등) • 창의·인성(개방성, 다양성, 유머, 협력, 사회문제인식 등) 	-	-
김영은·	- 보육교사의 인성	-	-

구분	아동학대 예측요인		
	교사	아동	환경
이희선 (2016)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자아개념(자기 및 타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 공감적 이해) • 사회관계(배려, 자기조절력, 의사소통기술 능력) • 직무수행(책임감, 사명감, 성실함) 		
김우태 (2017)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부족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성격 및 기질, 보육환경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시스템의 제한적 기능(단순 모니터링기능만 제공) - 보육환경 요인 개선 • 교사처우개선 • 부모와의 파트너십 강화 • 외부 전문가 컨설팅 • 보육교사 상호 컨설팅(정기 사례회의) • 아동학대 관련 심의조정기구 설치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 (2016) 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및 정신건강 문제 •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 원장, 교사들 간의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김정희·김은심 (2017)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유아교사 요인 • 학대·훈육·체벌에 대한 인식 • 교사양성교육과정 아동학대 예방 내용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 사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예: 유교적 문화권 등) - 올바른 훈육에 대한 기준 매뉴얼의 한계
김충일 (2017) 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상황 • 역할 몰입(예: 책임감) • 좌절감 • 스트레스 증가 및 통제력 한계 • 영유아와의 대립상황 • 스트레스 대처 전략 • 인성·반성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문제행동 종류 • 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근무 여건 • 교사 대 영유아의 높은 비율 • 교사의 처우 • 과도한 업무량
김태연·정현심 (2018)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보육교사 • 아동학대 심각성 인지 정도 •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지 • 신고효과성에 대한 인식 	-	-
김희영·윤현석 (2016) 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사 • 자아존중감 • 직무스트레스 	-	-
나인숙·이기종 (2017) 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 직무 임파워먼트(의사결정, 전문성 신장, 지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향력) • 영유아학대 인식 	-	-
박소윤·서현아·강현미 (2017) 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원리의식 	-	-



구분	아동학대 예측요인		
	교사	아동	환경
박은미· 윤혜진 (2008) ¹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과 의료상의 문제 기질 장애 및 발달지체 문제행동 출생상황 	-
박진아· 이경숙 (2015) ¹⁵⁾	-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한 보육 업무 과도한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 및 행동 문제 	-
서동미· 연선영 (2016) ¹⁶⁾	-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스트레스 영유아학대 인식 	-	-
유계숙· 양수진· 조선아 (2016)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질 및 태도 (예: 전문성 및 학대인식 부족, 잘 못된 아동관, 보육업무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다로운 기질 장애여부 및 문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 및 근무환경 (예: 장시간 근무, 낮은 복지, 전문인력 관리 부족, 부실한 자격취득)
윤영배· 유준호 (2017) ¹⁸⁾	- 예비유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인식 인성(이타심, 용서, 자기개발, 자아성취, 자기조절, 의사소통, 공감적이해, 직무태도, 유머, 사회문제, 창의성) 교수효능감 	-	-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2015)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한 업무 직무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교육수준 성격문제 정신건강 문제 교사 간 갈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부족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	-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 ²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정신건강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성격적 문제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수준 교사들 간의 갈등 학대에 대한 교육 부족 - 아동학대 신고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연령 발단단계 	-
이미선· 김한나 (2015) ²¹⁾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	-	-

구분	아동학대 예측요인		
	교사	아동	환경
이윤진·장희선·박은영 (2018) ²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조건 • 인성 및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환경(과다한 업무량, 아동대비 교사 수의 부족, 스트레스) • 보육·교육 근로 환경 조성에 있어 정책적 문제
장영인·정민자 (2016)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성격 및 기질문제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처우, 근무여건 등) • 아동에 대한 이해부족 •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 개인적 자질과 성향 문제(스트레스 대처능력, 분노조절 등) • 훈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부적합한 훈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정신건강(주의산만, 과잉행동, 불안, 애착문제 등) • 적응행동(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시설부적응 등) • 발달신체건강(신체발달 지연, 언어문제, 대소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가 높은 근무환경(장시간 근무, 열악한 처우) • 구조화된 일과와 경직된 프로그램 • 고립된 노동환경과 내부 소통구조의 취약 • 부모와의 파트너십 부족
장영인·정효정 (2017) ²⁴⁾	- 교사의 양육태도 및 기술부족	-	-
전병주·최은영 (2017) ²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 원장에 대한 법적응 미비
정선아·장화정·김경희·김미경·박보영 (2018) ²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보육전문성 • 아동을 대하는 태도 • 감정조절 • 훈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 • 부적합한 훈육방법 • 안전사고 대처 문제 등 원장의 보육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 규칙 미준수(교사 대 아동비율, 급식운영 규칙 등) • 훈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조직특성 • 위계적 관계 • 원장-교사 간 갈등 • 교사 간 소통부재 • 교사간 반목 • 업무과중 조절 실패 •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수준 • 보육교사양성과정, 보수 교육체계의 문제점
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²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인식 부족 	- 영유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환경 •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 • 업무과중 • 열악한 처우
한유미·조명자 (2018) 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학력 · 전공 • 피학대경험 · 학대교육 경험 • 아동학대 인식(아동학대 방지노력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유형 · 담당 아동 연령 • 근무시간 • 특별활동 과목 수 • 행사 진행 횟수 • 교사 구성
한진원 (2017) ²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교사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업무 과부하, 학부모와의 관계) • 그릇된 인식 	- 아동의 부정적인 특성	- 부적합 교육환경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 자료: 1) 강신해·안지령(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9(4), 327-345.
- 2) 고영자(2018). 유아교사의 유아학대 인식 및 학대예방노력,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3), 79-105.
- 3) 김아름·박은영·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적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4) 김영은(2016). 유아교사의 인성 자기평가와 아동학대 인식 간의 관계 연구. 인지발달장애학회지, 7(3), 17-30.
- 5) 김영은·이희선(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정책연구, 10(1), 49-72.
- 6) 김우태(2017).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한국경찰연구, 16(3), 47-68.
- 7)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8) 김정희·김은심(2017). 은유분석을 통해 본 학대, 처벌, 훈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445-473.
- 9) 김중일(2017). 교사의 영·유아학대 충동에 대한 극복과 대처 전략의 구성. 유아교육학논집, 21(2), 237-257.
- 10) 김태연·정현심(2018). 예비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과 태도-타전공 대학생과의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18(3), 65-75.
- 11) 김희영·윤현석(2016).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4), 547-566.
- 12) 나인숙·이기종(2017).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직무 임파워먼트, 영·유아학대 인식, 영·유아학대 실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와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229-249.
- 13) 박소윤·서현아·강현미(2017).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원으로서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319-336.
- 14) 박은미·윤혜진(2008).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24, 163-185.
- 15) 박진아·이경숙(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에 관한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5(3), 27-54.
- 16) 서동미·연선영(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영유아학대에 대한 인식과 영유아학대 실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와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0(1), 193-216.
- 17) 유계숙·양수진·조선아(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정책연구, 10(1), 241-268.
- 18) 윤영배·유준호(201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학대인식, 인성,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 26(4), 277-303.
- 19) 이경숙·박진아·신익진(2015).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01-327.
- 20)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 21) 이미선·김하나(2015). 보육교사의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경험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학대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2), 309-333.
- 22) 이윤진·장희선·박은영(2018).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23) 장영인·정민재(2016).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25-55.
- 24) 장영인·정효정(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자율적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04, 53-89.
- 25) 전병주·최은영(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31(1), 119-150.
- 26) 정선아·장화정·김경희·김미경·박보영(2018).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연구. 아동과 권리, 22(3), 351-382.
- 27)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28) 한유미·조명자(2018).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방지노력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2(2), 145-162.
- 29) 한진원(2017).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유치원내(內)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 태도. 유아교육학논집, 21(1), 237-261.

나. 아동학대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학대 아동보호 전달체계는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범근·김준영·배귀희·문명재, 2017).

예방 및 발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에는 교육기관 관계자의 의무교육,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에 중심을 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 교육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조범근 외 2017:275).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 및 법원이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조범근 외, 2017:275).

사후단계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 및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제공한다(조범근 외, 2017:275).

〈표 II-4-2〉 아동학대 전달체계 선행연구

구분	아동보호체계
김형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담 및 신고 사례 분류 ② 현장조사 ③ 사례판정 ④ 조치결정 ⑤ 필요시 계속격리보호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대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아동보호전문상담원 증원 - 광역 시·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광역 시·도 내의 시·군·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인 교사, 학교를 통한 신고 체계 구축 - 지역사회를 활용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조흥식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사례관리 모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전문 인력 충원 필요 - 연계기관 확보 필요 - 사례관리를 수용하는 피해아동과 가족 - 제도적 보장 필요
조범근·김준영·배귀희·문명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사건 대응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방 및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수립 및 법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교육부: 신고의무자 교육, 무단결석 및 퇴학 아동 관리,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등 - 지자체: 지자체 복지 및 취학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구분	아동보호체계
	② 신고 및 수사 - 경찰청(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사례 접수 및 현장조사 - 검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③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및 부모 심리치료와 상담서비스 등 - 피해아동에 대한 유관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연계 지원
조범근·김준영·배귀희·문명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강화 및 예방기능 추가 수행 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③ 경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아동학대 판단 기준 공유 ④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기능 강화 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 장기 ①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① 부모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② 아동보호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 - 장기 ① 아동학대 관련 의무교육제도 마련 ② 아동학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료: 1) 김형모(2014).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46, 239-266.
 2) 조흥식(2016). 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동향, 26-31.
 3) 조범근·김준영·배귀희·문명재(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269-298.

김형모(2014)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과제로서 아동학대 예방법의 제정,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을 통해 사후대처를 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사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김형모, 2014).

또한 조흥식(2016)은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맞는 전달체계 구축의 현실적인 대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 모델을 제안하며 사례관리 전문 인력 충원과 연계기관 확보,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정 외 기관은 어린이집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이후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이명순(2017)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권리 컨설턴트 제도, 아동학대예방지원센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와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교육의 필요성,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박혜진(2016)은 아동학대방지 정책 마련을 위해 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학대행위의 예방과 조기발견, 사후관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관계기관 간의 협력·지원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박혜진, 2016).

김형모(2014)는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상담 및 신고 접수 방법 단일화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체계 구축,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역사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은주(2015)는 미국과 일본의 특별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별법은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의 가중처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언급하였다(이은주, 2015).

III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교육 실적

01 아동학대 발생 현황

02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

Ⅲ.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교육 실적

제3장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예방교육 실적 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신고의무자 유형,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학대 가해자 등을 살펴보았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등으로 분류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표 Ⅲ-1-1〉 연도별 신고 접수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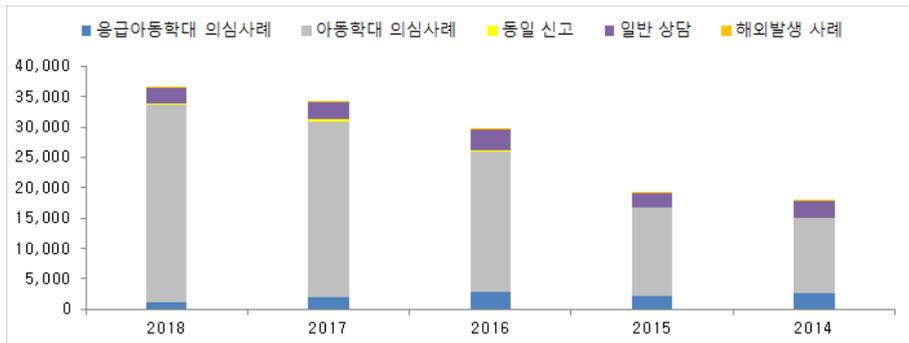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 발생 사례	전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018	1,187	32,345	33,532	420	2,464	1	36,417
2017	2,094	28,829	30,923	292	2,951	3	34,169
2016	2,796	23,082	25,878	189	3,604	3	29,674
2015	2,252	14,399	16,651	87	2,465	11	19,214
2014	2,566	12,459	15,025	93	2,664	9	17,791

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전체 아동학대 사례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5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5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48.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5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11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는 2018년 말 기준 총 36,417건이며, 2014년 17,791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별로 보면,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더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55)는 2014년 2,566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나 2018년 1,18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4년 12,459건에서 2018년 32,345건으로 2016년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동일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외에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 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동일 신고되는 사례(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55)는 소수이고,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인 일반상담(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55)은 다수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55)는 극소수이다.

[그림 III-1-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료: <표 III-1-1>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나.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²²⁾.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유형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신고자 유형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보육 교직원 원	유치 교직원, 원, 강사												
전체	4,358	273	43	4,900	309	68	8,288	286	114	8,830	313	115	9,151	213	115
서울	437	21	7	504	43	7	945	34	4	977	62	5	937	20	10
부산	242	20	1	294	9	6	511	8	7	810	15	8	875	5	13
대구	173	7	2	170	15	4	358	9	3	447	16	3	375	5	1
인천	196	19	3	272	52	3	486	23	4	654	26	10	467	21	11
광주	88	8	-	87	3	2	201	3	6	229	4	1	237	0	1
대전	105	5	2	110	12	1	163	7	5	207	8	-	267	21	5
울산	201	8	3	153	12	6	220	6	4	213	12	1	193	3	2
경기	962	71	9	1,062	59	17	1,685	68	38	1,823	86	49	2,151	61	25
강원	194	8	3	243	7	6	424	16	7	335	12	4	402	8	3
충북	204	9	1	226	12	-	423	20	7	404	13	5	269	4	7
충남	283	14	-	392	12	3	461	22	14	472	8	10	600	10	6
전북	354	24	7	360	17	6	584	12	2	510	15	2	625	14	11
전남	258	9	-	364	15	-	539	15	4	551	13	9	680	10	6
경북	256	18	1	318	14	5	610	16	3	672	15	5	564	19	8
경남	267	18	-	265	24	1	552	18	4	424	8	-	392	7	2
제주	138	14	4	80	3	1	126	9	2	102	-	3	76	4	1
세종													41	1	3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6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6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6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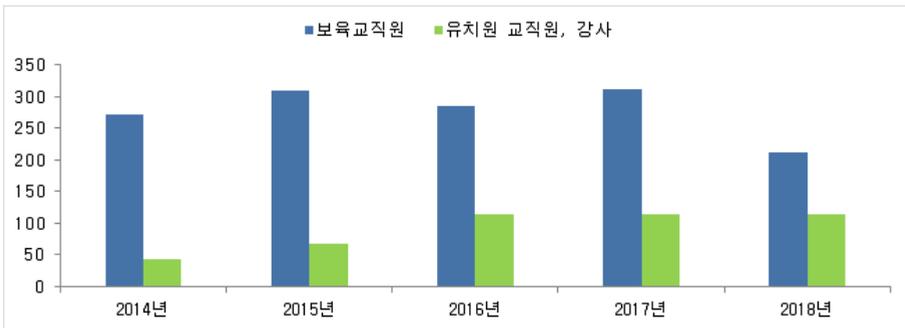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70-7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14-15.

22)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속하게 됨. 그러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2016.5.29. 개정)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68 재인용).

2018년 신고자는 총 9,151명이며, 이중 보육교직원은 213명,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는 총 115명이다. 즉, 보육교직원은 전체 신고자 중 2.3%,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는 1.3 %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육교직원은 2015년 309명에서 2016년 286명으로 줄었으나 2017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는 2015년에는 68명 정도이었으나 2016년 114명, 2017년 115명, 2018년 1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937명, 부산 875명 순이다. 학대신고자가 보육교직원인 경우도 경기도가 61명으로 많으며, 대전, 인천, 서울 순이다.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도 25명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고 부산, 인천, 전북, 서울 순이다.

[그림 III-1-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자료: <표 III-1-2>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다. 경찰 통보 및 신고접수 경로

1) 경찰 통보

2014년 9월 29일 이후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와 통합되면서 112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았고, 신고접수 후에는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청소년과(여성보호계)에 신고내용을 통보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1항에 따라 경찰이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사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87 재인용).

경찰 통보 건수는 2014년 총 2,667건이며, 2015년에는 8,348건으로 증가하

고, 2016년부터는 1만5천건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7,597건에 이른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경찰 통보 건수

단위: 건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상담원 인지 신고	기타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2018	-	-	-	-	17,597	-	-	-	-	-	17,597
2017	176	-	8	184	16,676	3	-	10	-	-	16,873
2016	714	18	39	771	13,991	34	4	9	-	-	14,809
2015	484	13	30	527	7,781	19	2	19	-	-	8,348
2014	-	-	-	-	-	-	-	-	-	-	2,667

주: 2014년은 신고접수 체계에 따라 집계하지 않음, 2016년은 상담원 인지신고 및 기타 분류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2) 신고접수 경로

〈표 III-1-4〉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및 119 등 전화 통해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I-1-4〉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범죄신고센터)	119 (안전신고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인지신고	기타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2018	10,316	15	323	10,654	17,597	1	24	71	7,900	170	36,417
2017	10,666	9	363	11,038	16,676	11	47	130	6,258	9	34,169
2016	14,919	39	496	15,454	13,991	37	51	141	-	-	29,674
2015	10,709	55	444	11,208	7,781	29	11	185	-	-	19,214
2014	14,267	603	43	14,913	2,376	20	448	34	-	-	17,791

주: 2014~2016년은 상담원인지신고, 기타 분류하지 않음.
 2016년은 상담원 인지신고 및 기타 분류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2014년 총 17,791건 정도이었으나, 2017년 2배 정도 증가한 총 34,169건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총 36,417건에 이른다(표 III-1-4 참조).

신고·접수된 것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된 비율은 총 신고건수 중 2014년 기준 83.8%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50% 대를 상회하였고, 2017년에는 32.3%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29.3% 정도를 차지한다(표 III-1-4 참조).

라. 현장조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시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례에 따라 1회 이상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장조사는 상담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단독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실시 횟수는 2014년 사례 1건당 평균 2.0회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 평균 2.1회, 2017년에는 3.2회, 2018년에는 1건당 평균 3.6회 실시되었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현장조사 횟수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단위: 건, 회
			1건당 현장조사 횟수
2018	33,532	121,962	3.6
2017	30,923	97,692	3.2
2016	25,878	53,401	2.1
2015	16,651	35,379	2.1
2014	15,025	30,621	2.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p.9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0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특히 보육·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및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102). 현장조사가 실시된 아동학대 사례 중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2017년 총 4,775건이고, 2018년에는 총 3,593건이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현장조사 동행현황

구분	상담원 공무원	경찰 공무원	상담원 경찰 공무원	단위: 건, 회
				전체
2018	1,017	194	2,382	121,962
2017	1,213	235	3,327	97,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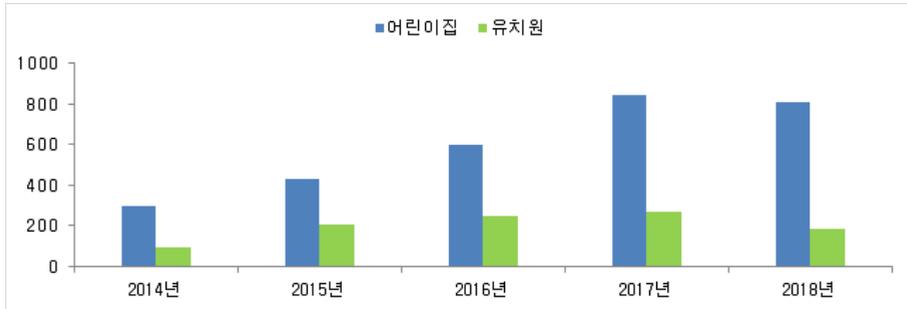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0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마. 아동학대 발생 장소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인 경우는 2014년 아동학대 사례 10,027건 중 어린이집이 300건, 유치원 96건으로 각각 3.0%,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3.7%, 유치원 1.8%로 상승한다. 2017년에도 어린이집은 3.8%이나 유치원은 1.2%로 줄어든다. 2018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어린이집이 811건, 유치원이 187건으로 각각 3.3%, 0.8%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III-1-7; 그림 III-1-3 참조).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어린이집인 경우는 2018년 기준 경기도가 171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울이 156건, 광주 112건 순이다. 유치원인 경우에는 전남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북이 25건, 경남 18건, 경기와 강원이 각각 15건으로 어린이집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표 III-1-7 참조).

[그림 III-1-3]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장소



자료: <표 III-1-7>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표 III-1-7> 아동학대 발생 장소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10,027	300	96	11,715	432	207	18,700	601	247	22,367	843	269	24,604	811	187
서울	954	27	-	1,179	34	3	2,245	71	1	2,233	164	14	2,210	156	9
부산	392	6	17	525	4	5	849	38	3	1,439	37	161	1,612	31	6
대구	362	3	-	347	12	3	733	24	3	1,129	49	8	1,168	14	5
인천	495	16	1	507	33	19	1,182	81	2	1,218	142	4	1,167	60	2
광주	164	4	1	253	5	3	345	8	2	794	6	5	962	112	1
대전	286	4	1	330	8	-	358	2	-	516	15	1	643	12	1
울산	348	4	2	340	21	-	679	40	3	736	48	4	734	28	-
경기	2,501	126	17	2,972	127	17	4,338	140	40	5,048	206	8	6,076	171	15
강원	364	8	-	552	29	17	979	27	1	1,069	28	-	1,219	20	15
충북	455	2	-	644	31	104	946	11	91	889	16	41	846	53	7
충남	483	5	1	615	15	17	823	13	27	1,027	12	2	1,321	33	6
전북	932	14	6	889	13	3	1,441	17	15	1,572	24	1	1,580	11	25
전남	641	19	29	757	4	13	1,229	23	10	1,410	17	4	1,723	10	67
경북	613	7	-	807	12	-	1,017	26	1	1,618	29	3	1,822	68	9
경남	749	15	21	742	64	4	1,134	53	17	1,119	31	10	1,118	30	18
제주	288	40	-	250	19	-	275	6	-	340	1	-	335	1	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2.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바.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표 III-1-8〉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육교직원 또는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I-1-8〉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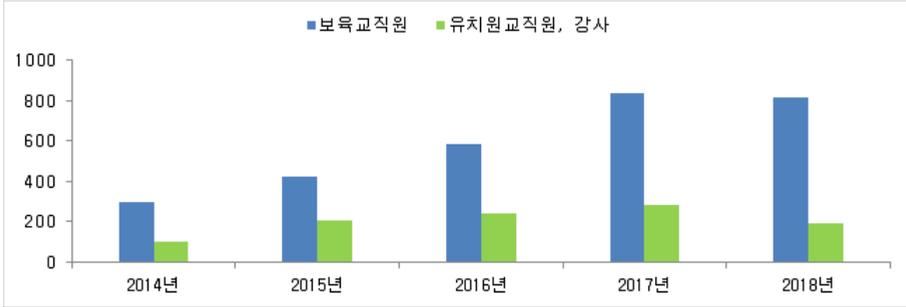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치원, 강사	유치원 교직원	보육교직원												
전체	10,027	99	295	11,715	203	427	18,700	240	587	22,367	281	840	24,604	189	818
서울	954	-	27	1,179	13	36	2,245	4	70	2,233	17	160	2,210	14	150
부산	392	17	5	525	10	6	849	5	39	1,439	162	38	1,612	3	30
대구	362	-	3	347	1	11	733	3	24	1,129	8	47	1,168	7	16
인천	495	1	14	508	19	33	1,182	2	81	1,218	4	144	1,167	2	61
광주	164	1	3	253	5	5	345	3	6	794	5	7	962	1	112
대전	286	1	4	330	-	1	358	-	2	516	1	12	643	2	10
울산	348	1	4	340	2	16	679	4	41	736	3	51	734	1	28
경기	2,501	20	124	2,971	16	125	4,338	42	127	5,048	10	195	6,076	17	175
강원	364	-	7	552	17	29	979	32	23	1,069	1	26	1,219	14	21
충북	455	-	2	644	105	31	946	91	10	889	42	16	704	4	56
충남	483	1	6	615	17	15	823	30	13	1,027	2	12	1,463	4	36
전북	932	6	14	889	3	14	1,441	15	19	1,572	1	25	1,580	25	11
전남	641	30	20	757	16	8	1,229	11	22	1,410	7	18	1,723	66	11
경북	613	-	7	807	2	11	1,017	3	26	1,618	3	28	1,822	10	67
경남	749	21	15	742	30	63	1,134	87	53	1,119	10	35	1,118	18	32
제주	288	-	40	250	-	19	275	-	6	340	-	1	335	1	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육교직원인 경우는 2015년 427건으로 증가하고,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 2018년 8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다소 주춤하였다. 유치원 교사 및 강사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99건이고, 2015년에는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에는 281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2018년에는 18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아동학대자가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인 경우는 전남, 전북, 경남, 경기 순이고, 보육교직원은 경기, 서울, 광주 순이다(표 III-1-8 참조).

[그림 III-1-4]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자료: <표 III-1-8>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사. 피해 아동 특성

1) 성별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중 피해 아동 성별을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 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2014년 남아가 여아보다 93건 많고, 2015년에는 다소 그 폭이 줄었으나 2016년에는 차이가 더 커졌다. 2017년에는 200건 가까이 차이가 나고, 2018년에는 150건 정도 차이가 난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아동학대 피해를 더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 아동 성별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보육교직원	194	101	295	253	174	427	342	245	587	522	318	840	486	332	818
유치원교직원	59	40	99	127	76	203	144	96	240	152	129	281	114	75	189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2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0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남아와 여아가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남아가 60~70% 정도 많고, 2017년, 2018년에는 그 폭이 줄었다(표 III-1-9 참조).

2) 연령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먼저,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연도별로 1~3세 아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6세 순이다.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연도별로 공통적으로 4~6세가 다수를 차지한다(표 III-1-10 참조).

〈표 III-1-10〉 피해 아동 연령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육 교직원 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1세 미만	2	-	2	9	-	9	7	-	7	21	1	24	21	-	27
1~3세	177	11	191	281	4	290	428	8	441	558	9	580	596	24	635
4~6세	103	88	204	134	188	340	151	232	413	240	239	536	187	135	371
7~9세	6	-	71	3	11	168	-	-	224	3	32	286	13	27	488
10~12세	7	-	119	-	-	177	1	-	237	18	-	543	1	1	796
13~15세	-	-	125	-	-	93	-	-	267	-	-	443	-	2	687
16~17세	-	-	33	-	-	112	-	-	102	-	-	431	-	-	436
계	295	99	745	427	203	1,189	587	240	1,691	840	281	2,843	818	189	3,44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2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0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3) 피해 아동 특성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은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기준 특성이 없는 경우와 파악이 안 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표 III-1-11〉 시설종사자 유형별 피해 아동 특성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직원	전체
장애	13	1	28	6	-	29	8	1	56	6	2	28	13	2	75
정서정신건강	69	38	168	111	34	262	204	62	584	58	17	238	62	19	244
적응행동	6	1	69	17	4	119	45	5	259	8	4	148	12	1	162
발달산체장애	20	2	40	32	19	76	36	2	62	13	3	44	24	5	83
특상없음	214	61	547	310	166	894	422	182	1,146	169	127	799	392	86	1,429
기타	4	2	17	19	5	53	19	4	66	7	-	17	1	-	18
파악안됨	-	-	-	-	-	-	-	-	-	621	144	1,897	289	73	1,301
전체	326	105	869	495	228	1,433	734	256	2,173	882	297	3,171	904	213	3,876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2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2.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208-20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도 마찬가지로 특성이 없는 경우와 파악이 안되는 경우의 발생 건수가 많았다. 즉, 아동 개인 변인보다는 아동학대자의 특성이나 보육교육 환경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피해 아동 연령 및 성별

피해아동의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에는 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에는 2세, 2017년에는 다시 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별은 연도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2〉 어린이집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단위: 건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2015	432	7	2	25	17	49	43	94	54	40	31	47	23
2016	601	6	3	41	29	108	100	90	67	53	27	55	22
2017	843	14	8	66	41	114	93	151	89	74	40	105	48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유치원 피해아동의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세는 10건 미만으로 소수이지만 4세가 되면 50여 건으로 증가하고, 5세는 150 여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남아가 학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표 III-1-13 참조).

〈표 III-1-13〉 유치원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단위: 건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남아	여아	남아	여아								
2015	207	-	-	-	-	1	-	2	2	27	20	98	57
2016	247	-	-	-	-	-	-	5	3	30	22	111	76
2017	269	-	-	-	-	2	-	1	3	36	49	103	75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아.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1) 성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정리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 둘다 여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대부분이 여자이기 때문이다.

〈표 III-1-1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보육교직원	7	288	295	1	426	427	3	584	587	38	802	840	8	810	818
유치원교직원	1	98	99	-	203	203	16	224	240	6	275	281	10	179	189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2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2) 연령

시설종사자인 학대행위자 연령을 살펴보면 <표 III-1-15>와 같다.

학대행위자가 보육교직원인 경우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20~29세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2016년에는 30~39세, 2017년에는 다시 50~59세, 2018년에는 40~49세가 다빈도이다(표 III-1-15 참조).

유치원교직원이 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2014년과 2015년, 2017년은 20~29세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2016년 이후는 30~39세, 2018년에는 50~59세가 다빈도이다(표 III-1-15 참조).

이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면서 젊은 인력이 보육·유아교육 현장을 떠나고 단기 교육을 받은 고연령 인력이 유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의 연령도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I-1-15>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보육 교직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20~29	103	45	241	156	138	363	187	68	343	170	125	419	173	62	390
30~39	80	33	156	104	15	301	190	116	484	139	119	496	229	27	650
40~49	74	1	156	139	27	307	144	32	361	213	13	751	265	24	1,007
50~59	32	17	157	27	22	199	44	23	267	267	18	874	116	71	1,134
60~69	4	-	23	1	-	16	11	-	162	34	2	160	28	1	122
70 이상	2	-	8	-	-	1	2	-	3	-	-	11	-	-	14
파악안됨	-	3	4	-	1	2	9	1	66	17	4	132	7	4	122
계	295	99	745	427	203	1,189	587	240	1,686	840	281	2,843	818	189	3,439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28.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3) 학대행위자 특성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2018년 기준 보육교직원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다음으로 특성이 없다는 것이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23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24건 정도 파악되었다(표 III-1-16 참조). 유치원 교직원의 경우도 대부분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이고, 특성이 없는 경우도 50건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순이다(표 III-1-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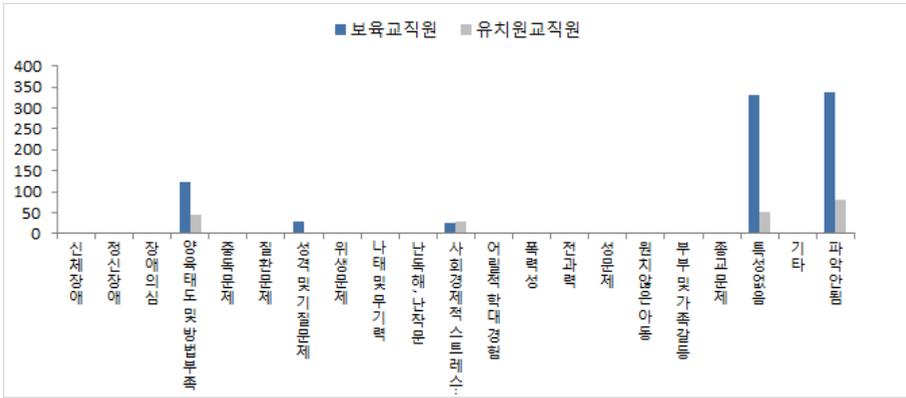
〈표 III-1-16〉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육 유치 교직원 원	유치 원교 원	전체 직원												
신체장애	-	-	-	-	-	-	-	-	-	-	-	-	-	-	-
정신장애	-	-	-	-	-	1	-	-	-	1	-	1	-	-	-
장애의심	-	-	-	-	-	-	1	-	10	-	-	48	-	-	-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74	196	1,000	297	47	654	496	166	1,216	81	47	482	123	44	562
중독문제	-	-	-	-	-	-	-	-	-	-	-	11	-	-	-
질환문제	-	-	-	-	-	-	1	-	31	-	-	-	-	-	-
성격 및 기질문제	61	5	94	34	1	126	87	4	159	11	1	84	29	-	188
위생문제	-	-	-	1	-	1	1	-	1	-	-	-	-	-	-
나태 및 무기력	-	-	-	-	-	-	-	-	-	-	-	-	-	-	-
난독해, 난작문	-	-	-	-	-	-	-	-	-	-	-	-	-	-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51	-	66	46	3	153	99	6	223	31	1	115	24	27	217
어릴적 학대 경험	-	-	2	-	-	4	-	-	-	-	-	-	-	-	3
폭력성	-	-	-	-	-	-	-	-	6	-	-	11	-	-	-
전과력	1	-	1	-	-	2	-	13	13	-	-	-	-	-	-
성문제	1	-	70	-	-	43	-	13	75	-	-	20	-	-	-
원치않은 아동	-	-	-	-	-	-	-	-	1	-	-	-	-	-	-
부부 및 가족갈등	3	-	3	-	-	-	-	-	10	-	-	11	-	-	-
종교문제	-	-	6	-	-	4	-	-	5	-	-	-	-	-	-
특성없음	368	81	797	129	165	528	229	129	683	123	99	545	332	50	1,214
기타	-	-	-	-	-	-	-	-	-	-	-	-	1	-	6
파악안됨	51	13	110	69	3	115	25	7	89	644	150	1,956	337	80	1,43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2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0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그림 III-1-5]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특성



자료: <표 III-1-15>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2018년 기준 보육교직원은 정서학대가 421건이고, 신체학대 412건, 방임 278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체학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대체로 정서학대 유형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표 III-1-17 참조).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신체학대가 2018년 기준 106건이고, 정서학대 104건, 방임 77건 순이다. 2014년 이후로 정서학대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크게 줄었다(표 III-1-17 참조).

<표 III-1-17> 아동학대 사례 유형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육 교직원 원	유치 원교 직원	전체												
신체학대	186	50	474	303	162	688	334	85	937	390	100	1,435	412	106	1,387
정서학대	213	69	512	259	175	656	369	103	1,091	416	242	1,778	421	104	2,220
성학대	1	2	27	-	-	84	-	13	99	22	2	312	1	-	757
방임	55	6	65	82	-	225	144	96	253	300	54	391	278	77	445
계	455	127	1,078	644	340	1,653	847	297	2,380	1,128	398	3,916	1,112	287	4,809

주: 중복학대 미분류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3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8.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자. 아동학대 조치 결과

피해 아동 초기 조치 결과는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보육교직원은 원가정보호가 835건이고 일시보호는 5건으로 소수이다. 연도별로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원가정보호가 다수를 차지하고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병원 입원 등이 5건 미만으로 조치되었다(표 III-1-18 참조).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도 원가정보호가 다수를 차지하며, 소수 병원입원의 방법으로 조치가 되었다.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도 연도별로 원가정 보호가 다수를 차지한다(표 III-1-18 참조).

〈표 III-1-18〉 피해 아동 초기 조치결과

구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단위: 건							
2018							
보육교직원	815	-	-	-	-	3	818
유치원교직원	189	-	-	-	-	-	189
2017							
보육교직원	835	-	5	-	-	5	840
유치원교직원	281	-	-	-	-	-	281
2016							
보육교직원	586	-	-	-	-	1	587
유치원교직원	238	-	-	-	2	-	240
2015							
보육교직원	424	3	-	-	-	3	427
유치원교직원	203	-	-	-	-	-	203
2014							
보육교직원	294	-	1	-	-	1	295
유치원교직원	99	-	-	-	-	-	99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32.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2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표 III-1-19〉는 피해 아동의 최종 조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18년 기준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모두 고소, 고발, 사건처리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

고, 다음으로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순이다.

〈표 III-1-19〉 피해 아동 최종 조치결과

구분	지속 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단위: 건 계
2018					
보육교직원	101	5	712	-	818
유치원교직원	70	1	118	-	189
2017					
보육교직원	136	5	692	7	840
유치원교직원	17	-	263	1	281
2016					
보육교직원	74	10	501	2	587
유치원교직원	8	15	217	-	240
2015					
보육교직원	58	9	360	-	427
유치원교직원	30	2	171	-	203
2014					
보육교직원	73	14	208	-	295
유치원교직원	19	15	65	-	99

주: 2015, 2016년 만나지 못함 분류 기준에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3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2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2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2.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

2절은 보육·교육기관 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도 교육청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 현황을 정리하였다.

가. 어린이집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직원 집합교육은 97개 센터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 224회 41,470명(25,363개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255회 47,375명(28,849개소)으로 총 88,845명의 보육교직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108-109).

〈표 III-2-1〉 2018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실적

구분	내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자료집 제작(안전공제회 공동발행) - 2018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PPT 제작(1종)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자체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PDF 및 PPT) - 2019년 사례중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자료 제작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진 양성교육 진행(1회, 강사 121명) •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 모니터링(5개소) •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 진행(총 29,3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권리존중」 온라인 교육(19,502명)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9,721명)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39.

2018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전북, 충남 순이었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2018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단위: 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참여센터	96	25	7	2	6	1	1	5	1	19	
횟수	255	49	15	12	11	6	7	16	2	47	
참여인원	47,375	9,575	1,898	1,922	1,724	1,466	1,318	1,974	431	10,332	
구분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센터	8	2	2	2	5	1	3	4	2		
횟수	17	5	6	10	14	7	10	16	5		
참여인원	3,041	1,553	1,051	2,239	3,203	1,698	1,694	1,854	402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09.

최근 3년 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집합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은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3시간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함에 따라 총 39,171개소의 어린이집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25,363개의 어린이집에서 41,470명의 보육교직원이 참여하였고, 아

동학대 예방교육은 28,849개의 어린이집에서 47,375명의 보육교직원이 참여하였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이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의 총 수는 88,845명으로 전년도 대비 28,472명(47.2%)이 증가하였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100-111, 표 III-2-3 참조).

〈표 III-2-3〉 3개년 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집합교육)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안전사고예방	아동학대예방
전국 어린이집 수	42,565(100.0)	40,238(100.0)	39,171(100.0)	
참여 어린이집 수*	24,787(58.2)	31,363(77.9)	25,363(64.7)	28,849(73.6)
참여 보육교직원 수*	53,419(125.4)	60,373(150.0)	41,470(105.9)	47,375(120.9)

주: * 표시된 비율은 어린이집 수를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11.

〈표 III-2-4〉 2018년 기타 안전교육 현황

단위: 회, 명

지역	총계		아동학대예방		기타 예방교육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계	1,929	153,790	391	35,024	269	39,290
서울	609	42,496	71	7,271	116	13,610
부산	98	8,430	39	4,293	6	990
대구	27	2,165	6	154	4	766
인천	173	8,398	88	5,070	8	580
광주	76	10,294	6	660	5	2,084
대전	18	729	8	197	1	28
울산	92	4,170	4	139	14	1,457
세종	17	1,496	8	490	2	337
경기	410	38,419	64	8,029	56	11,570
경기북부	147	15,172	39	2,932	27	3,466
강원	10	587	9	455	-	-
충북	35	4,100	8	1,885	5	816
충남	58	3,244	11	580	8	882
전북	62	5,696	13	1,406	5	960
전남	13	1,646	1	36	1	137
경북	35	4,652	8	1,101	4	1,051
경남	35	1,631	6	235	7	556
제주	14	465	2	91	-	-

주: 총계에는 안전관리 교육횟수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12.

각 센터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외에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 기타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전체 35,024명(391회), 성폭력·성희롱예방 및 실종유괴예방교육 등의 교육이 실시되는 기타 예방교육은 전체 39,290명(269회)이 참여하였다. 지역별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42,49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38,419명, 경기 북부 15,172명 순이었다(표 III-2-4 참조).

3개년 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2,865회, 2017년 2,624회, 2018년 1,929회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안전관리 교육은 2016년 937회 46,153명이 참여하였으나, 2018년에는 1,269회 79,476명이 참여하였다. 반면, 아동학대예방교육과 기타 예방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은 모두 감소하였다(표 III-2-5 참조).

〈표 III-2-5〉 3개년 간 기타 안전교육 현황

단위: 회, 명

지역	총계		아동학대예방		기타 예방교육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2018년	1,929	153,790	391	35,024	269	39,290
2017년	2,624	175,447	632	52,191	392	67,173
2016년	2,865	208,245	866	72,000	352	65,531

주: 기타 예방교육의 경우, 2018년에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실종 유괴예방 등이 포함되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으로만 표기되어 있음.

총계에는 안전관리 교육횟수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12.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7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09.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89.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은 가정양육 지원사업 중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이 있다.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은 2017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통 부모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인식 강화와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2017년부터 클로버 부모교육 외에 4개의 부모교육(자녀권리존중, 가정 내 놀이

환경점검, 아동학대 예방, 포괄적 양육정보 부모교육)이 추가로 실시되었고, 2018년에는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이 추가되어 총 7개의 공통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2018년 공통 부모교육의 주제별 교육 현황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7회, 6,5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가 81회 1,602명, 다음으로 서울 72회 1,041명, 세종 3회 32명으로 가장 적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109; 표 III-2-6 참조).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비교하면,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모두 서울이 45회 8,824명, 49회 9,57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40회 7,514명, 47회 10,332명 순이다. 교육이 가장 적게 이루어진 곳은 세종으로 각각 1회 266명, 2회 431명이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165; 표 III-2-6 참조).

〈표 III-2-6〉 2018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역별 추진 현황: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단위: 회, 명

구분	공통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계	347	6,535	255	47,375
서울	72	1,041	49	9,575
부산	12	133	15	1,898
대구	13	185	12	1,922
인천	14	412	11	1,724
광주	2	33	6	1,466
대전	7	279	7	1,318
울산	9	134	16	1,974
세종	3	32	2	431
경기	81	1602	47	10,332
경기북부	21	544	17	3,041
강원	6	145	5	1,553
충북	9	203	6	1,051
충남	9	196	10	2,239
전북	43	744	14	3,203
전남	6	72	7	1,698
경북	7	290	10	1,694
경남	8	166	16	1,854
제주	25	324	5	402

자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09,165.

3개년 간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부모와 보육교직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통 부모교육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016년 135회에서 2017년 410회가 추진되었다가 2018년에는 347회 6,5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3개년 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 현황: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단위: 회, 명

지역	공통 부모교육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2018년	347	6,535	-	-	224	41,470	255	47,375
2017년	410	7,667	237	60,373	-	-	-	-
2016년	135	-	237	53,419	-	-	-	-

자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09, 165.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7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06, 162.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85, 145.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안전교육이 안전사고예방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진행되었다. 안전교육은 2016년 237회 53,419명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가 2017년에는 237회 60,373명으로 확대되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2018년에는 224회 41,470명, 아동학대예방교육은 255회 47,375명으로 총 479회 88,8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표 III-2-7 참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연도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은 〈표 III-2-8〉와 같다.

〈표 III-2-8〉 3개년 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내용

구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의 이해 •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이해 • 보육교직원 영유아권리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 이해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11.

2) 시·도 교육청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 현황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 권리보장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시·도별 교직원 대상의 예방교육은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아동학대 회복 및 대처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예방 및 인권보호 등의 교육이 원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3~5세 담당유치원 원장(감)과 교사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공감적 의사소통 유아언어 교육프로그램'과 '교실에서 꼭 교사가 알아야 할 유아안전교육'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앙 및 우수기관과 연계하여 교직원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보다는 안전에 대한 교육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 인권감수성을 비롯하여 유아의 인권과 관련된 교사 연수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은 안전교육과 인권 및 학교문화 직무연수를,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교원 마음성찰 연수를,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연수, 안전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연수, 교사의 인성 함양 교육, 안전 교육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에서는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방과후과정 전담사 직무연수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신고의무자교육,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II-2-9〉 시·도 교육청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보장 교육 내용

구분	교육대상	기간/시간	연수내용
중앙교육연수원	유치원교원	15차시 (원격)	•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지원
		1차시 (원격)	•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4차시 (원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5차시 (원격)	•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3~5세 담당 유치원 원장(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6차시 (원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공감적 의사소통 유아언어교육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② 공감적 의사소통의 전략에 대한 이해 ③ 유아의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유아 언어교육구성에 대한 이해 ④ 유아의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유아 언어교육의 실제 ⑤ 유아의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⑥ 유아의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부모 역할의 이해
	3~5세 담당 유아교육기관 교사 및 교육전문직	7차시 (원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꼭 교사가 알아야 할 유아안전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아 안전 및 안전교육의 필요성 이해 ② 생활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제 ③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제 ④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프로그램의 실제 ⑤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의 실제 ⑥ 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제 ⑦ 직업안전 및 응급처치교육프로그램의 실제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전 교원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권리 보호로 우리아이 지키기 ②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와 소통하기
	교원, 전문직	15시간/ 30시간	중앙 및 우수 기관 연계
	교사 교원	15시간 15시간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공·사립 유치원교원, 교육전문직		중앙 위탁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기본/심화) • 유치원 행복교육 인성함양 직무연수 • 안전한 교실 만들기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유치원 교사 행복인성 직무연수 유아교육관리자 인성교육 직무연수

구분	교육대상	기간/시간	연수내용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교육 실무원	2시간	• 인성 연수
	공·사립 유치원교원	6시간	• 유아안전교육
	공·사립 유치원교원	15시간/ 30시간	중앙 연수
	공·사립 유치원교사	15시간	
	공·사립 유치원 관리자 및 유아교육 전문직	20시간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공·사립 유치원교원	3시간	•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안전)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공·사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 관련자	15시간	•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3시간	• 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 - 아이들과 통(通)하는 행복한 교사
경기도 교육연수원	유치원교원, 초,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5차시 (원격)	• 학교 안전 위험성 진단 SKILL UP •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 학생생활 안전 매뉴얼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국·공·사립유치 원 원(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대상	15시간	• 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연수 ① 인권 감성 훈련 ② 인권의 이해 ③ 유아교육에서의 유아인권 감수성 훈련 ④ 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⑤ 유아인권교육: 알쏭달쏭 권리 알권리 ⑥ 사례로 보는 유아 인권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교원	15시간/ 30시간	• 안전교육 직무연수(기초/심화)
		15시간	• 인권/학교문화 직무연수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		15시간	• 교원 마음성찰 연수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공·사립 유치원교원	3시간	•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연수
		각 15시간 (원격)	• 안전 up!, 행복 up! • 학생 생활안전 매뉴얼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15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	유치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4차시 (원격)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구분	교육대상	기간/시간	연수내용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공·사립 유치원교원	4시간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연수
	공·사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전문직	20차시 (원격)	• 선생님의 자존감 UP, 소통에 날개를 달자 (교사 인성 함양 교육)
		15차시 (원격)	• 안전 UP! 행복 UP!
제주 유아교육진흥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5시간	• 방과후과정 전담사 직무연수 ①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② 아동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 자료: 1)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wch.go.kr> 에서 2019.4.30 인출.
 2) 경기도교육연수원: <https://www.gtie.go.kr/index.go> 에서 2019.4.30 인출.
 3)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http://gnchild.gne.go.kr> 에서 2019.4.30 인출.
 4)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https://www.gbeti.or.kr/> 에서 2019.4.30 인출.
 5)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s://iedu.gen.go.kr> 에서 2019.4.30 인출.
 6)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dge.go.kr/daegu-i/> 에서 2019.4.30 인출.
 7)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dje-i.go.kr> 에서 2019.4.30 인출.
 8)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childedu.pen.go.kr> 에서 2019.4.30 인출.
 9)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https://cybereduseoul-i.sen.go.kr> 에서 2019.4.30 인출.
 10)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uskids.kr> 에서 2019.4.30 인출.
 11)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s://child.ice.go.kr/> 에서 2019.4.30 인출.
 12)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 <http://iedu.da.jne.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62428320&siteId=iedu&menuUIType=top> 에서 2019.6.14 인출.
 13)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http://jb-i.kr> 에서 2019.4.30 인출.
 14) 제주유아교육진흥원: <http://www.jjkids.go.kr> 에서 2019.4.30 인출.
 15)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에서 2019.6.14 인출.
 16)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n-i.go.kr/2014/teacher/sub_01.jsp 에서 2019.6.14 인출.
 17)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biedu.go.kr> 에서 2019.4.30. 인출.

마. 아동학대 및 권리 관련 지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및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 관련 지표를 검토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인증) 통합지표와 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지표 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어린이집·유치원 평가 지표

먼저, 유치원 평가 지표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서는 아동학대 및 권리 관련 지표로 1-4의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지표와 관련하여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총 2개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3-4의 ‘등·하원의 안전’ 지표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으로 ‘3-4-1.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4-2. 어린이통학 버스를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유치원)’, ‘3-4-2.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어린이집)’ 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2개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3-5의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지표에는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라는 아동학대 관련된 평가항목 하나가 제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료에는 아동복지법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보육교사 자격정지 개별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4영역, 20개 지표로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및 권리와 관련된 지표에는 안전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2-3.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2-4.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2-5.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아동권리준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2-6.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준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까지 총 4개의 평가항목이 해당된다.

유치원 평가 지표,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지표 자료에서 추출한 지표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10〉 2019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개요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31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시행	4	1-1-1.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1-1-2. 영유아의 발달수준 및 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1-1-3.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목표 및 내용이 적절하며, 연계성이 있다. 1-1-4.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실시한다.
		1-2. 일과 운영	5	1-2-1. 계획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1-3. 교수-학습 방법 및 놀이지원	6			1-2-2.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1-2-3.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1-2-4.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1-2-5.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1-3-1. 주제에 적합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1-3-2.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1-3-3. 교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1-3-4.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를 지원한다.				
1-3-5.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1-3-6. 교사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다.				
1-4.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	6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1-4-2. 교사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한다.
				1-4-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1-4-4.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6. 교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에게 자신감을 준다.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4			1-5-1.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한다.
				1-5-2.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5-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1-5-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 시 적절히 개입한다.
1-6. 평가	4			1-6-1. 영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기록한다.
				1-6-2. 보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1-6-3. 영유아 평가결과를 보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부모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1-6-4.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안에 반영한다.
1-7.	2			1-7-1. 특별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일상생활		1-7-2. 영유아의 일상 경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도록 격려한다.
2. 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19	2-1. 실내 공간 구성	5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 구성한다. 2-1-2.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2-1-3.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2-1-4.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을 영유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2-1-5.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연령별, 주제별 또는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2-2. 실외 공간 구성	3	2-2-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2-2-2.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2-2-3.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2-3. 기관 운영	4	2-3-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2-3-2. 개별 영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2-3-3.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3-4. 예·결산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 의 연계	5	2-4-1. 부모와의 상호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2-4-2.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2-4-3.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2-4-4.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2-4-5.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2-5-1.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2-5-2. 종일반 및 맞춤택을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3. 건강·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3-1-2. 실내외 공간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하고 있다. 3-1-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3-1-4. 안전시설 및 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3-2. 급·간식	3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3. 건강증진을 위한	3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교육 및 관리		3-3-3. 영유아와 교직원의 경각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3-4. 등·하원의 안전	2	3-4-1.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4-2. 등·하원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3-5. 안전교육 및 사고대책	3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3-5-3. 영유아, 교직원 및 시설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4. 교직원	14	4-1. 원장의 리더십	4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1-2. 원장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며, 면담을 실시한다.
				4-1-3. 원장은 정기적인 교사회의 등을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4-1-4.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3	4-2-1. 교사실과 개인사물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4-2-2.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료 및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4-2-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3-1.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4-3-2.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규정히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4-3-3.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	4-4-1. 신규 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4-4-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4-4-3.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4-4.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9b). 2019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통합지표. pp.91-104.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안전, 교직원의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영역에는 영역별 평가지표와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은 총 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 까지 포함하면 지표 수는 총 31개이다. 국가수준 보육과정의 계획 및 수행, 어린이

집의 일과 운영과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상호작용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영역은 총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까지 포함하면 지표 수는 총 19개이다. 어린이집의 실내 및 실외 공간, 기관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관 운영 등이 바람직하게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건강·안전 영역은 총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까지 포함하면 지표 수는 총 15개이다. 청결과 안전에 대한 교육, 급식과 간식 관리,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교직원 영역은 총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항목 포함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의 리더십, 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제고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

〈표 Ⅲ-2-11〉 2019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내 아동학대 및 권리 지표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아동학대	3. 건강·안전	3-5. 안전 교육 및 사고대책	1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아동권리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2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19b). 2019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통합지표. pp. 91-10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지표는 3영역과 1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학대 지표는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아동권리 관련 지표는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Ⅲ-2-12〉 제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개요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1. 교육과정	29	1-1. 교육 계획 수립 및	4	1-1-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1-1-2. 유아의 발달수준 및 학급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시행		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1-1-3.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목표 및 내용이 적절하며, 연계성이 있다.	
	1-2. 일과 운영	5		5	1-1-4. 누리과정의 영역을 반영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1-2-1. 계획에 따라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1-2-2.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1-2-3.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1-2-4.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1-2-5. (특)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1-3. 교수-학습방법	6		6	1-3-1. 주제에 적합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1-3-2. 교사는 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1-3-3. 교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1-3-4. 교사는 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를 지원한다.
					1-3-5. 교사는 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1-3-6. 교사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다.
	1-4. 교사-유아 상호작용	6		6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유아를 존중한다.
					1-4-2. 교사는 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한다.
1-4-3. 교사는 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1-4-4. 교사는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6. 교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유아에게 자신감을 준다.					
1-5. 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4		4	1-5-1. 교사는 유아가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한다.	
				1-5-2.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5-3. 교사는 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1-5-4. 교사는 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 시 적절히 개입한다.	
1-6. 평가	4		4	1-6-1. 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기록한다.	
				1-6-2.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유아의 발달특성과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변화를 평가한다. 1-6-3. 유아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부모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1-6-4.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안에 반영한다.
2. 교육환경 및 운영 관리	20	2-1. 실내 공간 구성	5	2-1-1. 교실 내 흥미영역은 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 구성한다. 2-1-2. 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2-1-3.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2-1-4.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교재·교구들을 유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2-1-5. 비품과 교재·교구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연령별, 주제별 또는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2-2. 실외 공간 구성	3	2-2-1. 실외(옥외) 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2-2-2. 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2-2-3.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2-3. 기관 운영	5	2-3-1. 학급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2-3-2. 개별 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2-3-3. 신입 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3-4. 예·결산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2-3-5. 입학금과 수업료 외의 기타경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다.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2-4-1. 부모와의 상호 협의 하에 유치원을 개방한다. 2-4-2.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2-4-3.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2-4-4. 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2-4-5.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5. 방과후 과정	2	2-5-1. 특성화 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2-5-2. 방과후 과정을 위한 기본 시설·설비를 구비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3. 건강·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3-1-2. 실내외 공간을 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하고 있다. 3-1-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3-1-4. 안전시설 및 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3-2. 급·간식	3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영역	지표수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4. 교직원	1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3-1. 손 닦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3-4. 등·하원의 안전	2	3-3-3. 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3-4-1. 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5. 안전 교육 및 사고대책	3	3-4-2. 통학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조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3-5-1. 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유아학대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4-1. 원장의 리더십	4	3-5-3. 영유아, 교직원 및 시설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1-2. 원장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며, 면담을 실시한다.
				4-1-3. 원장은 정기적인 교사회의 등을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3	4-1-4. (사립)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4-2-1. 교사실과 개인사물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4-2-2.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료 및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2-3. 성인용 화장실/변기를 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4-3-1.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4-3-2.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4-3-3.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4-1. 신규 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4-4-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4-4-3.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교육부(2017). 제 4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pp.20-22.

2017년에 공개된 제 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는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과정과 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영역으로 구분된 점과, 하위 지표 및 세부항목까지 어린이집 평가 통합지표와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비슷하다. 다만, ‘영유아’라는 단어가 ‘유아’로,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수정되어 사용된 점이 다르다. 유치원 평가 지표는 어린이집 평가 지표와는 달리, 교육과정 영역에 ‘일상생활’ 지표가 없고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의 기관운영 지표에 기타경비에 대한 항목이 언급되어 있다. 어린이집 지표에는 없는 방과후 활동에 관한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직원 영역의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지표에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 실시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표 III-2-13〉 제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내 아동학대 및 권리 지표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아동학대	3. 건강·안전	3-5. 안전 교육 및 사고대책	1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아동권리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2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유아를 존중한다.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료: 교육부(2017). 제 4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pp.20-22.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내에서 아동학대는 ‘3-5-2’ 평가 항목에 교직원은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권리는 ‘1-4-1’ 평가 항목에 교사는 편견 없이 모든 유아를 존중한다는 것, ‘1-4-5’ 평가 항목에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2019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서 공개한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한 지표 내용과 동일하다.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자료의 영역별 지도·점검 항목에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행정처분의 기준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개별기준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14〉 어린이집 지도점검 아동학대 위반 처분기준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	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법 45조 제1항제 4호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폐쇄		
	2)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5 호까지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6호 중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 하는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중 자신 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 에 준하는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시설폐쇄		
	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다)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4) 「아동복지법」 제17조제7호, 제8호, 제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5) 「아동복지법」 제17조제9호에 해당 하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개별기준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 음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47조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 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 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료: 보건복지부(2014).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어린이집용). pp.60-61.



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어린이집의 행정 처분은 시설폐쇄나 운영정지 1년, 6개월 등으로 나뉘며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정지 1년, 6개월 등으로 나뉜다.

3)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평정치표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의 네 가지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15〉 부모모니터링 지표

평가영역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1. 건강 관리	4	1-1.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1-2.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1-3.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1-4.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2. 안전 관리	6	2-1. 실내의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의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3.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2-4.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들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2-5.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2-6.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3. 급식 관리	5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위생 관리	5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4-2. 급·배식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평가영역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4-5.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9a). 2019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pp.42-45.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평정지표 건강관리 4개, 안전관리 6개 건강관리와 위생 관리 영역은 각각 5개로 총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9a).

부모모니터링 지표 중 안전관리 영역에 아동학대 관련 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직원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하는 방법,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표 III-2-16〉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내 아동학대 지표

구분	평가영역	지표수	세부평가항목
아동학대	2. 안전관리	2	2-5.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2-6.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9a). 2019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pp.42-45.

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크리스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체크리스트는 신고의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체크리스트, 유치원 교직원용 자가체크리스트가 보급되어 있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2016년도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2-17 참조).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체크리스트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파악하기 위해 만든 체크리스트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015년에 보급되었다. 신고의무자 체크리스트와 마찬가지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2-17 참조).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는 2016년에 개발·보급된 것이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한 것이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2-17 참조).

〈표 III-2-17〉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크리스트 비교

구분	지표 수	확인방법	특징
신고의무자 ¹⁾	15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의무자의 체크리스트이므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흔이나 본인의 합리적 의심에 의거해 답해야 하는 문항들이 주를 이룸.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하라는 문구 있음.
보육교직원 ²⁾	15	전혀없음/1회/2회이상/거의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무개시 1주일 이내에 필수로 응답, 이후 분기별 혹은 반기별(연2회 정도) 사용을 권장함.
유치원교직원 ³⁾	15	예/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직원이 자기 행동 평가 용도로 활용 교직원 상호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 원장의 교직원 관리를 위한 활용

자료: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2 에서 2019. 5. 23 인출).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20 에서 2019. 06. 19 인출).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7 에서 2019. 5. 23 인출).

각 체크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의무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 상태와 아동 주변의 환경까지 고려하여 판단한 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교육 하는 교사로서 스스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의무자와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체크리스트 각 항목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 체크리스트 항목은 거의 유사하며, 신고의무자 체크리스트는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은 이후의 반응과 그 외의 다른 학대 의심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표 III-2-18〉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 비교

구분	신고의무자 ¹⁾	보육교직원 ²⁾	유치원교직원 ³⁾
항목		1.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5. 유아에게 비난, 원망, 거부, 우롱,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적이 있다.
		2.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6. 유아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15. 유아가 한 수행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준 적이 있다.
	1. 사고로 보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8.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1. 유아를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한 적이 있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둔적이 있다.	9. 유아를 교실이나 특정 장소에 혼자 있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강제한 적이 있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3.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4. 아동을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도구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2.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아를 억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10.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간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14. 교육활동 중에 유아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느라 유아를 방치한 적이 있다.
		11.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13.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4.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10. 유아의 신체부위를 만져 유아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속한 성지식을 보인다.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11.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성적 표현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다.	



구분	신고의무자 ¹⁾	보육교직원 ²⁾	유치원교직원 ³⁾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8. 수업시간이나 급·간식 시간에 유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적이 있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4.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3. 유아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하는 보복성 행동을 요구한 적이 있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7.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을 아동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	7. 유아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로 시킨 적이 있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12. 유아의 요구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
기타 문항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자료: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2 에서 2019. 5. 23 인출).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20 에서 2019. 06. 19 인출).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7 에서 2019. 5. 23 인출).

IV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의견

- 01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 02 아동학대 관련 교육
- 03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 04 시사점

IV.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의견

제4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아동학대 발생 원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과 가정의 신뢰,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교사의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가. 아동학대 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아동, 교사, 환경 등 사안별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개인요인

아동 개인요인이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원인인 경우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78.2%가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12.2%는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를 선택하였다. 먼저 기관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교사는 행동문제를 꼽은 비율이 가정보다는 높고, 영아 비율이 높은 가정은 정서적 문제나 기질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대도시보다 행동문제, 대도시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정서적 문제를 아동학대

원인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원규모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표 IV-1-1〉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기질	장애	정서적 문제(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	(언어, 신체 등) 발달 문제	기타	계(수)
전체	4.6	0.4	12.2	78.2	1.3	3.4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0	-	10.2	81.6	2.0	4.1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2.6	1.3	11.5	79.5	2.6	2.6	100.0(78)
가정	7.2	-	13.5	75.7	-	3.6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6.7	-	18.3	69.2	1.9	3.8	100.0(104)
중소도시	4.3	1.1	6.5	87.0	-	1.1	100.0(92)
읍면지역	-	-	9.5	81.0	2.4	7.1	100.0(42)
현원							
20명 이하	6.5	0.8	13.8	75.6	-	3.3	100.0(123)
21~40명 미만	-	-	11.4	82.9	-	5.7	100.0(35)
40~80명 미만	5.5	-	9.1	78.2	3.6	3.6	100.0(55)
80명 이상	-	-	12.0	84.0	4.0	-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 조사」 결과임.

〈표 IV-1-2〉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아동: 유치원

단위: %(명)

구분	기질	장애	정서적 문제(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	행동문제(과잉 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	(언어, 신체 등) 발달 문제	기타	계(수)
전체	5.3		14.5	77.1	1.1	1.9	100.0(262)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	100.0	-	-	100.0(13)
공립 병설	7.6		12.6	76.5	1.7	1.7	100.0(119)
사립 법인	2.9		20.0	68.6	2.9	5.7	100.0(35)
사립 사인	4.2		16.8	77.9	-	1.1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5.5		12.8	77.1	1.8	2.8	100.0(109)
중소도시	6.1		12.2	78.6	1.0	2.0	100.0(98)
읍면지역	3.6		21.8	74.5	-	-	100.0(55)
현원							
50명 이하	5.9		14.7	76.5	1.0	2.0	100.0(102)
51~100명 미만	5.5		13.2	80.2	1.1	-	100.0(91)
100명 이상	4.3		15.9	73.9	1.4	4.3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유치원 교사 77.1%가 아동 개인요인 중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으며, 14.5%는 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 5.3%는 기질을 꼽았다. 기관 유형 및 현원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정서적 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리하면,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원인이 아동 개인요인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모두 행동문제(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가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2 참조).

2) 교사 개인요인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요인인 경우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6.2%가 직무스트레스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29.8%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11.3%는 아동 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을 들었다(표 IV-1-3 참조).

〈표 IV-1-3〉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직무 스트 레스	정신 건강 문제	아동발달 등 전문성 이해 부족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아동권리 또는 인권 인식 부족	아동 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	기타	계(수)
전체	46.2	2.5	4.6	29.8	3.8	11.3	1.7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57.1	4.1	2.0	24.5	-	8.2	4.1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42.3	3.8	7.7	33.3	-	12.8	-	100.0(78)
가정	44.1	0.9	3.6	29.7	8.1	11.7	1.8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51.9	1.9	4.8	25.0	3.8	11.5	1.0	100.0(104)
중소도시	38.0	3.3	4.3	34.8	4.3	14.1	1.1	100.0(92)
읍면지역	50.0	2.4	4.8	31.0	2.4	4.8	4.8	100.0(42)
현원								
20명 이하	44.7	0.8	4.1	30.1	7.3	11.4	1.6	100.0(123)
21~40명 미만	60.0	2.9	-	25.7	-	8.6	2.9	100.0(35)
40~80명 미만	45.5	3.6	5.5	32.7	-	10.9	1.8	100.0(55)
80명 이상	36.0	8.0	12.0	28.0	-	16.0	-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직무스트레스를 꼽은 비율이 민간/법인 단체등이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등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대도시나 읍면지역은 직무스트레스, 중소도시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1-3 참조).

한편, 유치원 교사는 교사 요인 중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가 34.4%로 높고, 그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가 31.7%,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이 16.8%이고, 나머지는 5% 미만 정도였다. 기관유형 및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직무스트레스, 읍면지역일수록 정신건강문제나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표 IV-1-4 참조).

〈표 IV-1-4〉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교사: 유치원

단위: %(명)

구분	직무 스트 레스	정신 건강 문제	아동발달 등 이해 부족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아동권리 또는 인권 인식 부족	아동 문제행동 대처능력 부족	기타	계(수)
전체	31.7	4.6	4.6	34.4	4.6	16.8	3.4	100.0(262)
기관 유형								
공립 단설	46.2	15.4	15.4	15.4	-	7.7	-	100.0(13)
공립 병설	31.1	5.0	4.2	33.6	5.0	16.8	4.2	100.0(119)
사립 법인	28.6	-	5.7	37.1	8.6	14.3	5.7	100.0(35)
사립 사인	31.6	4.2	3.2	36.8	3.2	18.9	2.1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37.6	2.8	2.8	33.9	3.7	13.8	5.5	100.0(109)
중소도시	32.7	4.1	6.1	35.7	3.1	15.3	3.1	100.0(98)
읍면지역	18.2	9.1	5.5	32.7	9.1	25.5	-	100.0(55)
현원								
50명 이하	34.3	3.9	6.9	33.3	3.9	16.7	1.0	100.0(102)
51~100명 미만	27.5	5.5	2.2	34.1	6.6	18.7	5.5	100.0(91)
100명 이상	33.3	4.3	4.3	36.2	2.9	14.5	4.3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사 개인요인 중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를 아동학대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3) 환경 요인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환경 요인인 경우 주요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8.7%가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꼽았고, 다음으로 18.9%가 과도한 업무량, 11.3%는 장시간 근무시간, 7.6%, 7.1%는 각각 교사처우와 교사 양성과정 문제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높은 교사대 아동비율, 민간/법인단체 등은 과도한 업무량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80명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교사 처우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1-5 참조).

〈표 IV-1-5〉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장시간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처우	높은 교사대 아동 비율	교사 휴게 시간	교사 관리 부족	교사 양성 과정 문제	교사 재교육 부족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 문화	기타	계(수)
전체	11.3	18.9	7.6	48.7	1.3	0.8	7.1	0.4	2.1	1.7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2.2	12.2	10.2	61.2	2.0	-	-	-	-	2.0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7.7	26.9	10.3	37.2	1.3	1.3	10.3	1.3	1.3	2.6	100.0(78)
가정	13.5	16.2	4.5	51.4	0.9	0.9	8.1	-	3.6	0.9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12.5	23.1	8.7	46.2	1.0	1.0	4.8	-	1.9	1.0	100.0(104)
중소도시	12.0	12.0	7.6	52.2	-	1.1	9.8	1.1	3.3	1.1	100.0(92)
읍면지역	7.1	23.8	4.8	47.6	4.8	-	7.1	-	-	4.8	100.0(42)
현원											
20명 이하	13.0	15.4	6.5	50.4	0.8	0.8	8.1	-	4.1	0.8	100.0(123)
21~40명 미만	11.4	31.4	8.6	40.0	2.9	2.9	-	-	-	2.9	100.0(35)
40~80명 미만	7.3	20.0	5.5	54.5	1.8	-	9.1	-	-	1.8	100.0(55)
80명 이상	12.0	16.0	16.0	40.0	-	-	8.0	4.0	-	4.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환경인 경우 주요 요인으로 유치원 교사 50.8%가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꼽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업무량 21.4%, 장시

간 근무시간 9.5%, 교사 양성과정 문제 5.7% 순이었다. 기관 유형 및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읍면지역일수록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휴게시간, 교사 양성과정 문제, 교사 재교육 부족 등의 문제, 도시지역일수록 장시간 근무시간, 과도한 업무량 등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표 IV-1-6 참조).

〈표 IV-1-6〉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 - 환경: 유치원

단위: %(명)

구분	장시간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량	교사 처우	높은 교사대 아동 비율	교사 휴게 시간	교사 관리 부족	교사 양성 과정 문제	교사 재교육 부족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 문화	기타	계(수)
전체	9.5	21.4	3.4	50.8	2.3	0.8	5.7	2.3	1.9	1.9	100.0(262)
기관 유형											
공립 단설	7.7	15.4	-	61.5	7.7	-	-	-	7.7	-	100.0(13)
공립 병설	6.7	20.2	1.7	58.0	0.8	-	6.7	2.5	2.5	0.8	100.0(119)
사립 법인	5.7	11.4	5.7	57.1	5.7	2.9	5.7	2.9	2.9	-	100.0(35)
사립 사인	14.7	27.4	5.3	37.9	2.1	1.1	5.3	2.1	-	4.2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11.9	22.9	3.7	49.5	1.8	0.9	4.6	0.9	0.9	2.8	100.0(109)
중소도시	7.1	21.4	5.1	51.0	2.0	1.0	6.1	1.0	3.1	2.0	100.0(98)
읍면지역	9.1	18.2	-	52.7	3.6	-	7.3	7.3	1.8	-	100.0(55)
현원											
50명 이하	7.8	21.6	2.0	54.9	2.0	-	6.9	2.0	2.0	1.0	100.0(102)
51~100명 미만	9.9	25.3	3.3	46.2	3.3	2.2	4.4	3.3	1.1	1.1	100.0(91)
100명 이상	11.6	15.9	5.8	50.7	1.4	-	5.8	1.4	2.9	4.3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나. 아동학대 예방 위한 개선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1,2순위로 조사하였다. 1순위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68.5%로 높고, 다음으로 교사 처우가 18.1%, 교사 휴게시간과 교사 양성과정이 각각 4.2% 순이었다. 2순위는 교사 처우가 36.5%, 교사 휴게시간이 16.8%, 교사 대 아동비율 15.5%, 교사 양성과정이 11.8%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84.0%로 다빈도이고, 다음으로 교사 처우가 54.6%, 교사 휴게시간이 21.0%, 교사 양성과정 16.0% 순이었다.

〈표 IV-1-7〉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어린이집(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기본교육 과정/누리과정 시간	교사 처우	교사 휴게 시간	어린이집 내 조직 문화	교사 현직 교육	교사 양성과정	기타	계(수)
1순위	68.5	2.5	18.1	4.2	0.8	0.8	4.2	0.8	100.0(238)
2순위	15.5	6.3	36.5	16.8	5.1	4.7	11.8	3.4	100.0(238)
1+2순위	84.0	8.8	54.6	21.0	5.9	5.5	16.0	4.2	(2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표 IV-1-8〉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다 가정 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도시지역일수록 교사 대 아동 비율, 읍면지역일수록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현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1-8〉 제 특성별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어린이집(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기본교육 과정/누리과정 시간	교사 처우	교사 휴게 시간	어린이집 내 조직 문화	교사 현직 교육	교사 양성과정	기타	계(수)
전체	68.5	2.5	18.1	4.2	0.8	0.8	4.2	0.8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67.3	6.1	16.3	6.1	-	-	4.1	-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67.9	2.6	14.1	7.7	-	-	5.1	2.6	100.0(78)
가정	69.4	0.9	21.6	0.9	1.8	1.8	3.6	-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73.1	1.9	19.2	1.9	1.0	1.0	1.0	1.0	100.0(104)
중소도시	65.2	3.3	16.3	6.5	1.1	1.1	6.5	-	100.0(92)
읍면지역	64.3	2.4	19.0	4.8	-	-	7.1	2.4	100.0(42)
현원									
20명 이하	69.9	0.8	21.1	1.6	1.6	1.6	3.3	-	100.0(123)
21~40명 미만	68.6	-	17.1	11.4	-	-	-	2.9	100.0(35)
40~80명 미만	67.3	5.5	12.7	5.5	-	-	9.1	-	100.0(55)
80명 이상	64.0	8.0	16.0	4.0	-	-	4.0	4.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유치원 교사에게도 질문하였다. 1순위로 교사 대 아동 비율 71.4%, 그 다음으로 교사 처우가 13.4%, 교사 양성과정 6.5%, 교사 휴게시간이 4.2% 순이었다. 2순위로는 교사 처우가 29.7%, 교사 양성과정 17.2%, 교사 휴게시간이 16.8%, 교사 대 아동비율이 12.2%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이 8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사 처우가 43.1%, 교사 양성과정 23.7%, 교사 휴게시간 21.0%, 교사 현직교육 10.7% 순이었다.

〈표 IV-1-9〉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유치원(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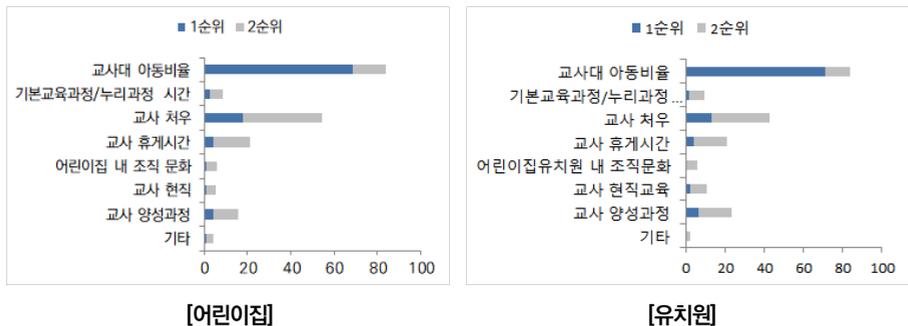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기본교육과정/누리과정 시간	교사 처우	교사 휴게시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문화	교사 현직 교육	교사 양성과정	기타	계(수)
1순위	71.4	1.5	13.4	4.2	0.8	2.3	6.5	-	100.0(262)
2순위	12.2	8.4	29.7	16.8	4.9	8.4	17.2	2.3	100.0(262)
1+2순위	83.6	9.9	43.1	21.0	5.7	10.7	23.7	2.3	(2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순위를 조사한 것이다. 공립단설이나 공립 병설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교사 처우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 규모별로는 현원에 비례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IV-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2순위



자료: 〈표 IV-1-7〉, 〈표 IV-1-9〉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표 IV-1-10〉 제 특성별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부분: 유치원(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기본교육과정/누리과정 시간	교사 처우	교사 휴게시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문화	교사 현직 교육	교사 양성과정	계(수)
전체	71.4	1.5	13.4	4.2	0.8	2.3	6.5	100.0(262)
기관 유형								
공립 단설	92.3	7.7	-	-	-	-	-	100.0(13)
공립 병설	81.5	1.7	5.9	0.8	1.7	2.5	5.9	100.0(119)
사립 법인	74.3	-	17.1	2.9	-	-	5.7	100.0(35)
사립 사인	54.7	1.1	23.2	9.5	-	3.2	8.4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72.5	1.8	14.7	4.6	-	0.9	5.5	100.0(109)
중소도시	70.4	1.0	15.3	5.1	1.0	-	7.1	100.0(98)
읍면지역	70.9	1.8	7.3	1.8	1.8	9.1	7.3	100.0(55)
현원								
50명 이하	75.5	2.9	7.8	2.0	2.0	2.9	6.9	100.0(102)
51~100명 미만	68.1	-	16.5	8.8	-	2.2	4.4	100.0(91)
100명 이상	69.6	1.4	17.4	1.4	-	1.4	8.7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다. 교사의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신고 인식수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보육)교직원인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대부분 교사이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일과 중 급식시간이나 낮잠시간에 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높은 시간

〈표 IV-1-11〉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일과시간을 1,2순위로 알아본 것이다.

1순위로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3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급식시간 33.2%, 낮잠시간 9.2%, 하원시간 7.6%, 등원시간 5.5% 순이었다. 2순위는 급식시간이 29.4%,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19.7%, 낮잠시간 16.4%, 하원시간 15.9%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급식시간이 6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57.1%, 낮잠시간 25.6%, 하원시간 23.5% 순이었다.

〈표 IV-1-11〉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어린이집(1+2순위)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간	오전 자유 놀이	오전 간식 시간	급식 시간	낮잠 시간	오후 간식 시간	특별활동 시간	하원 시간	기타	계(수)
1순위	5.5	37.4	1.3	33.2	9.2	2.9	0.8	7.6	2.1	100.0(238)
2순위	6.3	19.7	0.4	29.4	16.4	3.8	3.8	15.9	4.2	100.0(238)
1+2순위	11.8	57.1	1.7	62.6	25.6	6.7	4.6	23.5	6.3	(2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결과임.

〈표 IV-1-12〉는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기관유형으로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가정 오전 자유놀이 시간, 민간/법인단체 등은 급식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오전 자유놀이 시간이나 급식시간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현원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1-12〉 하루 일과 중 제 특성별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어린이집(1순위)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간	오전 자유 놀이	오전 간식 시간	급식 시간	낮잠 시간	오후 간식 시간	특별활동 동시간	하원 시간	기타	계(수)
전체	5.5	37.4	1.3	33.2	9.2	2.9	0.8	7.6	2.1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6.1	38.8	2.0	30.6	10.2	2.0	-	8.2	2.0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2.6	30.8	1.3	38.5	10.3	3.8	-	9.0	3.8	100.0(78)
가정	7.2	41.4	0.9	30.6	8.1	2.7	1.8	6.3	0.9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4.8	37.5	1.0	35.6	11.5	1.9	1.0	3.8	2.9	100.0(104)
중소도시	7.6	35.9	1.1	32.6	7.6	4.3	1.1	8.7	1.1	100.0(92)
읍면지역	2.4	40.5	2.4	28.6	7.1	2.4	-	14.3	2.4	100.0(42)
현원										
20명 이하	6.5	40.7	0.8	30.1	9.8	3.3	1.6	6.5	0.8	100.0(123)
21~40명 미만	2.9	34.3	-	31.4	8.6	2.9	-	14.3	5.7	100.0(35)
40~80명 미만	3.6	29.1	1.8	41.8	10.9	3.6	-	7.3	1.8	100.0(55)
80명 이상	8.0	44.0	4.0	32.0	4.0	-	-	4.0	4.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한편, 유치원 교사가 하루 일과 중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1,2순위로 알아보면 <표 IV-1-13>와 같다. 1순위로 급식시간이 37.4%, 오전자유놀이시간이 19.5%, 방과후과정시간 13.7% 순이고, 2순위는 급식시간이 23.3%, 방과후과정시간 19.1%, 오전 자유놀이시간 16.8%, 하원시간 14.1%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급식시간이 6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전자유놀이와 방과후과정시간이 각각 36.3%, 32.8%, 하원시간 18.3%, 등원시간 13.7%,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시간 12.6% 순이었다.

<표 IV-1-13>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유치원(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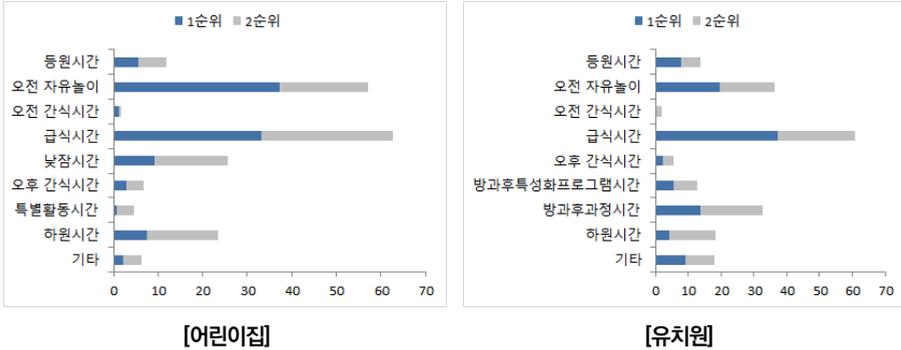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간	오전 자유놀이	오전 간식 시간	급식 시간	오후 간식 시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시간	방과후 과정시간	하원 시간	기타	계(수)
1순위	8.0	19.5	-	37.4	2.3	5.7	13.7	4.2	9.2	100.0(262)
2순위	5.7	16.8	1.9	23.3	3.4	6.9	19.1	14.1	8.7	100.0(262)
1+2순위	13.7	36.3	1.9	60.7	5.7	12.6	32.8	18.3	17.9	(2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유치원 교사의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은 오전 자유놀이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립 법인은 급식시간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급식시간이나 오전 자유놀이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급식시간이나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시간, 규모가 작을수록 등원시간과 오전 자유놀이시간을 꼽을 비율이 높았다.

[그림 IV-1-2]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1+2순위



자료: <표 IV-1-11>, <표 IV-1-13>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표 IV-1-14> 제 특성별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 유치원(1순위)

단위: %(명)

구분	등원 시간	오전 자유 놀이	급식 시간	오후 간식 시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시간	방과후과정시간	하원 시간	기타	계(수)
전체	8.0	19.5	37.4	2.3	5.7	13.7	4.2	9.2	100.0(262)
기관 유형									
공립 단설	7.7	38.5	30.8	-	7.7	-	7.7	7.7	100.0(13)
공립 병설	6.7	27.7	36.1	2.5	1.7	10.1	1.7	13.4	100.0(119)
사립 법인	5.7	20.0	42.9	2.9	8.6	14.3	2.9	2.9	100.0(35)
사립 사인	10.5	6.3	37.9	2.1	9.5	20.0	7.4	6.3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10.1	22.0	36.7	1.8	3.7	11.9	4.6	9.2	100.0(109)
중소도시	7.1	18.4	41.8	2.0	6.1	11.2	3.1	10.2	100.0(98)
읍면지역	5.5	16.4	30.9	3.6	9.1	21.8	5.5	7.3	100.0(55)
현원									
50명 이하	9.8	23.5	35.3	2.0	3.9	9.8	2.0	13.7	100.0(102)
51~100명 미만	6.6	18.7	38.5	1.1	4.4	17.6	5.5	7.7	100.0(91)
100명 이상	7.2	14.5	39.1	4.3	10.1	14.5	5.8	4.3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2) 아동학대 목격(발견) 시 대처행동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목격(발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8.7%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고, 48.7%는 고민, 2.1%는 못 본체한다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도 10.5%로 높았다. 제 특성별로 보면, 가정 어린이집은 목격 즉시 신고한다와 고민한다 둘다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지역에 상관 없이 고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원장 또는 동료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 목격할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51.3%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 36.1%는 고민한다고 답하였다. 못 본체한다는 의견은 0.8%로 소수이었다. 기타 의견도 11.8%로 높았다. 기관유형 및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도시지역일수록 고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견도 고민한다는 의견이 1/3이 넘는데 이 또한 신고에 따른 보복 등의 두려움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1-15〉 아동학대 행위 발견 또는 목격 시 대처행동: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원장·동료교사 아동학대 행위 목격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견				계(수)
	목격 즉시 신고	고민	못 본 체함 (목인)	기타	목격 즉시 신고	고민	못 본 체함 (목인)	기타	
전체	38.7	48.7	2.1	10.5	51.3	36.1	0.8	11.8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8.8	42.9	2.0	16.3	51.0	32.7	2.0	14.3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35.9	47.4	2.6	14.1	53.8	30.8	-	15.4	100.0(78)
가정	40.5	52.3	1.8	5.4	49.5	41.4	0.9	8.1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42.3	46.2	2.9	8.7	51.0	38.5	1.0	9.6	100.0(104)
중소도시	37.0	54.3	1.1	7.6	52.2	34.8	-	13.0	100.0(92)
읍면지역	33.3	42.9	2.4	21.4	50.0	33.3	2.4	14.3	100.0(42)
현원									
20명 이하	39.8	50.4	1.6	8.1	51.2	38.2	0.8	9.8	100.0(123)
21~40명 미만	22.9	57.1	5.7	14.3	45.7	42.9	-	11.4	100.0(35)
40~80명 미만	45.5	41.8	1.8	10.9	52.7	30.9	1.8	14.5	100.0(55)
80명 이상	40.0	44.0	-	16.0	56.0	28.0	-	16.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표 IV-1-16〉은 유치원 교사가 원장동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대처행동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먼저 원장 또는 동료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 목격 즉시 신고한다는 의견은 42.4%, 고민한다 47.7%, 못본체 한다 0.4% 정도이었다. 기타는 9.5%로 높았다. 제 특성별로는 공립 단설이 사립 사인에 비해 목격 즉시 신고한다는 의견이 많고, 사립 사인은 고민한다는 의견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현원규모별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고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지역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목격 즉시 신고한다는 의견이 사립 법인 및 사인에 비해 높았다. 사립 유치원 교사가 원장 또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을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의견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1-16〉 아동학대 행위 발견 또는 목격 시 대처행동: 유치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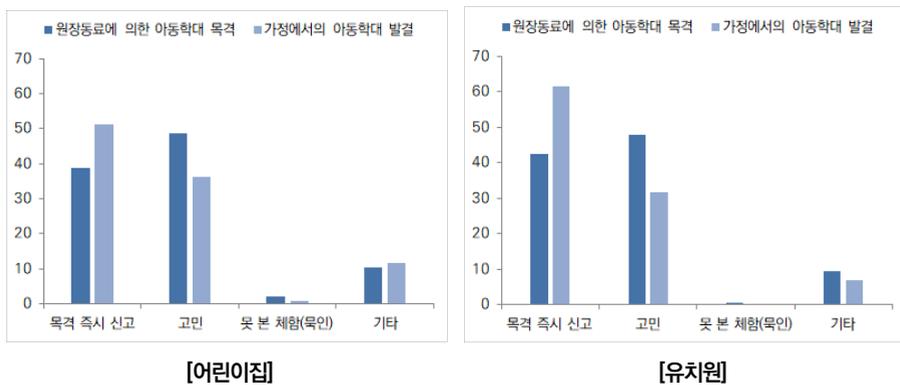
구분	원장·동료교사 아동학대 행위 목격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견				계(수)
	목격 즉시 신고	고민	못 본 체함 (묵인)	기타	목격 즉시 신고	고민	못 본 체함 (묵인)	기타	
전체	42.4	47.7	0.4	9.5	61.5	31.7	6.9	100.0(262)	
기관 유형									
공립 단설	53.8	30.8	-	15.4	76.9	7.7	15.4	100.0(13)	
공립 병설	46.2	47.1	-	6.7	73.1	19.3	7.6	100.0(119)	
사립 법인	42.9	45.7	2.9	8.6	48.6	42.9	8.6	100.0(35)	
사립 사인	35.8	51.6	-	12.6	49.5	46.3	4.2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43.1	44.0	0.9	11.9	62.4	33.9	3.7	100.0(109)	
중소도시	36.7	53.1	-	10.2	59.2	30.6	10.2	100.0(98)	
읍면지역	50.9	45.5	-	3.6	63.6	29.1	7.3	100.0(55)	
현원									
50명 이하	45.1	50.0	-	4.9	68.6	27.5	3.9	100.0(102)	
51~100명 미만	41.8	42.9	-	15.4	62.6	25.3	12.1	100.0(91)	
100명 이상	39.1	50.7	1.4	8.7	49.3	46.4	4.3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61.5%는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지만, 31.7%는 고민한다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이 6.9%로 높았다. 기관유형

별로는 공립 단설과 병설은 목격 즉시 신고한다는 비율이 70%를 상회하지만 사립 법인과 사인은 고민한다는 비율이 40~50% 사이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목격 즉시 신고한다, 고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치원 교사 대부분 신고에 따른 보복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IV-1-3] 아동학대를 목격(발견) 했을 때 대처행위



자료: <표 IV-1-15>, <표 IV-1-16>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2. 아동학대 관련 교육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²³⁾.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9.6%가 2018년 한 해 동안 1시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http://www.law.go.kr> 2019.6.25 인출).

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는 전혀 없었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표 IV-2-1 참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0.2%로 가장 높고, 재직 중인 어린이집 46.8%, 인권교육전문기관 26.2%, 시도청 16.5%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인권교육전문기관, 시도청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은 유아교육진흥원, 재직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읍면지역일수록 기타 기관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IV-2-1 참조).

〈표 IV-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1시간 이상 이수	교육 받지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 청	시도 교육 청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유아 교육 진흥 원	인권 교육 전문 기관	재직 어린이 집/유 치원	기타 (수)
전체	99.6	-	0.4	100.0(238)	16.5	8.0	80.2	13.1	26.2	46.8	11.0 (237)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00.0	-	-	100.0(49)	20.4	8.2	85.7	8.2	34.7	49.0	10.2 (49)
민간/법인단체등	100.0	-	-	100.0(78)	17.9	10.3	74.4	15.4	25.6	56.4	10.3 (78)
가정	99.1	-	0.9	100.0(111)	13.6	6.4	81.8	13.6	22.7	39.1	11.8 (110)
지역규모											
대도시	100.0	-	-	100.0(104)	21.2	6.7	83.7	16.3	27.9	53.8	7.7 (104)
중소도시	98.9	-	1.1	100.0(92)	11.0	9.9	79.1	9.9	23.1	35.2	12.1 (91)
읍면지역	100.0	-	-	100.0(42)	16.7	7.1	73.8	11.9	28.6	54.8	16.7 (42)
현원											
20명 이하	99.2	-	0.8	100.0(123)	14.8	5.7	82.8	14.8	22.1	39.3	11.5 (122)
21~40명 미만	100.0	-	-	100.0(35)	17.1	8.6	71.4	14.3	34.3	34.3	11.4 (35)
40~80명 미만	100.0	-	-	100.0(55)	23.6	9.1	81.8	10.9	29.1	63.6	10.9 (55)
80명 이상	100.0	-	-	100.0(25)	8.0	16.0	76.0	8.0	28.0	64.0	8.0 (25)

주: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한편, 유치원 교사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97.7%가 2018년 한 해동안 1시간 이상 이수를 받았다고 답하였고, 1.1%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나, 사립 사인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3.2%로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IV-2-2 참조).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은 재직 어린이집/유치원이 58.6%, 시도교육청이 55.5%로 높았고, 인권교육 전문기관과 유아교육진흥원이 각각 19.5%, 17.2%, 기타 10.2%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단설은 재직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지만, 사립 법인은 시도청이나 인권교육 전문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 및 현원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IV-2-2 참조).

〈표 IV-2-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유치원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1시간 교육 이상 받지 이수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 청	시도 교육 청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유아 교육 진흥 원	인권 교육 전문 기관	재직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수)	
전체	97.7	1.1	1.1	100.0(262)	5.5	55.5	5.1	17.2	19.5	58.6	10.2	(256)
기관 유형												
공립 단설	100.0	-	-	100.0(13)	-	61.5	15.4	30.8	23.1	92.3	15.4	(13)
공립 병설	98.3	-	1.7	100.0(119)	4.3	59.0	0.9	10.3	14.5	57.3	16.2	(117)
사립 법인	97.1	-	2.9	100.0(35)	17.6	50.0	5.9	11.8	26.5	64.7	2.9	(34)
사립 사인	96.8	3.2	-	100.0(95)	3.3	52.2	8.7	26.1	22.8	53.3	4.3	(92)
지역규모												
대도시	98.2	0.9	0.9	100.0(109)	6.5	57.0	7.5	25.2	19.6	56.1	8.4	(107)
중소도시	98.0	2.0	-	100.0(98)	3.1	52.1	3.1	6.3	19.8	65.6	11.5	(96)
읍면지역	96.4	-	3.6	100.0(55)	7.5	58.5	3.8	20.8	18.9	50.9	11.3	(53)
현원												
50명 이하	97.1	1.0	2.0	100.0(102)	6.1	54.5	1.0	10.1	15.2	51.5	16.2	(99)
51~100명 미만	98.9	-	1.1	100.0(91)	4.4	56.7	7.8	23.3	23.3	63.3	4.4	(90)
100명 이상	97.1	2.9	-	100.0(69)	6.0	55.2	7.5	19.4	20.9	62.7	9.0	(67)

주: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교육기관을 추가 조사하였다.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권교육 전문기관 14.3%, 재직 어린이집/유치원 11.0%, 시도청



4.2%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인권교육 전문기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시도청, 도시지역일수록 재직 어린이집/유치원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IV-2-3 참조).

〈표 IV-2-3〉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 된 교육기관: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 진흥원	인권교육 전문기관	재직 어린이집/유치원	기타	계(수)
전체	4.2	1.3	62.4	2.5	14.3	11.0	4.2	100.0(237)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4.1	2.0	57.1	2.0	20.4	8.2	6.1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3.8	2.6	59.0	2.6	15.4	11.5	5.1	100.0(78)
가정	4.5	-	67.3	2.7	10.9	11.8	2.7	100.0(110)
지역규모								
대도시	3.8	-	62.5	1.9	16.3	12.5	2.9	100.0(104)
중소도시	4.4	2.2	64.8	3.3	12.1	11.0	2.2	100.0(91)
읍면지역	4.8	2.4	57.1	2.4	14.3	7.1	11.9	100.0(42)
현원								
20명 이하	6.6	-	66.4	2.5	10.7	11.5	2.5	100.0(122)
21~40명 미만	2.9	2.9	57.1	2.9	17.1	8.6	8.6	100.0(35)
40~80명 미만	1.8	3.6	58.2	-	20.0	12.7	3.6	100.0(55)
80명 이상	-	-	60.0	8.0	16.0	8.0	8.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표 IV-2-4〉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기관을 추가 조사한 것이다.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기관은 시도 교육청이 35.5%로 가장 높고, 재직 유치원/어린이집 34.8%, 인권교육기관 12.5% 순이었다. 공립단설은 재직 유치원/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립 사인은 유아교육진흥원이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 단설, 사립 법인의 경우 재직 중인 유치원이 각각 53.8%,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립 병설과 사립 사인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각각 38.5%,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

원 교사들의 경우 지역규모와 현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재직 유치원이나 시도 교육청에서 받았던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재직 유치원/어린이집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2-4〉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 된 교육기관: 유치원

단위: %(명)

구분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인권교육 전문기관	재직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계(수)
전체	2.0	35.5	0.8	7.8	12.5	34.8	6.6	100.0(256)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30.8	-	-	15.4	53.8	-	100.0(13)
공립 병설	0.9	38.5	-	4.3	12.0	34.2	10.3	100.0(117)
사립 법인	8.8	35.3	-	5.9	8.8	38.2	2.9	100.0(34)
사립 사인	1.1	32.6	2.2	14.1	14.1	31.5	4.3	100.0(92)
지역규모								
대도시	1.9	30.8	-	14.0	13.1	35.5	4.7	100.0(107)
중소도시	1.0	40.6	2.1	2.1	10.4	35.4	8.3	100.0(96)
읍면지역	3.8	35.8	-	5.7	15.1	32.1	7.5	100.0(53)
현원								
50명 이하	2.0	38.4	-	5.1	13.1	30.3	11.1	100.0(99)
51~100명 미만	1.1	32.2	1.1	11.1	13.3	38.9	2.2	100.0(90)
100명 이상	3.0	35.8	1.5	7.5	10.4	35.8	6.0	100.0(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7.9%가 2018년 1년 한 해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미취업 및 휴직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하지만,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95.9%로 낮았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0.7%로 높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40.8%, 시도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아교육진흥원이 각각 15% 내외 정도이었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IV-2-5 참조).

〈표 IV-2-5〉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교육 이수	교육 받지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 청	시도 교육 청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유아 교육 진흥 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기타	(수)
전체	97.9	-	2.1	100.0(238)	16.3	8.2	80.7	12.4	14.6	40.8	16.7	(233)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95.9	-	4.1	100.0(49)	25.5	4.3	85.1	10.6	27.7	38.3	17.0	(47)
민간/법인단체등	100.0	-	-	100.0(78)	16.7	9.0	76.9	16.7	16.7	46.2	12.8	(78)
가정	97.3	-	2.7	100.0(111)	12.0	9.3	81.5	10.2	7.4	38.0	19.4	(108)
지역규모												
대도시	97.1	-	2.9	100.0(104)	21.8	5.9	81.2	9.9	12.9	43.6	10.9	(101)
중소도시	98.9	-	1.1	100.0(92)	8.8	9.9	81.3	13.2	12.1	37.4	20.9	(91)
읍면지역	97.6	-	2.4	100.0(42)	19.5	9.8	78.0	17.1	24.4	41.5	22.0	(41)
현원												
20명 이하	97.6	-	2.4	100.0(123)	13.3	8.3	82.5	10.0	9.2	37.5	17.5	(120)
21~40명 미만	97.1	-	2.9	100.0(35)	11.8	11.8	64.7	14.7	29.4	47.1	17.6	(34)
40~80명 미만	98.2	-	1.8	100.0(55)	25.9	3.7	87.0	18.5	20.4	38.9	18.5	(54)
80명 이상	100.0	-	-	100.0(25)	16.0	12.0	80.0	8.0	8.0	52.0	8.0	(25)

주: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한편, 유치원 교사는 응답자 중 93.1%만 2018년 한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고, 5.0%는 비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도 1.9% 정도되었다. 사립 법인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88.6%로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85.5%로 낮았다.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을 알아보았다. 시도 교육청이 59.8%로 가장 높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36.1%, 유아교육진흥원 20.1%, 아동보호전문기관 13.5%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단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이 76.9%로 높고, 사립 사인은 유아교육진흥원이 3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현원 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IV-2-6 참조).

〈표 IV-2-6〉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기관: 유치원

단위: %(명)

구분	교육 이수 여부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						
	교육 이수	교육 받지 않음	비해당 (미취업, 휴직 등)	계(수)	시도 청	시도 교육 청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유아 교육 진흥 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기타 (수)
전체	93.1	1.9	5.0	100.0(262)	6.6	59.8	2.5	20.1	13.5	36.1	19.3 (244)
기관 유형											
공립 단설	100.0	-	-	100.0(13)	7.7	61.5	-	15.4	30.8	76.9	7.7 (13)
공립 병설	92.4	-	7.6	100.0(119)	6.4	63.6	-	12.7	13.6	31.8	23.6 (110)
사립 법인	88.6	2.9	8.6	100.0(35)	12.9	58.1	3.2	16.1	9.7	35.5	12.9 (31)
사립 사인	94.7	4.2	1.1	100.0(95)	4.4	55.6	5.6	31.1	12.2	35.6	17.8 (90)
지역규모											
대도시	94.5	1.8	3.7	100.0(109)	6.8	63.1	3.9	29.1	11.7	31.1	20.4 (103)
중소도시	95.9	2.0	2.0	100.0(98)	5.3	55.3	1.1	11.7	16.0	37.2	20.2 (94)
읍면지역	85.5	1.8	12.7	100.0(55)	8.5	61.7	2.1	17.0	12.8	44.7	14.9 (47)
현원											
50명 이하	93.1	1.0	5.9	100.0(102)	7.4	60.0	2.1	11.6	14.7	31.6	21.1 (95)
51~100명 미만	93.4	2.2	4.4	100.0(91)	7.1	57.6	3.5	29.4	10.6	42.4	16.5 (85)
100명 이상	92.8	2.9	4.3	100.0(69)	4.7	62.5	1.6	20.3	15.6	34.4	20.3 (64)

주: 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표 IV-2-7〉와 〈표 IV-2-8〉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교육기관을 알아본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22.3%로 두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제 특성별로도 일정한 경향성 없이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유치원 교사는 38.9%가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이 가장 도움되었다고 답하였고, 26.2%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9.0%가 유아교육진흥원을 꼽았다. 공립 단설의 교사들은 61.5%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공립 병설과 사립 법인, 사립 사인의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와 현원 기준의 응답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표 IV-2-8 참조).

〈표 IV-2-7〉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 중 가장 도움된 교육기관: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유아교 육진흥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3.0	1.3	59.2	1.3	6.0	22.3	6.9	100.0(233)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1	-	59.6	-	12.8	21.3	4.3	100.0(47)
민간/법인단체등	5.1	1.3	56.4	-	7.7	25.6	3.8	100.0(78)
가정	1.9	1.9	61.1	2.8	1.9	20.4	10.2	100.0(108)
지역규모								
대도시	4.0	-	63.4	1.0	3.0	24.8	4.0	100.0(101)
중소도시	1.1	3.3	56.0	1.1	8.8	22.0	7.7	100.0(91)
읍면지역	4.9	-	56.1	2.4	7.3	17.1	12.2	100.0(41)
현원								
20명 이하	2.5	1.7	62.5	2.5	2.5	19.2	9.2	100.0(120)
21~40명 미만	5.9	2.9	41.2	-	11.8	29.4	8.8	100.0(34)
40~80명 미만	3.7	-	61.1	-	11.1	22.2	1.9	100.0(54)
80명 이상	-	-	64.0	-	4.0	28.0	4.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결과임.

〈표 IV-2-8〉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 중 가장 도움된 교육기관: 유치원

단위: %(명)

구분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유아교 육진흥 원	아동보 호전문 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2.9	38.9	0.8	9.0	6.6	26.2	15.6	100.0(244)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23.1	-	-	15.4	61.5	-	100.0(13)
공립 병설	1.8	42.7	-	5.5	5.5	22.7	21.8	100.0(110)
사립 법인	12.9	41.9	-	6.5	3.2	25.8	9.7	100.0(31)
사립 사인	1.1	35.6	2.2	15.6	7.8	25.6	12.2	100.0(90)
지역규모								
대도시	3.9	35.0	-	15.5	4.9	25.2	15.5	100.0(103)
중소도시	2.1	41.5	1.1	4.3	9.6	24.5	17.0	100.0(94)
읍면지역	2.1	42.6	2.1	4.3	4.3	31.9	12.8	100.0(47)
현원								
50명 이하	3.2	44.2	-	5.3	5.3	23.2	18.9	100.0(95)
51~100명 미만	2.4	30.6	1.2	12.9	5.9	32.9	14.1	100.0(85)
100명 이상	3.1	42.2	1.6	9.4	9.4	21.9	12.5	100.0(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결과임.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가. CCTV 설치

정부는 2015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CCTV 도입 당시 교사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표 IV-3-1>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표 IV-3-1〉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평균
전체	25.6	24.4	23.5	21.4	5.0	100.0(238)	2.6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0.6	24.5	22.4	22.4	-	100.0(49)	2.4
민간/법인단체등	25.6	19.2	20.5	25.6	9.0	100.0(78)	2.7
가정	23.4	27.9	26.1	18.0	4.5	100.0(111)	2.5
$\chi^2(df)/F$			8.9(8)				1.4
지역규모							
대도시	24.0	25.0	23.1	22.1	5.8	100.0(104)	2.6
중소도시	22.8	22.8	27.2	21.7	5.4	100.0(92)	2.6
읍면지역	35.7	26.2	16.7	19.0	2.4	100.0(42)	2.3
$\chi^2(df)/F$			4.5(8)				1.5
현원							
20명 이하	24.4	29.3	25.2	17.1	4.1	100.0(123)	2.5
21~40명 미만	28.6	22.9	17.1	22.9	8.6	100.0(35)	2.6
40~80명 미만	20.0	18.2	30.9	29.1	1.8	100.0(55)	2.7
80명 이상	40.0	16.0	8.0	24.0	12.0	100.0(25)	2.5
$\chi^2(df)/F$			17.6(12)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21.4%는 어느 정도 도움, 5.0%는 매우 도움이이라고 답하여 26.4%만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2.6점으로 중간 정도이다. 제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찬성은 48.3%, 적극 찬성은 20.2%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고, 찬성 정도는 5점 평균 2.9점으로 중간 정도이었다. 찬성 정도는 제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2〉 기관-가정 간 신뢰 관계 형성된 어린이집 CCTV 미설치 관련 의견: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절대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계(수)	평균
전체	3.4	28.2	48.3	20.2	100.0(238)	2.9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0	20.4	49.0	28.6	100.0(49)	3.0
민간/법인단체등	3.8	32.1	51.3	12.8	100.0(78)	2.7
가정	3.6	28.8	45.9	21.6	100.0(111)	2.9
$\chi^2(df)/F$			-			2.4
지역규모						
대도시	1.9	31.7	44.2	22.1	100.0(104)	2.9
중소도시	3.3	29.3	52.2	15.2	100.0(92)	2.8
읍면지역	7.1	16.7	50.0	26.2	100.0(42)	3.0
$\chi^2(df)/F$			-			0.6
현원						
20명 이하	4.1	30.1	45.5	20.3	100.0(123)	2.8
21~40명 미만	2.9	25.7	48.6	22.9	100.0(35)	2.9
40~80명 미만	1.8	20.0	56.4	21.8	100.0(55)	3.0
80명 이상	4.0	40.0	44.0	12.0	100.0(25)	2.6
$\chi^2(df)/F$			-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한편, 유치원 내에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최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도 증가함에 따라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유치원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31.7%는 찬성, 13.0%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하였고, 반대가 30.2%, 절대 반대가 25.2%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사립 법인이 찬성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현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유치원 교사들이 찬성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3-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절대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계(수)	평균
전체	25.2	30.2	31.7	13.0	100.0(262)	2.3
기관 유형						
공립 단설	46.2	38.5	15.4	-	100.0(13)	1.7
공립 병설	42.0	42.9	11.8	3.4	100.0(119)	1.8
사립 법인	8.6	20.0	34.3	37.1	100.0(35)	3.0
사립 사인	7.4	16.8	57.9	17.9	100.0(95)	2.9
$\chi^2(df)/F$			-			43.2***
지역규모						
대도시	24.8	23.9	34.9	16.5	100.0(109)	2.4
중소도시	23.5	33.7	31.6	11.2	100.0(98)	2.3
읍면지역	29.1	36.4	25.5	9.1	100.0(55)	2.1
$\chi^2(df)/F$			5.9(6)			1.5
현원						
50명 이하	39.2	38.2	13.7	8.8	100.0(102)	1.9
51~100명 미만	20.9	25.3	44.0	9.9	100.0(91)	2.4
100명 이상	10.1	24.6	42.0	23.2	100.0(69)	2.8
$\chi^2(df)/F$			43.1(6)***			1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 $p < .001$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경우 그 이유로 교사의 인권 보호가 39.3%로 높고, 다음으로 아동 인권 보호 21.4%, 부모의 불안 해소 18.8%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립 단설과 공립 병설은 교사의 인권 보호를 꼽은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사의 인권 보호, 중소도시는 아동 인권 보호로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 현원규모별로는 대규모일수록 아동 인권 보호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표 IV-3-4 참조).

한편,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교사 중 43.4%는 교사의 교권 침해를 꼽았고, 26.2%는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20.7%는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들었다. 공립 단설은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공립 병설은 교사의 교권 침해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 및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IV-3-5 참조).

〈표 IV-3-4〉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유: 유치원

단위: %(명)

구분	아동 인권 보호	교사의 인권 보호	부모의 불안 해소	아동학대 증거자료 확보	기타	계(수)
전체	21.4	39.3	18.8	13.7	6.8	100.0(117)
기관 유형						
공립 단설	50.0	50.0	-	-	-	100.0(2)
공립 병설	5.6	50.0	22.2	11.1	11.1	100.0(18)
사립 법인	24.0	40.0	8.0	16.0	12.0	100.0(25)
사립 사인	23.6	36.1	22.2	13.9	4.2	100.0(72)
지역규모						
대도시	14.3	44.6	21.4	10.7	8.9	100.0(56)
중소도시	35.7	33.3	14.3	9.5	7.1	100.0(42)
읍면지역	10.5	36.8	21.1	31.6	-	100.0(19)
현원						
50명 이하	17.4	47.8	21.7	13.0	-	100.0(23)
51~100명 미만	20.4	34.7	16.3	16.3	12.2	100.0(49)
100명 이상	24.4	40.0	20.0	11.1	4.4	100.0(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표 IV-3-5〉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 유치원

단위: %(명)

구분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 개인정보 노출	교사의 교권 침해	교사 사기 저하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기타	계(수)
전체	20.7	43.4	6.9	26.2	2.8	100.0(145)
기관 유형						
공립 단설	27.3	18.2	9.1	45.5	-	100.0(11)
공립 병설	22.8	45.5	6.9	21.8	3.0	100.0(101)
사립 법인	-	70.0	10.0	20.0	-	100.0(10)
사립 사인	17.4	34.8	4.3	39.1	4.3	100.0(23)
지역규모						
대도시	18.9	43.4	5.7	28.3	3.8	100.0(53)
중소도시	26.8	35.7	5.4	30.4	1.8	100.0(56)
읍면지역	13.9	55.6	11.1	16.7	2.8	100.0(36)
현원						
50명 이하	16.5	49.4	6.3	27.8	-	100.0(79)
51~100명 미만	28.6	33.3	7.1	23.8	7.1	100.0(42)
100명 이상	20.8	41.7	8.3	25.0	4.2	100.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나. 기관-가정 간의 신뢰 회복

1) 어린이집-가정 간의 신뢰관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갑질 등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정도를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신뢰한다 10점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정도는 10점 평균 7.4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기관유형이나 지역규모, 현원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 IV-3-6 참조).

〈표 IV-3-6〉 기관-가정 간 신뢰도: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1 전혀 신뢰 하지 않음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신뢰	계(수)	평균
전체		0.4	2.1	4.2	20.6	4.2	10.5	26.1	16.4	15.5	100.0(238)	7.4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	4.1	4.1	12.2	10.2	10.2	26.5	10.2	22.4	100.0(49)	7.5
민간/법인단체등	-	1.3	1.3	5.1	21.8	2.6	14.1	24.4	19.2	10.3	100.0(78)	7.2
가정	-	-	1.8	3.6	23.4	2.7	8.1	27.0	17.1	16.2	100.0(111)	7.4
$\chi^2(df)/F$					-							0.4
지역규모												
대도시	-	1.0	2.9	2.9	21.2	4.8	11.5	24.0	15.4	16.3	100.0(104)	7.3
중소도시	-	-	-	6.5	21.7	3.3	9.8	29.3	15.2	14.1	100.0(92)	7.4
읍면지역	-	-	4.8	2.4	16.7	4.8	9.5	23.8	21.4	16.7	100.0(42)	7.5
$\chi^2(df)/F$					-							0.8
현원												
20명 이하	-	-	1.6	4.1	22.0	2.4	8.1	28.5	16.3	17.1	100.0(123)	7.5
21~40명 미만	-	2.9	2.9	5.7	22.9	2.9	20.0	8.6	22.9	11.4	100.0(35)	7.0
40~80명 미만	-	-	3.6	1.8	12.7	10.9	9.1	29.1	16.4	16.4	100.0(55)	7.5
80명 이상	-	-	-	8.0	28.0	-	12.0	32.0	8.0	12.0	100.0(25)	7.0
$\chi^2(df)/F$					-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4.1%는 부모의 인권 인식, 25.6%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13.9%는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13.0%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들었다.

〈표 IV-3-7〉 기관-가정 간 신뢰 회복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부모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부모의 인권 인식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기타	계(수)
전체	13.9	13.0	44.1	25.6	3.4	100.0(238)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2.2	10.2	51.0	26.5	-	100.0(49)
민간/법인단체등	11.5	12.8	46.2	28.2	1.3	100.0(78)
가정	16.2	14.4	39.6	23.4	6.3	100.0(111)
지역규모						
대도시	16.3	17.3	41.3	24.0	1.0	100.0(104)
중소도시	9.8	9.8	45.7	28.3	6.5	100.0(92)
읍면지역	16.7	9.5	47.6	23.8	2.4	100.0(42)
현원						
20명 이하	16.3	13.8	41.5	22.8	5.7	100.0(123)
21~40명 미만	14.3	8.6	45.7	31.4	-	100.0(35)
40~80명 미만	10.9	12.7	49.1	27.3	-	100.0(55)
80명 이상	8.0	16.0	44.0	28.0	4.0	100.0(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2) 유치원-가정 간의 신뢰관계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유치원과 가정 간의 신뢰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가정 간의 신뢰 정도가 10점 평균 7.1점이었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 현원규모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3-8〉 기관-가정 간 신뢰도: 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1 전혀 신뢰 하지 않음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신뢰	계(수)	평균
전체	1.1	0.4	2.7	4.6	18.7	5.3	18.3	22.5	13.7	12.6	100.0(262)	7.1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	-	-	7.7	15.4	38.5	7.7	7.7	23.1	100.0(13)	7.6
공립 병설	1.7	-	2.5	5.0	11.8	5.9	17.6	23.5	17.6	14.3	100.0(119)	7.4
사립 법인	-	-	2.9	2.9	11.4	5.7	14.3	25.7	11.4	25.7	100.0(35)	7.8
사립 사인	1.1	1.1	3.2	5.3	31.6	3.2	17.9	22.1	10.5	4.2	100.0(95)	6.5
$\chi^2(df)/F$					-							5.4*
지역규모												
대도시	0.9	0.9	1.8	2.8	19.3	7.3	15.6	19.3	19.3	12.8	100.0(109)	7.2
중소도시	2.0	-	3.1	6.1	18.4	4.1	23.5	29.6	8.2	5.1	100.0(98)	6.8
읍면지역	-	-	3.6	5.5	18.2	3.6	14.5	16.4	12.7	25.5	100.0(55)	7.5
$\chi^2(df)/F$					-							2.5
현원												
50명 이하	2.0	1.0	2.9	5.9	15.7	2.9	17.6	21.6	14.7	15.7	100.0(102)	7.2
51~100명 미만	-	-	2.2	3.3	15.4	5.5	20.9	25.3	16.5	11.0	100.0(91)	7.4
100명 이상	1.4	-	2.9	4.3	27.5	8.7	15.9	20.3	8.7	10.1	100.0(69)	6.7
$\chi^2(df)/F$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 $p < .05$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유치원 교사들 중 54.2%는 부모의 인권 인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26.0%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8.8%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8.0%는 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를 꼽았다(표 IV-3-9 참조).

제 특성별로는 사립 법인과 사립 사인은 부모의 인권 인식을 꼽은 비율이 공립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는 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 및 부모참여프로그램 활성화, 규모가 클수록 부모 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3-9〉 기관-가정 간 신뢰 회복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 유치원

단위: %(명)

구분	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	부모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부모의 인권 인식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기타	계(수)
전체	8.0	8.8	54.2	26.0	3.1	100.0(262)
기관 유형						
공립 단설	15.4	15.4	30.8	38.5	-	100.0(13)
공립 병설	6.7	6.7	58.0	25.2	3.4	100.0(119)
사립 법인	8.6	17.1	54.3	20.0	-	100.0(35)
사립 사인	8.4	7.4	52.6	27.4	4.2	100.0(95)
지역규모						
대도시	11.0	11.0	55.0	18.3	4.6	100.0(109)
중소도시	4.1	6.1	53.1	34.7	2.0	100.0(98)
읍면지역	9.1	9.1	54.5	25.5	1.8	100.0(55)
현원						
50명 이하	6.9	4.9	60.8	24.5	2.9	100.0(102)
51~100명 미만	8.8	11.0	45.1	34.1	1.1	100.0(91)
100명 이상	8.7	11.6	56.5	17.4	5.8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다. 교사의 인권 보호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6.8%는 어느 정도 보장, 2.9%는 매우 보장이라고 답하여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9.7% 정도로 낮았다. 교사의 인권 보장 정도는 5점 평균 2.6점으로 중간 이하이었다. 절반 정도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간/법인단체 등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다 교사의 인권 보장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규모 및 현원 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3-10 참조).

〈표 IV-3-10〉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인권 보호 정도: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보장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보장	매우 보장	계(수)	평균
전체	16.0	32.8	31.5	16.8	2.9	100.0(238)	2.6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8.6	38.8	14.3	16.3	2.0	100.0(49)	2.2
민간/법인단체등	15.4	28.2	29.5	24.4	2.6	100.0(78)	2.7
가정	10.8	33.3	40.5	11.7	3.6	100.0(111)	2.6
$\chi^2(df)/F$			-				3.4*
지역규모							
대도시	13.5	37.5	29.8	17.3	1.9	100.0(104)	2.6
중소도시	14.1	28.3	38.0	15.2	4.3	100.0(92)	2.7
읍면지역	26.2	31.0	21.4	19.0	2.4	100.0(42)	2.4
$\chi^2(df)/F$			-				1.0
현원							
20명 이하	10.6	31.7	40.7	13.0	4.1	100.0(123)	2.7
21~40명 미만	17.1	42.9	25.7	14.3	-	100.0(35)	2.4
40~80명 미만	21.8	29.1	21.8	25.5	1.8	100.0(55)	2.6
80명 이상	28.0	32.0	16.0	20.0	4.0	100.0(25)	2.4
$\chi^2(df)/F$			-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 $p < .05$

한편, 유치원 교사가 현장에서 인식하는 교사의 인권 보장 정도는 20.2%가 어느 정도 보장, 1.9%가 매우 보장이라고 답하여 22.1%가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장 정도는 5점 평균 2.7점이다. 유치원 교사 중 교사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IV-3-11〉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인권 보호 정도: 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보장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보장	매우 보장	계(수)	평균
전체	14.9	29.0	34.0	20.2	1.9	100.0(262)	2.7
기관 유형							
공립 단설	23.1	15.4	23.1	38.5	-	100.0(13)	2.8
공립 병설	16.8	22.7	34.5	23.5	2.5	100.0(119)	2.7
사립 법인	14.3	34.3	25.7	25.7	-	100.0(35)	2.6
사립 사인	11.6	36.8	37.9	11.6	2.1	100.0(95)	2.6
$\chi^2(df)/F$			-				0.5

구분	전혀 보장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보장	매우 보장	계(수)	평균
지역규모							
대도시	13.8	30.3	38.5	16.5	0.9	100.0(109)	2.6
중소도시	14.3	30.6	32.7	20.4	2.0	100.0(98)	2.7
읍면지역	18.2	23.6	27.3	27.3	3.6	100.0(55)	2.7
$\chi^2(df)/F$			-				0.7
현원							
50명 이하	18.6	23.5	37.3	18.6	2.0	100.0(102)	2.6
51~100명 미만	13.2	33.0	26.4	25.3	2.2	100.0(91)	2.7
100명 이상	11.6	31.9	39.1	15.9	1.4	100.0(69)	2.6
$\chi^2(df)/F$			-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62.1%가 학부모를 꼽았고, 30.2%는 원장, 아동이나 동료교사는 각각 1.7%로 소수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은 원장,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학부모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 규모 및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IV-3-12〉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아동	동료 교사	원장	학부모	기타	계(수)
전체	1.7	1.7	30.2	62.1	4.3	100.0(116)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	24.2	75.8	-	100.0(33)
민간/법인단체등	2.9	2.9	29.4	64.7	-	100.0(34)
가정	2.0	2.0	34.7	51.0	10.2	100.0(49)
지역규모						
대도시	3.8	1.9	26.4	62.3	5.7	100.0(53)
중소도시	-	2.6	33.3	61.5	2.6	100.0(39)
읍면지역	-	-	33.3	62.5	4.2	100.0(24)
현원						
20명 이하	1.9	1.9	32.7	53.8	9.6	100.0(52)
21~40명 미만	4.8	4.8	42.9	47.6	-	100.0(21)
40~80명 미만	-	-	17.9	82.1	-	100.0(28)
80명 이상	-	-	26.7	73.3	-	100.0(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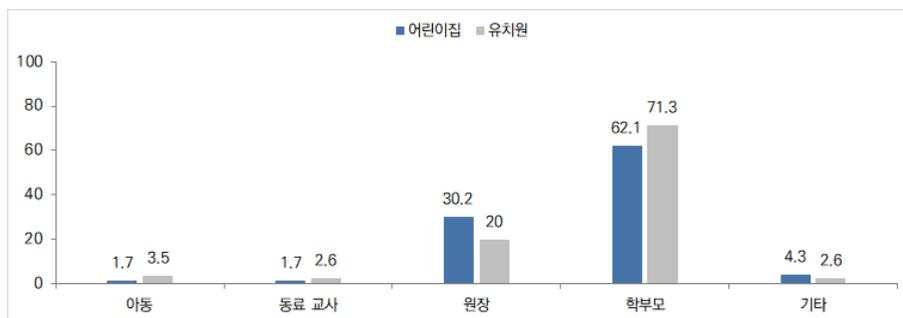
한편, 유치원 교사도 교사 인권 침해 주체로 학부모를 꼽은 비율이 71.3%로 높았고, 다음으로 원장 20.0%, 아동 3.5%, 동료교사 2.6% 순이었다. 제 특성별로도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사립 사인이거나, 읍면지역, 100명 이상 규모에서 교사 인권 침해 주체로 원장을 뽑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13〉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유치원

구분	단위: %(명)					
	아동	동료 교사	원장	학부모	기타	계(수)
전체	3.5	2.6	20.0	71.3	2.6	100.0(115)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	20.0	80.0	-	100.0(5)
공립 병설	2.1	6.4	8.5	80.9	2.1	100.0(47)
사립 법인	-	-	23.5	70.6	5.9	100.0(17)
사립 사인	6.5	-	30.4	60.9	2.2	100.0(46)
지역규모						
대도시	6.3	2.1	18.8	68.8	4.2	100.0(48)
중소도시	2.3	2.3	18.2	77.3	-	100.0(44)
읍면지역	-	4.3	26.1	65.2	4.3	100.0(23)
현원						
50명 이하	4.7	4.7	16.3	69.8	4.7	100.0(43)
51~100명 미만	2.4	2.4	14.3	78.6	2.4	100.0(42)
100명 이상	3.3	-	33.3	63.3	-	100.0(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그림 IV-3-1〉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주체



자료: 〈표 IV-3-10〉, 〈표 IV-3-11〉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표 IV-3-14〉는 인권교육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교육기관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69.3%가 인권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국공립/사회복

지법인보다 민간/법인단체나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참여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14〉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 시 교육기관						
	참여 경험 있음	(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인권교육 전문기관	기타	(수)
전체	69.3	(238)	7.9	8.5	73.3	6.7	23.0	10.3	(165)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65.3	(49)	15.6	3.1	75.0	9.4	31.3	12.5	(32)
민간/법인단체등	70.5	(78)	5.5	7.3	67.3	3.6	23.6	16.4	(55)
가정	70.3	(111)	6.4	11.5	76.9	7.7	19.2	5.1	(78)
지역규모									
대도시	78.8	(104)	11.0	6.1	81.7	6.1	20.7	4.9	(82)
중소도시	64.1	(92)	3.4	13.6	69.5	8.5	23.7	11.9	(59)
읍면지역	57.1	(42)	8.3	4.2	54.2	4.2	29.2	25.0	(24)
현원									
20명 이하	71.5	(123)	8.0	10.2	77.3	6.8	19.3	4.5	(88)
21~40명 미만	54.3	(35)	5.3	10.5	52.6	5.3	26.3	31.6	(19)
40~80명 미만	72.7	(55)	10.0	2.5	72.5	7.5	32.5	12.5	(40)
80명 이상	72.0	(25)	5.6	11.1	77.8	5.6	16.7	11.1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인권교육 참여 시 교육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3.3%로 다빈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권교육전문기관 23.0%, 시도교육청 8.5%, 시도청 7.9% 순이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시도청이나 인권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지역일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읍면지역일수록 인권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현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유치원 교사는 응답자 중 55.0%가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공립이 사립보다, 읍면지역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에 참여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권교육 참여 시 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이 47.2%, 인권교육전문기관 34.0%, 유아교육진흥원 11.1% 순이었다. 기타가 20.8%로 높았다. 제 특성별로 일정한 경

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공립단설이거나 읍면지역, 규모가 작은 유치원인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표 IV-3-15 참조).

〈표 IV-3-15〉 인권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유형: 유치원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 기관						
	참여 경험 있음	(수)	시도청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인권교육 전문기관	기타	(수)
유치원 전체	55.0	(262)	2.8	47.2	1.4	11.1	34.0	20.8	(144)
기관 유형									
공립 단설	84.6	(13)	-	54.5	-	-	27.3	36.4	(11)
공립 병설	66.4	(119)	2.5	46.8	1.3	8.9	32.9	22.8	(79)
사립 법인	42.9	(35)	13.3	46.7	-	6.7	26.7	20.0	(15)
사립 사인	41.1	(95)	-	46.2	2.6	20.5	41.0	12.8	(39)
지역규모									
대도시	54.1	(109)	5.1	45.8	1.7	10.2	33.9	18.6	(59)
중소도시	55.1	(98)	1.9	46.3	1.9	7.4	33.3	27.8	(54)
읍면지역	56.4	(55)	-	51.6	-	19.4	35.5	12.9	(31)
현원									
50명 이하	64.7	(102)	1.5	51.5	-	10.6	34.8	19.7	(66)
51~100명 미만	50.5	(91)	4.3	45.7	2.2	10.9	34.8	19.6	(46)
100명 이상	46.4	(69)	3.1	40.6	3.1	12.5	31.3	25.0	(32)

주: 교육기관은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표 IV-3-16〉와 〈표 IV-3-17〉는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8.3%는 교사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8.4%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동의비율이 56.7%로 절반이 넘으며, 동의정도는 5점 평균 3.5점이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대도시, 규모가 클수록 동의비율이 높다. 그러나 동의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치원 교사는 응답자 중 55.0%가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16.4%는 매우 도움된다고 답하여 도움된다는 비율이 71.4%로 높은 편이며,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3.8점으로 중간 이상이다.

제 특성별로는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립 단설 교사들의 동의정도가 사립 사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규모 및 현원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IV-3-17 참조).

〈표 IV-3-16〉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전체	2.5	7.6	33.2	48.3	8.4	100.0(238)	3.5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0	8.2	26.5	55.1	8.2	100.0(49)	3.6
민간/법인단체등	2.6	7.7	32.1	51.3	6.4	100.0(78)	3.5
가정	2.7	7.2	36.9	43.2	9.9	100.0(111)	3.5
$\chi^2(df)$			-				0.2
지역규모							
대도시	1.9	10.6	26.9	51.9	8.7	100.0(104)	3.5
중소도시	2.2	7.6	39.1	40.2	10.9	100.0(92)	3.5
읍면지역	4.8	-	35.7	57.1	2.4	100.0(42)	3.5
$\chi^2(df)$			-				0.9
현원							
20명 이하	2.4	8.1	35.8	43.9	9.8	100.0(123)	3.5
21~40명 미만	-	11.4	34.3	48.6	5.7	100.0(35)	3.5
40~80명 미만	1.8	5.5	32.7	52.7	7.3	100.0(55)	3.6
80명 이상	8.0	4.0	20.0	60.0	8.0	100.0(25)	3.6
$\chi^2(df)$			-				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표 IV-3-17〉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 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전체	1.1	5.7	21.8	55.0	16.4	100.0(262)	3.8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	23.1	53.8	23.1	100.0(13)	4.0
공립 병설	0.8	3.4	16.0	62.2	17.6	100.0(119)	3.9
사립 법인	2.9	-	20.0	65.7	11.4	100.0(35)	3.8
사립 사인	1.1	11.6	29.5	42.1	15.8	100.0(95)	3.6
$\chi^2(df)$			-				3.1*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평균
지역규모							
대도시	1.8	2.8	24.8	56.0	14.7	100.0(109)	3.8
중소도시	1.0	7.1	21.4	54.1	16.3	100.0(98)	3.8
읍면지역	-	9.1	16.4	54.5	20.0	100.0(55)	3.9
$\chi^2(df)$			-				0.2
현원							
50명 이하	2.0	2.9	17.6	58.8	18.6	100.0(102)	3.9
51~100명 미만	1.1	6.6	24.2	53.8	14.3	100.0(91)	3.7
100명 이상	-	8.7	24.6	50.7	15.9	100.0(69)	3.7
$\chi^2(df)$			-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 $p < .05$

라.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201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취업시 법원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²⁴⁾

보육교직원 채용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한 보육교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58.4%는 찬성, 37.4%는 적극 찬성으로 답하여 대다수가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특성별로도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동의 정도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4) 베이비뉴스(2019.6.4.일자 기사). 아동기관 취업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명확해진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25> 2019.11.20.인출).

〈표 IV-3-18〉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절대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계(수)	평균
전체	0.8	3.4	58.4	37.4	100.0(238)	3.3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2.0	4.1	46.9	46.9	100.0(49)	3.4
민간/법인단체등	-	3.8	66.7	29.5	100.0(78)	3.3
가정	0.9	2.7	57.7	38.7	100.0(111)	3.3
$\chi^2(df)$						0.9
지역규모						
대도시	-	1.0	68.3	30.8	100.0(104)	3.3
중소도시	2.2	5.4	55.4	37.0	100.0(92)	3.3
읍면지역	-	4.8	40.5	54.8	100.0(42)	3.5
$\chi^2(df)$						2.4
현원						
20명 이하	0.8	2.4	56.9	39.8	100.0(123)	3.4
21~40명 미만	-	5.7	57.1	37.1	100.0(35)	3.3
40~80명 미만	1.8	3.6	69.1	25.5	100.0(55)	3.2
80명 이상	-	4.0	44.0	52.0	100.0(25)	3.5
$\chi^2(df)$						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소수이나 어린이집 채용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인성이나 자질보다 아동, 환경이 원인인 경우 부당하다는 의견이 80%로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과도한 취업제한이라고 답하였다.

〈표 IV-3-19〉 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반대 이유: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과도한 취업 제한	아동학대 가해자 판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취업 가능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인성이나 자질보다 아동, 환경이 원인인 경우	기타	계(수)
어린이집	10.0	-	80.0	10.0	100.0(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한편,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대해 31.7%는 찬성, 66.8%는 적극 찬성으로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동의정도는 5점 평균 3.6

점으로 중간 이상이다. 제 특성별로는 동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IV-3-20 참조).

〈표 IV-3-20〉 유치원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 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절대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계(수)	평균
전체	0.4	1.1	31.7	66.8	100.0(262)	3.6
기관 유형						
공립 단설	-	-	15.4	84.6	100.0(13)	3.8
공립 병설	0.8	0.8	25.2	73.1	100.0(119)	3.7
사립 법인	-	2.9	28.6	68.6	100.0(35)	3.7
사립 사인	-	1.1	43.2	55.8	100.0(95)	3.5
$\chi^2(df)$	-	-	-	-	-	2.3
지역규모						
대도시	0.9	0.9	32.1	66.1	100.0(109)	3.6
중소도시	-	2.0	32.7	65.3	100.0(98)	3.6
읍면지역	-	-	29.1	70.9	100.0(55)	3.7
$\chi^2(df)$	-	-	-	-	-	0.5
현원						
50명 이하	-	1.0	28.4	70.6	100.0(102)	3.7
51~100명 미만	1.1	2.2	37.4	59.3	100.0(91)	3.5
100명 이상	-	-	29.0	71.0	100.0(69)	3.7
$\chi^2(df)$	-	-	-	-	-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유치원 교사 중 유치원 취업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반대 의견을 낸 유치원 교사 중 3/4은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인성이나 자질보다 아동, 환경이 원인인 경우를 들었고, 나머지는 아동학대 가해자 판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취업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표 IV-3-21〉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 유치원

단위: %(명)

구분	과도한 취업 제한	아동학대 가해자 판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취업 가능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인성이나 자질보다 아동, 환경이 원인인 경우	기타	계(수)
유치원	-	25.0	75.0	-	100.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마.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외의 아동이나 다른 교사 대상으로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아동학대 발생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이나 재직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의견을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 사례관리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61.8%는 필요, 31.1%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92.9%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 정도는 5점 평균 3.2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 특성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표 IV-3-22〉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필요성 - 아동: 어린이집

단위: %(명), 점

구분	아동 사례관리				교사 사례관리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전체	61.8	31.1	100.0(238)	3.2	60.9	32.8	100.0(238)	3.3
기관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51.0	38.8	100.0(49)	3.3	53.1	40.8	100.0(49)	3.3
민간/법인단체등	57.7	33.3	100.0(78)	3.2	59.0	37.2	100.0(78)	3.3
가정	69.4	26.1	100.0(111)	3.2	65.8	26.1	100.0(111)	3.2
$\chi^2(df)$				0.3				2.3
지역규모								
대도시	63.5	27.9	100.0(104)	3.2	63.5	30.8	100.0(104)	3.3
중소도시	65.2	29.3	100.0(92)	3.2	60.9	30.4	100.0(92)	3.2
읍면지역	50.0	42.9	100.0(42)	3.4	54.8	42.9	100.0(42)	3.4
$\chi^2(df)$				1.2				1.6
현원								
20명 이하	68.3	27.6	100.0(123)	3.2	65.0	27.6	100.0(123)	3.2
21~40명 미만	71.4	22.9	100.0(35)	3.2	68.6	25.7	100.0(35)	3.2
40~80명 미만	50.9	36.4	100.0(55)	3.2	54.5	40.0	100.0(55)	3.3
80명 이상	40.0	48.0	100.0(25)	3.4	44.0	52.0	100.0(25)	3.5
$\chi^2(df)$				0.5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어린이집 교사조사」 결과임.

교사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 중 60.9%가 필요, 32.8%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93.7%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필요정도는 5점 척도로 3.3 점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도 부모들로부터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고, 기관-가정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치원 교사도 아동 사례관리에 대해 41.6%가 필요, 56.5%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서 필요하다는 의견은 98.1%이며, 필요 정도는 5점 척도로 3.5점이었다.

교사 사례관리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사 중 40.8%가 필요, 56.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96.9%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 정도는 5점 평균 3.5점으로 중간 이상이였다.

즉, 유치원 교사 대부분 아동학대 발생 시 유치원 이용 유아에 대한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3〉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필요성 - 아동: 유치원

단위: %(명), 점

구분	아동 사례관리				교사 사례관리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전체	41.6	56.5	100.0(262)	3.5	40.8	56.1	100.0(262)	3.5
기관 유형								
공립 단설	30.8	69.2	100.0(13)	3.7	38.5	61.5	100.0(13)	3.6
공립 병설	41.2	57.1	100.0(119)	3.6	39.5	58.0	100.0(119)	3.6
사립 법인	34.3	65.7	100.0(35)	3.7	40.0	60.0	100.0(35)	3.6
사립 사인	46.3	50.5	100.0(95)	3.5	43.2	51.6	100.0(95)	3.5
$\chi^2(df)$				1.4				0.8
지역규모								
대도시	38.5	57.8	100.0(109)	3.5	39.4	56.9	100.0(109)	3.5
중소도시	45.9	53.1	100.0(98)	3.5	40.8	55.1	100.0(98)	3.5
읍면지역	40.0	60.0	100.0(55)	3.6	43.6	56.4	100.0(55)	3.6
$\chi^2(df)$				0.4				0.2
현원								
50명 이하	40.2	57.8	100.0(102)	3.6	41.2	57.8	100.0(102)	3.6
51~100명 미만	47.3	51.6	100.0(91)	3.5	46.2	48.4	100.0(91)	3.4
100명 이상	36.2	60.9	100.0(69)	3.6	33.3	63.8	100.0(69)	3.6
$\chi^2(df)$				0.7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관련 유치원 교사조사」 결과임.

4. 시사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아동학대 발생 원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과 가정의 신뢰,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교사의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교사대 아동비율을 적절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동학대 원인 중 아동요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78.2%와 유치원 교사 77.1%가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교사 요인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6.2%가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 중 34.4%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를 꼽았다. 환경요인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48.7%와 유치원 교사 50.8%가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들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대 아동비율 및 교사 처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84.0%, 교사 처우 54.6%, 교사 휴게시간 21.0%, 교사 양성과정 16.0%이고, 유치원 교사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8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사 처우가 43.1%, 교사 양성과정 23.7%, 교사 휴게시간 21.0%, 교사 현직교육 10.7% 순이었다.

셋째,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급식시간, 오전자유놀이 시간, 낮잠시간, 유치원은 급식시간, 오전자유놀이, 방과후과정시간 등에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일과 중 보육교사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급식시간이 6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57.1%, 낮잠시간 25.6%, 하원시간 23.5% 순이었다. 유치원 일과 중 교사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1,2순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급식시간이 6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전 자유놀이와 방과후과정시간이 각각 36.3%, 32.8%, 하원시간 18.3%, 등원시간 13.7%,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시간 12.6% 순이었다.

넷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중 각각 99.6%, 97.7%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38.7%, 유치원 교사는 42.4%만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51.3%, 유치원 교사는 61.5%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22.3%로 두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유치원 교사는 38.9%가 시도 교육청, 26.2%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9.0%가 유아교육진흥원을 꼽았다.

여섯째,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CCTV 설치 의무화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CCTV 설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찬성은 48.3%, 적극 찬성은 20.2%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본 조사결과 교사 26.4%만 교사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일곱째, 유치원 내 CCTV 의무화는 부모뿐만 아니라 원장,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유치원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31.7%는 찬성, 13.0%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하였고, 반대가 30.2%, 절대 반대가 25.2%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로 43.4%는 교사의 교권 침해, 26.2%는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20.7%는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등을 지적하였다.

여덟째,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인권 의식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44.1%는 부모의 인권 인식, 25.6%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13.9%는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13.0%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들었고, 유치원 교사는 54.2%는 부모의 인권 인식, 26.0%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8.8%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8.0%는 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를 꼽았다. 또한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62.1%, 유치원 교사 71.3%는 학부모를 꼽았다.

아홉째,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69.3%와 유치원 교사 55.0%만 교사 대상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교사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56.7%, 유치원 교사 71.4%는 동의하였다.

열 번째,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및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과 교사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92.9%는 아동 사례관리, 93.7%는 교사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유치원교사 중 98.1%는 아동 사례관리, 96.9%는 교사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V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01 개요
- 02 사업 내용
- 03 시범사업 성과

V.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5장에서는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과 일정, 사업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1.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의 아동학대를 제외하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3.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외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어린이집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 권리 민감성 향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이해 증진과 영유아인권 옹호자로서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나. 추진 일정

우선,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시청 및 송파구청 담당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서울시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굿네이버스, 동남권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지역을 서울시 송파구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다. 시범사업 대상

시범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높다. 특히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여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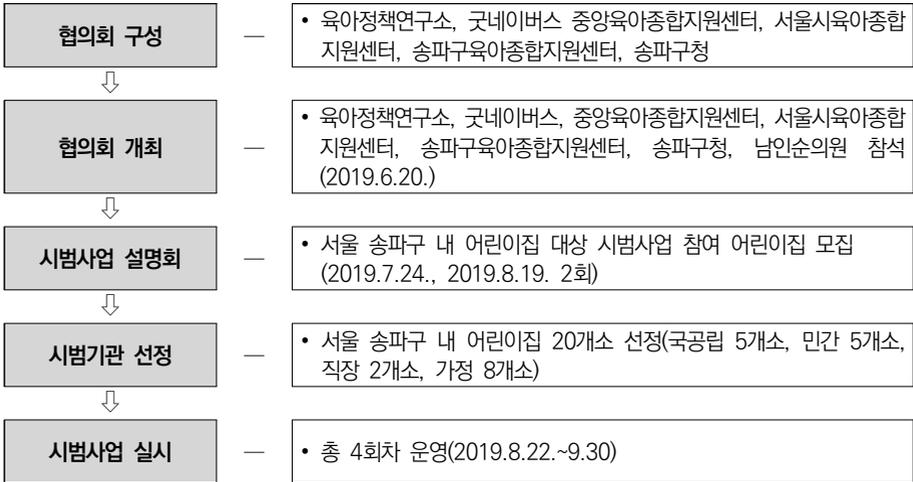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은 2018년 말 기준 총 408개소(국공립 72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137개소, 가정 176개소, 협동 2개소, 직장 15개소)이다(보건복지부, 2019).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어린이집 5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총 20개소를 선정하였다.²⁵⁾

시범사업은 8월 말 설명회를 시작으로 원장과 대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1회 차)과 대표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2회 차)을 진행되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20개소의 어린이집 대표교사들이 각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교사워크숍(3회 차)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4회 차)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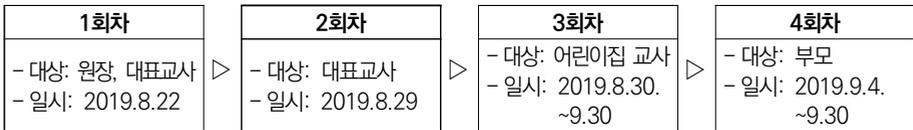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시범사업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하였다. 시범사업 협의체와 설명회에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이 아닌,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시범사업은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진행하였다.

25) 서울 송파구 소재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소수이고,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 기관에서 제외함.

[그림 V-1-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일정



[그림 V-1-2]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진행 일정



2. 사업 내용

가.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1)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현장의 부담감을 줄이고, 기존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실천과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어린이집과 부모가 영유아의 권리를 지키는 권리옹호자로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범사업 진행 시에는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이라는 별도의 사업명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프로그램 구성은 <표 V-2-1>와 같다.

〈표 V-2-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회기	대상	주제	내용	시간	방법
1	원장, 대표교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권리교육 (인권 감수성)	- 교사 마음 헤아리기 (교사로서 존재감, 유능감 인식)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권리 감수성 - 영유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모와의 협력	2시간	어린이집 대집단교육 (20개소) 원장 및 대표교사 각 20명 총 40명
2	대표교사	사례 중심의 토론 워크숍 - 인권 감수성 관점	영유아의 인권감수성 실천을 위한 사례 중심 워크숍 3회차 사례워크숍을 실제 진행하기 위한 대표교사의 사전 교육	2시간	어린이집 대집단교육 대표교사 20명
3	어린이집 교사 전체	어린이집 사례중심 토론 워크숍	어린이집의 일상을 돌아보며 영유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례를 나누는 워크숍	1시간 30분	개별 어린이집 자율 시행(20개소) 개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전체 참여
4	어린이집 부모	부모교육: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영유아를 보는 관점 영유아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부모의 역할 서로 존중하는 부모와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의 협력)	1시간 30분	찾아가는 전문 부모교육 (강사 파견)

1회기 프로그램은 원장과 대표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권리교육, 2회기는 시범사업 어린이집 대표교사를 대상으로 사례중심 워크숍, 3회기는 2회기 대표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 교육내용을 개별 어린이집에서 교사들과 진행, 4회기는 시범사업 어린이집으로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제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4회기 프로그램은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아동 대상의 교육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학대 인형극으로 진행하였다. 4회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안 및 교수 자료는 부록.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교육자료에 수록하였다(표 V-2-1 참조).

가) 원장 및 대표교사 교육(1회기)

1회기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권리교육(인권감수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V-2-2〉에 정리하였다.

〈표 V-2-2〉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1회차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 개요
대상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교사
주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권리교육(인권 감수성)
강의내용	1. 영유아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2. 어린이를 사랑하는 법(지식채널e 영상 감상) 3. 유엔아동권리협약 4.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 참여 및 의사존중의 원칙 5. 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 -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6. 아이들의 시각으로 생각해보기 - 아이의 사생활 2부 도덕성(지식채널e 영상 감상) 7.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 영유아-미시체계-중간체계-외체계-거시체계

[그림 V-2-1]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1회기 원장 및 교사 교육



나) 대표교사 교육(2회기)

2회기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별 어린이집의 대표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표교사는 2회기 교육 이수 후 개별 어린이집에서 동료 교사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자용 워크북과 교사용 워크북 각 1부씩을 배부하였다. 2회기 대표교사 교육은 강사가 제시하는 사례와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 및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표 V-2-3 참조).

〈표 V-2-3〉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회차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 개요
대상	어린이집 대표교사
주제	사례 중심의 토론 워크숍 - 인권 감수성 관점
강의내용	1. 빨간머리 앤의 생각 - 파란 옷을 입은 아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내 주변에 파란 옷을 입은 아이 생각해보기) 2. 우리 반 관계지도 그려보기 -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의 관계 - 관계지도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3.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 원칙 4.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 참여 및 의사존중의 원칙 5. 사례 나누기 - 만 1세: 너무 돌아다니는 아이들 - 만 5세: 아이들 간 갈등, 자신들의 의견만 말하는 아이들 6. 인권나무 만들기 - 4대 기본원칙을 생각하며 나뭇잎에 원칙과 관련된 상황 작성하기

[그림 V-2-2]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회기 대표교사 교육



다) 교사 워크숍(3회기)

3회기 프로그램은 개별 어린이집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 워크숍으로 진행하였다. 대표교사가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2회기 워크숍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교사 워크숍은 시범기관 참여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20개소 어린이집 모두 교사 워크숍 실시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어린이집별로 최소 4명에서 최대 18명이 교사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그림 V-2-3]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3회기 교사 워크숍



라) 부모교육(2회기)

4회기는 부모교육 전문강사가 개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 V-2-4>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4회차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교육 개요
대상	어린이집 부모
주제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 영유아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부모의 역할 서로 존중하는 부모와 보육교직원
강의내용	1. 나(강의 참여 부모)에 대해 생각해보기 (나는 ~~~이다) 2. 영유아(자녀)에 대해 생각해보기(영유아는 ~~~이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 원칙 -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 -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 의사존중 및 의사결정 참여의 원칙(동영상 시청, 체크리스트) 4. 어린이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 -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26개월 지호의 사례 5.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 원장의 권리, 교사의 권리, 영유아 권리, 부모의 권리가 모두 존중되어야 함. - 여름철 영유아의 물놀이 사례 - 양육자와 아이들이 키우는 어린이집 텃밭 사례

부모교육 내용은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협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집 형편에 맞게 일정을 조율하여 강사를 파견하였다. 부모교육 내용은 <표 V-2-4>에 정리하였다.

마)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아동 대상으로는 굿네이버스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진행하였다(9월 2일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아이소리홀).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우리 몸은 소중한요’)에는 어린이집 9개소 만 2세~5세 영유아 127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인형극 관람 후 극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유아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V-2-5〉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우리 몸은 소중한요	
대상	만 2~5세 유아	
목적	아동의 경계존중교육을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성폭력 예방하도록 함	
인형극내용	1막	등장인물: 선생님, 별남, 한별 상황: 아동간 성적·신체적 놀림에 의한 갈등에 대한 교육 줄거리: 한별이 화장실에 있는 별남을 장난으로 놀림. 이 때문에 별남이 한별의 치마를 들추게 됨.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상호존중에 대해 가르침.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함
	2막	등장인물: 별남, 해남(별남 친형), 엄마, 강아지 상황: 가까운 관계에서의 불편한 접촉에 대한 거절과 수용 교육 줄거리: 별남은 해남이 형의 신체접촉(간지럽힘)이 싫지만 거절 방법을 잘 모른다. 엄마의 도움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함을 배우고, 해남은 별남이 싫어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화해함
	3막	등장인물: 한별, 두별(한별의 동네 언니), 한별 엄마 상황: 친한 동네 언니의 유인 및 성폭력 발생 상황 줄거리: 한별은 두별 언니의 초대로 두별언니네서 병원놀이 함. 그 과정에서 두별 언니가 한별이의 속옷과 살에 접촉을 함. 언니와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한별은 기분이 이상함. 엄마에게 고백하고 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음. 나쁜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엄마에게 배움. 또한 엄마의 허락 없이 누구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믿음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것을 배움

나.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는 앞서 살펴본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 체크리스트와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 관련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 예측요인으로 아동, 보육교사 개인 특성,

보육환경 특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는 아동, 보육교사, 보육환경, 교육 및 연수 4개 영역, 총 16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개별 항목은 <표 V-2-6>에 정리하였다.

<표 V-2-6> 아동 권리 보장 및 학대 예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영역	세부내용	점검 란
아동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운 편입니까 ?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아동의 오늘 기분은 어떠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보육교사	오늘 우울 정도는 어떠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오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동료 교사 간의 문제는 없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오늘 업무량은 적당한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교사의 휴게시간이 준수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영아 담당) 영아를 담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유아 담당) 유아를 담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담당 아동 중 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보육환경	교사 대 아동비율은 기준을 준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장시간 보육하는 아동이 평소보다 많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교사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교육 및 연수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 의무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영아 담당) 영아보육은 이수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3. 시범사업 성과

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권리 보장으로 관점 전환

2015년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발생률이 상승한 것 외에 CCTV 의무 설치,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및 아동학대 신고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정부는

열린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개방하고자 하였으나, 언론에 비취진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는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회복은 아동의 권리보장은 물론 보육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인권 및 권리 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 관계 회복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보통 원장 또는 보육교사,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부모들의 어린이집 현장이나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 4차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원장, 보육교사를 함께 참여시켜 부모들이 보육현장 및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교육자료 중 ‘찾아가는 부모교육 결과보고서’로 부모들의 요구나 반응을 정리한 바 있다.

VI

정책 제언

- 01 아동 및 부모, 교사 인권 감수성 강화
- 02 기관-부모 간 신뢰 회복
- 0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 0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개입체계 개편
- 05 맺는 말

VI. 정책 제언

제6장에서는 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장·단기로 제시하였다.

1. 아동 및 부모, 교사 인권 감수성 강화

첫째, 아동학대 예방에서 권리 보호로 교육의 관점을 전환한다.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회복은 아동의 권리보장은 물론 교사의 인권이 보장 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69.3%와 유치원 교사 55.0%만 교사 대상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56.7%, 유치원 교사 71.4%가 교사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어린이집·유치원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교육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아동권리보장 교육을 강화한다.

교사 및 원장 교육을 비롯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교육청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대부분 아동권리 보장에서부터 아동학대 처리 절차까지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교육을 추진해 나간다.

셋째, 부모 대상 아동권리(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2015년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CCTV가 의무설치 되면서 부모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2018년 강

서구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자살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어 피해 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사들까지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부모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도 부모인 경우가 90%가 넘는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모두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62.1%, 유치원 교사 71.3%는 학부모를 꼽아 부모의 인권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부모 자신도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장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중 각각 99.6%, 97.7%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38.7%, 유치원 교사는 42.4%만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51.3%, 유치원 교사는 61.5%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직원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및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의무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부모 포함)과 교사는 사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조사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아동(92.9%, 98.1%) 및 교사(93.7%, 97.9%)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아동학대 발생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부모 포함)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및 사례관리 기관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기관-부모 간 신뢰 회복

첫째, 부모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부모, 관계기관 면담에서 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 다수의 피해가 파악되었다.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44.1%는 부모의 인권 인식, 25.6%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13.9%는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13.0%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들었고, 유치원 교사는 54.2%는 부모의 인권 인식, 26.0%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8.0%는 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확대, 8.8%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꼽았다. 정부는 매년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2017년 우수형 100개소, 지자체형 1,000개소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방성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회복한다.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첫째,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 아동학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부분 대집단으로 실시되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표교사 연수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권리 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아동학대 영향요인으로 아동, 보육교사 개인 특성, 보육환경 특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연, 분기, 매일 일상적으로 자가 점검을 실시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개입체계 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출동이 이루어지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명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검찰로 송치 되지만, 판단이 모호한 사건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게 된다.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은, 조정위원회 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이 취소되고,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후 무혐의를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가 입은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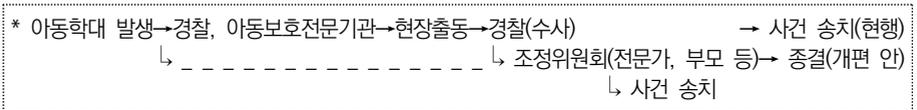
따라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현장 의견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출동하는 과정에서 보육·유아교육 현장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 단계에서 소위원회(또는 청문회) 등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보육·유아교육 전문기관(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학대 개입체계는 아동복지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현 개입체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육·유아교육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다. 보육·유아교육 전문가가 배치됨에 따라 보육·교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육·교육활동인지, 아니면 아동학대 행위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조정위원회에 보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5. 맺는 말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원인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정책화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사건 판례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 학대유형, 조치 현황 등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내용을 파악하였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

사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체 점검체크리스트(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및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에서 권리 보호로 교육의 관점 전환, 아동권리보장 교육 강화, 부모 대상 아동권리(인권) 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및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 의무화, 부모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 강화,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 아동권리 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개입체계 개편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더 이상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관과 부모, 부모와 교사, 교사와 아동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해·안지령(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9(4), 327-345.
- 강은진·이정림·조혜주(2015).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고영자(2018). 유아교사의 유아학대 인식 및 학대예방노력,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3), 79-105.
- 교육부(2017). 제 4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 김아름·박은영·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은(2016). 유아교사의 인성 자기평가와 아동학대 인식 간의 관계 연구. 인지 발달중재학회지, 7(3), 17-30.
- 김영은·이희선(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정책연구, 10(1), 49-72.
- 김우태(2017).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한국경찰연구, 16(3), 47-68.
-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희·김은심(2017). 은유분석을 통해 본 학대, 체벌, 훈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445-473.
- 김충일(2017). 교사의 영·유아학대 증동에 대한 극복과 대처 전략의 구성. 유아교육학논집, 21(2), 237-257.
- 김태연·정현심(2018). 예비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과 태도-타전공 대학생과의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18(3), 65-75.
- 김형모(2014).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46, 239-266.

- 김희영·윤현석(2016).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4), 547-566.
- 나인숙·이기중(2017).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직무 임파워먼트, 영·유아학대 인식, 영·유아학대 실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와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229-249.
- 대한민국 정부(20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문용린·문미희·곽윤정·김민강·유경재(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소윤·서현아·강현미(2017).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의식이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319-336.
- 박은미·윤혜진(2008).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24, 163-185.
- 박진아·이경숙(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에 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35(3), *유아교육연구*, 27-54.
- 박혜진(2016).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27(3), 253-283.
- 보건복지부(2014).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어린이집용).
- 보건복지부(2017). 열린어린이집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8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9a). 2019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9b). 2019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통합 지표.
- 서동미·연선영(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영유아학대에 대한 인식과 영유

- 아학대 실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와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0(1), 193-216.
- 유계숙·양수진·조선아(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정책연구, 10(1), 241-268.
- 윤영배·유준호(201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학대인식, 인성,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 26(4), 277-303.
- 이경숙·박진아·신의진(2015). 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01-327.
-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 이명순(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아동보호연구, 2(1), 99-120.
- 이미선·김한나(2015). 보육교사의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 경험과 학대피해경험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학대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2), 309-333.
- 이윤진·장희선·박은영(2018).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은주(2015).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20(1), 69-85.
- 이현재(2003). 자의 최선의 이익-미국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11(2) pp. 91-204.
- 장영인·정민자(2016).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25-55.
- 장영인·정효정(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104(-), 53-89.
- 장지현·이완정(2011). 유아 어머니의 아동권리준중 실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과 권리, 15(3). 재구성.
- 전병주·최은영(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31(1), 119-150.

정선아·장화정·김경희·김미경·박보영(2018).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연구: 2015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2(3), 351-382.

조범근·김준영·배귀희·문명재(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269-298.

조흥식(2016). 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동향, 26-3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내부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내부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결과보고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7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결과보고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2018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결과보고서.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한유미·조명자(2018).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방지노력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2(2), 145-162.

한진원(2017). 유치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유치원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 태도. 유아교육학논집, 21(1), 237-261.

Bowlby, J. (1969). 애착-인간 애착 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김창대(역), 서울: 나남, 2009.

Bronfenbrenner, U.(1979). 인간 발달 생태학. 이영(역), 서울:교육과학사, 1992.

Janusz Korczak(2002). 야누슈코르차크의 아이들. 서울: 양철북.

【참고 사이트】

EBSCultuer (EBS 교양) / 지식채널e -Knowledge of the channel e_20110502_어린이를 사랑하는 법. <https://youtu.be/86WvW1S2-ro>

EBSDocumevtary (EBS 다큐) / EBS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2부 도덕성 <https://www.youtube.com/watch?v=NBXDaXO-TgM>.

-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20 2019. 06. 19 인출.
-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7 2019. 5. 23 인출.
- <http://www.korea1391.go.kr/new/page/concept.php> 2019. 6. 25 인출.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41&efYd=20180209#0000> 에서 2019. 6. 25 인출.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72&efYd=20180620#0000> 에서 2019. 6. 26 인출.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51&efYd=20180914#0000> 에서 2019. 6. 26 인출.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442&efYd=20180620#0000> 에서 2019. 6. 26 인출.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33&efYd=20190612#> 에서 2019. 6. 25 인출.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28&efYd=20190716#0000> 에서 2019. 6. 26 인출.
- I London Play. www.londonplay.org.uk 2019. 6. 20 인출.
- KESS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9. 6. 30 인출).
2018 교육통계연보. 학교기본통계, 유치원 현황, 유치원 개황 자료.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wch.go.kr> 2019. 4. 30 인출.
- 경기도교육연수원. <https://www.gtie.go.kr/index.go> 2019. 4. 30 인출.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http://gnchild.gne.go.kr> 2019. 4. 30 인출.
-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https://www.gbeti.or.kr/> 2019. 4. 30 인출.
-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s://iedu.gen.go.kr> 2019. 4. 3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금연이미지. <http://m.blog.naver.com/withbupyeong/221428985962>.
-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dge.go.kr/daegu-i/> 2019. 4. 30 인출.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2019. 6. 14 인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prevUrl=interSrch&tabId=0&q=%EC%95%84%EB%8F%99%ED%95%99%EB%8C%80#//> 2019. 6. 14 인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dje-i.go.kr> 2019. 4. 30 인출.

드라마 SKY캐슬 등장인물 소개. <http://tv.jtbc.ioins.com/cast/pr100109692>.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childedu.pen.go.kr> 2019. 4. 30 인출.

빨간머리앤 23화. https://www.youtube.com/watch?v=50AozUdLgU&list=PLvf3oVYZH_8v0X0supjCaCRegPoUeoC2_&index=2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https://cybereduseoul-i.sen.go.kr> 2019. 4. 30 인출.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uskids.kr> 2019. 4. 30 인출.

유니세프 이슈 -레옹과 어린이 권리 이야기(3:15~3:42) 27초 <https://www.youtube.com/watch?v=W5m-T-2qhVM>.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2019. 6. 25 인출).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https://child.ice.go.kr/> 2019. 4. 30 인출.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 <http://iedu.da.jne.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62428320&siteId=iedu&menuUIType=top> 2019. 6. 14 인출.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http://jb-i.kr> 2019. 4. 30 인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http://www.jjkids.go.kr> 2019. 4. 30 인출.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2019. 6. 14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2 2019. 5. 23 인출.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n-i.go.kr/2014/teacher/sub_01.jsp 2019. 6. 14 인출.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biedu.go.kr> 2019. 4. 30 인출.

【참고 법령】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3고단457 판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1호, 2018. 3. 13., 일부개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9. 선고 2018가단2232019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일부개정]
-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786호, 2018. 4. 27.,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255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일부개정]
- 울산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654 판결.
- 유아교육법.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인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3238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134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3579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Plan to Introduce Support Program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hild Abuse

Misun Yang, Eunyoung Kim, Kaekyung Yum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and the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with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examines the feasibility of applying and making into policies for pilot projects for child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hild abuse. This study presents ways to prevent and eradicate child abuse in order to restore trust in the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of child rights and to increase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For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llected and examined relevant laws and systems, precedent studies, case studies of the Supreme Court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relevant systems and guidelines such as preventions, measures, case managements and follow-ups on child abuse, the oper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conducted by the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an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y extracted data and analyzed the trend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for the past five years from 2014 to 2018, which was

accumulated and managed by the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council was formed to promote a pilot project to support child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hild abuse, and a program was developed to operate a pilot project supporting child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hild abuse, and the pilot project was opera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19.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child abuse and rights protection with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recommend shifting the perspective to an education that can increase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towards not only children but also teachers rather than focusing on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that can perceive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potential child abusers. Second, since most of the contents of child abuse education consist of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through the child abuse handling process, we recommend promoting the education in terms of the child rights protection rather than child abuse. Third, more than 80% of child abuse cases occur at home, and cases where abusers are parents exceed over 90%. Therefore, parents themselves are also encouraged to raise their awareness of child rights and furthermore, to raise awareness of rights of childcare staffs who care for children. Fourth, we recommend supplying self-inspection checklists for child rights protection and abuse prevention and systemizing to be operated in the form of self-inspection. Fifth, we recommend strengthening the guidance on how to report child abuse and applying to watch CCTV and its procedure. Sixth, we recommend restoring parents' confidence in childcare centers by increasing the openness of the childcare centers and increasing the opportunity for parents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Seventh, we recommend expanding and operating nationwide pilot programs on childcare centers without child abuse, since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 participatory program that can be distributed to childcare centers through the training of representative teachers. In addition, the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should train human rights education specialists for children and dispatch them to parent educations held in childcare centers. Eighth, the child abuse intervention system is not easy to adjust because it has a legal basis in the Child Welfare Act. As a measure to improve within the current intervention system, additional specialists for childcare centers should be assigned to childcare institutions, or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pecialists should be assigned mandatorily to the Mediation Committee and make them participate in child abuse incidents occurring 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Keyword: Childcare Center, Kindergarten, Child Abuse, Support Programs

부록 1. 부록 표

〈부록 표 Ⅲ-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 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2 에서 2019. 5. 23 인출.

〈부록 표 III-2-2〉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해 보육교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정기적 사용을 권장합니다.

항목	전혀 없음	1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1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2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3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4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도구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6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둔적이 있다.				
7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을 아동에게 고향을 지른 적이 있다.				
8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하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10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간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11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12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14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가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 사용주기 : 근무개시 1주일 이내에 필수, 이후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연2회 정도)사용을 권장합니다.

분류	세부내용
없다	당신은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이상 '있다'에 체크한 경우	'예'에 해당되는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시고 점수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해 보세요.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20 에서 2019. 06. 19 인출.

〈부록 표 III-2-3〉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유치원 교직원이 일과 중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그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가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해보세요.

	문	항	예	아니오
1	유아를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한 적이 있다.			
2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아를 억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3	유아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하는 보복성 행동을 요구한 적이 있다.			
4	아동을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			
5	유아에게 비난, 원망, 거부, 우롱,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적이 있다.			
6	유아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7	유아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로 시킨 적이 있다.			
8	수업시간이나 급·간식 시간에 유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적이 있다.			
9	유아를 교실이나 특정 장소에 혼자 있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강제한 적이 있다.			
10	유아의 신체부위를 만져 유아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			
11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성적 표현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다.			
12	유아의 요구에 대해 모른 척 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			
13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14	교육활동 중에 유아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느라 유아를 방치한 적이 있다.			
15	유아가 한 수행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준 적이 있다.			

〈자가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 교직원이 직접 활용 : 주기적으로 자기 행동을 평가해본다.
- 교직원 상호 모니터링을 위한 활용 : 주기적으로 짝으로 정한 교직원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로 나눈다.
- 원장의 교직원 관리를 위한 활용 : 주기적으로 원장이 소속 교직원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직원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다.

구분	내용
아니오	당신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개 이상 '예'에 체크한 경우	'예'에 해당하는 문항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67 에서 2019. 5. 23 인출.

부록 2.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동권리 인식 개선 및 학대 예방에 관한 교사 조사

조사표 번호	-	시도	구시군 읍면동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9년도 과제로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관련 문의 : 엄혜경 연구원(02-398-7757, yhk0128@kicce.re.kr)
양미선 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 일반사항

1. 귀 기관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어린이집	① 국공립	② 사회복지법인	③ 법인단체등	④ 민간
2) 유치원	⑤ 가정	⑥ 직장(☞ 조사 중단)	⑦ 협동(☞ 조사 중단)	⑧ 사립법인
	① 공립 단설	② 공립 병설	③ 사립법인	④ 사립사인

2. 귀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지역규모	① 대도시(특광역시외의 구)										② 중소도시(시도의 구)						
	③ 읍면지역(특광역시 및 시도(경기 등)의 읍면)																

3. 귀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원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정원: ()명	현원: ()명
----------	----------

4. 귀하가 현재 담당하는 연령과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0세반 ☞ ()명 ② 1세반 ☞ ()명 ③ 2세반 ☞ ()명 ④ 01,세 혼합반 ☞ ()명
 ⑤ 1,2세 혼합반 ☞ ()명 ⑥ 2,3세 혼합반 ☞ ()명 ⑦ 3세반 ☞ ()명 ⑧ 4세반 ☞ ()명
 ⑨ 5세반 ☞ ()명 ⑩ 3,4세 혼합반 ☞ ()명 ⑪ 4,5세 혼합반 ☞ ()명

5. 귀하의 평일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24시각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출근시각	2) 퇴근시각
()시 ()분	()시 ()분

II. 아동학대 관련 질문

II-1. 아동학대 관련 교육

6. 귀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년에 1시간 이상 받고 있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1시간 이상 이수(☞ 문항 6-1로) ② 교육 받지 않음 ③ 비해당(미취업, 휴직 등)

6-1. (① 이수 경험 있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을 모두 V 표 해 주십시오.

- ① 시도청 ② 시도 교육청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유아교육진흥원 ⑤ 인권교육 전문기관 ⑦ 재직 어린이집유치원 ⑧ 기타()

6-2. (① 이수 경험 있는 경우) 귀하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1곳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도청 ② 시도 교육청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유아교육진흥원 ⑤ 인권교육 전문기관 ⑦ 재직 어린이집유치원 ⑧ 기타()

7. 귀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교육 이수(☞ 문항 7-1로) ② 교육 미이수 ③ 비해당(미취업, 휴직 등)

7-1. (① 이수 경험 있는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교육기관을 모두 V 표 해 주십시오.

- ① 시도청 ② 시도 교육청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유아교육진흥원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⑦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⑧ 기타()

7-2. (① 이수 경험 있는 경우) 귀하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1곳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도청 ② 시도 교육청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유아교육진흥원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⑦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
 ⑧ 기타()

II-2.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8.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원인으로 아동, 교사, 환경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사인별로 귀하가 생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주요 원인을 1가지씩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기절	② 장애
1) 아동 ③ 정서적 문제(주의산만, 불안, 애착문제)	④ 행동문제(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
⑤ (언어, 신체 등) 발달 문제	⑥ 기타()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2) 교사	① 직무스트레스	② 정신건강문제(우울, 불안, 소진 등)
	③ 아동발달 등 전문성 이해 부족	④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3) 환경	⑤ 아동권리 또는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⑥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⑦ 기타()	
	① 장시간 근무시간	② 과도한 업무량
	③ 교사 처우	④ 높은 교사대 아동 비율
	⑤ 교사 휴게시간	⑥ 교사 관리 부족
	⑦ 교사 양성과정 문제	⑧ 교사 재교육(보수교육) 부족
	⑨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 문화 (위계적관계, 갈등, 소통부재 등)	⑩ 기타()

9.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

- ① 교사대 아동 비율
- ② 기본 보육시간
- ③ 교사 처우
- ④ 교사 휴게시간
- ⑤ 어린이집유치원 내 조직문화
- ⑥ 교사 현직교육(보수교육 등)
- ⑦ 교사 양성과정
- ⑧ 기타()

10. [어린이집 질문] 귀하는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높은 시기를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

- ① 등원
- ② 오전 자유놀이
- ③ 오전 간식시간
- ④ 급식시간
- ⑤ 낮잠시간
- ⑥ 오후 간식시간
- ⑦ 특별활동시간
- ⑧ 하원시간
- ⑨ 기타()

10-1. [어린이집 질문] 학기 초 적응기간에 느끼는 업무강도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입니까? 학기 중에 느끼는 업무강도나 스트레스를 '1' 이라고 생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 업무 강도										
2) 업무 스트레스										

10. [유치원 질문] 귀하는 하루 일과 중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높은 시기를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	----------

- ① 등원
- ② 오전 자유놀이
- ③ 오전 간식시간
- ④ 급식시간
- ⑤ 오후 간식시간
- ⑥ 특별활동시간
- ⑦ 방후과정 간
- ⑧ 하원시간
- ⑨ 기타()

11. 다음의 상황에 처한다면, 귀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될까요?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원장 또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① 목격한 즉시 신고한다	② 고민한다
	③ 못 본 체한다(목인)	④ 기타()
2) (담당아동)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① 발견 즉시 신고한다	② 고민한다
	③ 못 본 체한다(목인)	④ 기타()

11. [어린이집 질문] 2015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 의무화제도 도입 당시 교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귀하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음
- ② 도움되지 않음
- ③ 보통
- ④ 어느 정도 도움
- ⑤ 매우 도움

12. [어린이집 질문]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11-1. ①, ② 반대하는 경우) CCTV 없는 어린이집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2. [유치원 질문] 어린이집은 2015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CCTV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문항 12-1로) ② 반대(☞문항 12-1로) ③ 찬성(☞문항 12-2로) ④ 적극 찬성(☞문항 12-2로)

12-1. ①, ② 반대하는 경우) 유치원 내 CCTV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대상 유아 외의 유아 및 교사 개인정보 노출 ② 교사의 교권 침해
 ③ 교사 사기 저하 ④ 유치원과 가정 간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
 ⑤ 기타()

12-2. ③, ④ 찬성하는 경우) 유치원 내 CCTV 의무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아동 인권 보호 ② 교사의 인권 보호
 ③ 부모의 불안 해소 ④ 아동학대 증거자료 확보
 ⑤ 기타()

II-4.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13. (보육)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성범죄자의 어린이집·유치원 진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경력 조회는 의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문항 12-1로) ② 반대(☞문항 12-1로) ③ 찬성(☞문항 12-2로) ④ 적극 찬성(☞문항 12-2로)

14.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대상 아동에게만 사례관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 또는 교사 대상의 사례관리(상담, 심리치료 등)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교사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동	① 절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2) 교사	① 절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15.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놀이와 방임의 기준이 모호하여 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누리과정 시행에 앞서 부모 대상의 누리과정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적극 찬성

III. 기관-가정 간의 신뢰 강화

16.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갑질 등으로 보육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귀하는 기관-가정 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 전혀 신뢰하지 않음			보통				매우 신뢰함→		
	1	2	3	4	5	6	7	8	9	10
어린이집,유치원-가정										

5. 귀하가 취득한 최초 취득한 교사자격은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 2가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상위자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육교사 자격	유치원 교사 자격
1) 최초 취득 자격급수		
2) 현 자격 급수		

【 보기 】

1) 보육교사	① 3급 보육교사	② 2급 보육교사	③ 1급 보육교사	④ 원장
2) 유치원 교사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② 유치원 1급 정교사	③ 원감	④ 원장

6. 귀하가 이 기관에 재직하신 기간은 총 몇 년 몇 개월입니까?

총 _____년 _____개월

7. 귀하의 총 교사 경력은 몇 개월입니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경력을 모두 합산한 후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총 _____년 _____개월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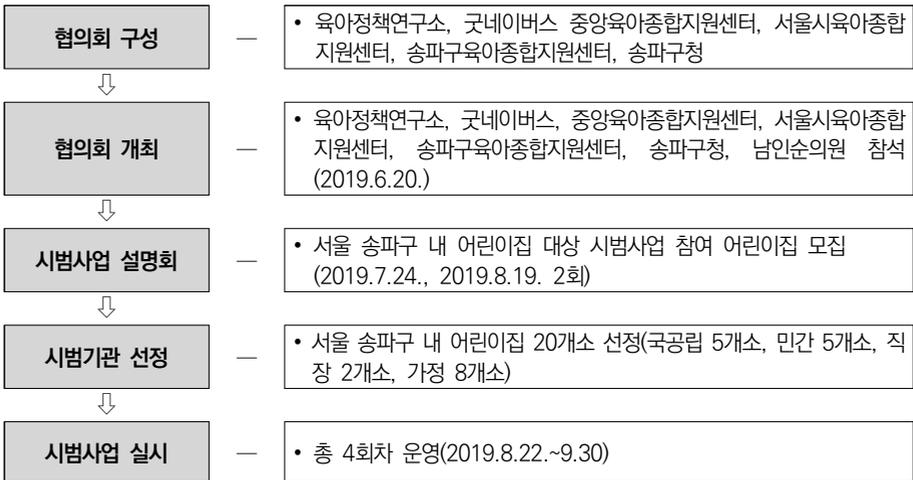
부록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교육자료

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일정 및 개요

가. 추진일정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굿네이버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송파구청 담당자와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6월 경 개최한 협의회 의견을 검토한 후 7월에 송파구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후 시범사업 모집 및 선정 기간을 거쳐,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4회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일정



2.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시범사업은 총 4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부담감을 줄이고, 기존 아동학대예방교육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실천과 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집과 부모가 영유아의 권리를 지키는 권리옹호자로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범사업 진행 시에는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이라는 별도의 사업명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요

회차	대상	주제	내용	시간	방법
1	원장, 대표교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권리교육 (인권 감수성)	- 교사 마음 헤아리기 (교사로서 존재감, 유능감 인식)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권리 감수성 - 영유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모와의 협력	2시간	어린이집 대집단교육 (20개소) 원장 및 대표교사 각 20명 총 40명
2	대표교사	사례 중심의 토론 워크숍 - 인권 감수성 관점	영유아의 인권감수성 실천을 위한 사례 중심 워크숍 3회차 사례워크숍을 실제 진행하기 위한 대표교사의 사전 교육	2시간	어린이집 대집단교육 대표교사 20명
3	어린이집 교사 전체	어린이집 사례중심 토론 워크숍	어린이집의 일상을 돌아보며 영유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례를 나누는 워크숍	1시간 30분	개별 어린이집 자율 시행(20개소) 개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전체 참여
4	어린이집 부모	부모교육: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영유아를 보는 관점 영유아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부모의 역할 서로 존중하는 부모와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의 협력)	1시간 30분	찾아가는 전문 부모교육 (강사 파견)

3. 시범사업 교육자료

가. 1회차 교육자료

1차시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019. 8. 22(목), 17:00~19:00
우현경 센터장(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들어가며

영유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 느낌을 한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 아동을 소극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UN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임 (2019년 현재 196개국)
- ▶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비준, 이행 노력을 하고 있음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 1부, 2부, 3부의 4개 부분 (54개 조항)으로 구성
 - 전문은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 내용
 - 1부(1~41조)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 2부(42~45조)는 아동권리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
 - 3부(46~54조)는 협약의 조항을 보충하기 위한 조항(부칙)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 아동의 정의

18세가 안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2조 차별 반대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 자신이나 부모님이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국회 등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아동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4조 정부의 역할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 주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모의 지도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는 방법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27조 생존권과 발달권

아동은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7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8조 신분이 지켜질 권리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와 같은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아동이 이를 빼앗긴 경우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20조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없거나 이별한 경우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0조 가족의 재결합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아동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과 출국 절차를 간편하게 허가해줘야 합니다.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11조 불법 해외 이송 반대

아동을 불법으로 해외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조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유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15조 참여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 수 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사생활 보호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이나 가족, 통신(편지,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 함부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간섭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아동에게 유익한 자료를 보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잘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19조/34조 학대로부터 보호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아정책연구소
The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21조 입양

아동이 입양될 경우, 어른들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보장해줘야 합니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고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2조 난민아동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도록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과 헤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러 단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23조 장애아동 보호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유아정책연구소
The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24조 영양과 보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하며, 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8조/29조 교육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반드시 모든 아동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는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30조 소수 아동 보호

인종이나 종교, 언어에서 소수인 아동들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유아정책연구소
The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우리들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여가와 놀 권리

아동은 휴식을 충분히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아동 노동

아동은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며,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38조 전쟁에서 아동 보호

아동은 전쟁 상황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절대 전쟁에 이용되어선 안 됩니다.

42조 협약의 배포

정부는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유아정책연구소
The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Non-discrimination)

- ▶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함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Best interests of Child)

-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시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유아정책연구소
Korea Children's Rights Research Center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The rights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
- ▶ 생명권은 단순히 아동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포함
- ▶ 따라서 생명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짐

참여 및 의사존중의 원칙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유아정책연구소
Korea Children's Rights Research Center

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감수성

인권문제와 관련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¹⁾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참고자료 인권감수성의 구성요소¹⁾
1) 문용린 외(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

상황지각	<p>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으로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 능력 → 아동권리 침해라고 느끼지 못했던 상황 지각</p>
결과지각	<p>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 능력.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도 포함됨 → 아동권리 침해로 인한 결과 지각</p>
책임지각	<p>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함 → 아동권리 침해를 해결, 예방하고자하는 책임 지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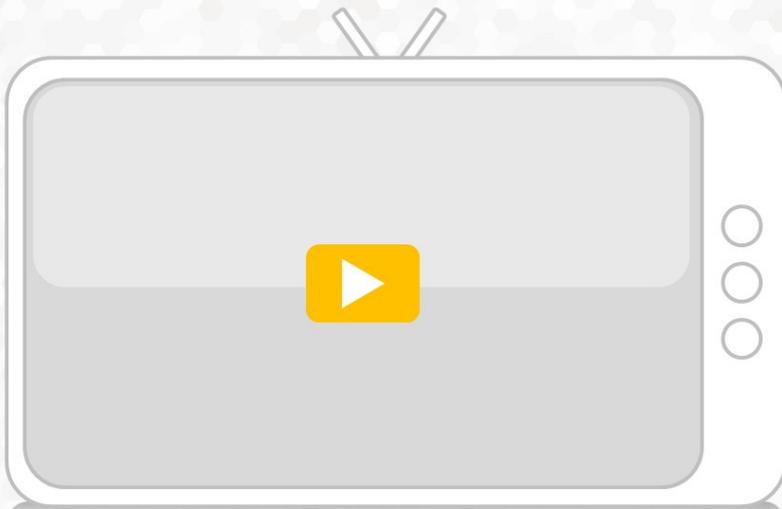
아이들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가지 **행동**을
우리 아이들은 어떤 **눈**으로 볼까?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유아정책연구소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아이들의 눈으로 본다면?



참고자료 EBS Documentary (EBS 다큐) / EBS 다큐프라임 - 아이의 사생활 2부 도덕성
<https://www.youtube.com/watch?v=NBXDaXO-TgM>

 유아정책연구소
Cente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생태학적인 관점²⁾에서 생각해보기



참고자료 생태학적 관점²⁾에서 생각해보기
2) Bronfenbrenner, U.(1979). 인간 발달 생태학. 이명(역), 서울:교육과학사, 1992.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의 시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재형성되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이미 과거의 것일 수 있지만,

좋은 나쁜든 우리는 그들의 작품이다.

- 프랑수아 모리악 (François Mauriac)³⁾ -

참고자료 프랑수아 모리악(François Mauriac)의 글귀³⁾
3) Bowlby, J. (1969). 애착-인간 애착 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김창대(역), 서울:나남, 2009.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작지만..
커다란 선생님..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나. 2회차 교육자료

2차시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2019. 8. 29(목), 16:00~18:00
탁옥경 원장 (금융투자협회 푸르니어린이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차



- 1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관리교육(인권 감수성)
- 2주 사례 중심의 토론 워크숍 - 인권 감수성 관점
- 3주 어린이집 사례 중심 토론 워크숍
- 4주 부모교육 :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빨간 머리 앤의 생각



그림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50AozUdgLgU&list=PLvF3oVYZH_8v0X0supjCaCRRegPoUeoC2_&index=23

음악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Music Policy and Research

우리 반 관계지도 그려보기



- ▶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의 관계지도 그려보기
- ▶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기
 - ▶ 평소 상호작용이 많은 아이는 누구? 그 이유는?
 - ▶ 평소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아이는 누구? 그 이유는?
 - ▶ 아이들끼리의 관계

자료출처

드라마 SKY캐슬 등장인물 소개. <http://tv.jtbc.ioins.com/cast/pr100109692>

음악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Music Policy and Research

유엔아동권리협약 : 4대 기본 원칙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첫 번째 편지

만 1세반 담임교사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만 1세인데 너무 돌아다니기만 해요.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긴 있어요. 남자 아이인데 그 아이는 놀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돌아다니고 놀이감도 손에 쥐고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딱히 갖고 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실 안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뛰어들어간단요. 그러면 꼭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원래 앉아서 놀이도 할 줄 아는데 결국 따라다니다가 뛰는 아이들이 셋, 넷 늘어나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한 아이가 교실을 어수선하게 만드니까 다른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대 기본 원칙 렌즈로 바라보기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두 번째 편지

만5세반 하늘반의 담임교사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인 편이에요.

그런데 만5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론가 같들이 많고 그걸 교사에게 끊임없이 와서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도 너무나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교실이 금방 소란스러워져서 교사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게 돼요.

내년에는 학교에도 가니가 교사 욕심에는 이것저것 준비시켜서 보내고 싶은데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할 때에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서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가 제가 규칙을 정하게 돼요.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두 번째 편지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에도 뭐 하나를 할 때면 무조건 뭐든지 물어보요.

하나 끝내면 또 물어보고 하나 끝내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서 손을 든 아이들을 먼저 이야기

하게 해주거나 바르게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교사를 너무 지속적으로 자꾸 불러대니까 그런 점이 너무 어

렵고 자꾸 규칙을 설명해주게 되어서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4대 기본 원칙 렌즈로 바라보기



인권나무 만들기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대 기본원칙은 우리 가까이

차별금지

- ▶ 아이들 수에 충분한 놀이감 마련
- ▶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세심한 태도
- ▶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 ▶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 ▶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
- ▶ 놀이감을 성별로 구분, 제시하지 않음
- ▶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대 기본원칙은 우리 가까이

생존, 보호, 발달

- ▶ 놀이 환경의 구성
- ▶ 영유아에게 맞는 적절한 급간식
- ▶ 교실 내 휴식공간 마련
- ▶ 교실 내 마실 물을 제공
- ▶ 연령과 흥미, 발달에 맞는 놀이감, 활동 제공
- ▶ 충분한 바깥놀이 및 대근육놀이의 제공
- ▶ 개별적인 낮잠습관의 수용
- ▶ 위험한 공간의 표시, 모서리보호대 등의 안전조치

4대 기본원칙은 우리 가까이

영유아 이익 최우선

- ▶ 식사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시
- ▶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한 배변경험의 계획
- ▶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
- ▶ 부모와 헤어지지 못하는 영유아가 부모와 급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공감해 줌
- ▶ 부모의 과도한 학습요구에 대해 영유아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함

4대 기본원칙은 우리 가까이

의사존중, 의사결정 참여

- ▶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 나누기
- ▶ 영유아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지원
- ▶ 영유아 반응을 관찰한 후 적절하게 개입
- ▶ 내가 앉고 싶은 친구 옆자리에서 식사하기
- ▶ 개별적인 식사량과 식사시간, 식습관 존중
- ▶ 창의적인 미술활동
- ▶ 자연스런 놀이참여를 격려
- ▶ 계획안에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영유아 흥미나 요구에 의한 놀이를 지원

어린 왕자로부터...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사막에서는 조금 외로워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라나다.

사랑합니다!
응원 할게요~

다. 2회차 교육자료: 진행자용 워크북

진행자용 워크북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우리 어린이집 워크샵의 목적은?

- 1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교사로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다 옹호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 원칙을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상황과 접목시켜 이해한다.
- 3 실제 사례들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아동권리존중으로 더 나아가는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빨간머리 앤의 생각

빨간머리 앤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림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50AozUdglgU&list=PLv3oVY2H1_8v0X0supjCaCRegPoJeoC2_&index=23

- ▶ 소요시간 : 15분
- ▶ 활동방법 :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다

내용소개

목사관에 방문한 빨간머리 앤이 그곳에 걸린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보며 자신의 감상을 말하는 장면이다.

앤은 그림 속 아이들 중, 예수님의 뒤에 멀리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아이를 고아였던 자신과 처지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앤은 그림 속 아이가 예수님의 뒤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도 다른 애들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남들 뒤에서 조심조심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예수님 이외엔 아무도 자기의 일을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빨간머리 앤의 생각’ 활동

- 우리 주변에도 그림 속과 같이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있나요?
내 주위에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아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아이’

진행자용 팁

위 ‘빨간머리 앤의 생각’에 나오는 그림 속 ‘파란 옷을 입은 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 즉, 우리 반에서 나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그 아이의 평소 행동과 모습은 어떠했는지 교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다음 관계지도 그리기 활동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간단히 진행)

- 나와외 상호작용이 가장 적은 아이
- 항상 조용해서 관심을 덜 받게 되는 아이
- 일과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교사의 손길을 오히려 받지 못하는 아이

우리 반의 관계지도 그려보기

우리 반의 관계지도

▶ 소요시간 : 20분

▶ 활동방법 : 위의 우리반 '파란 옷을 입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반 아이들과 교사인 나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그려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반 관계지도의 예시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교사인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의 관계지도를 그려본다.

- 내가 평소에 상호작용이 많은 아이들은 나로부터 출발하여 근접하게 그린다.
- 평소에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아이는 나로부터 멀리 있게 그린다.
- 교사인 내 쪽에서 상호작용이 출발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는 화살표방향으로 표현한다.
- 아이들끼리의 관계도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상호작용이 많은 경우 선의 굵기를 굵게, 적은 경우는 선의 굵기를 가늘게 표현할 수 있다.
- 아이들 전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일부만을 생각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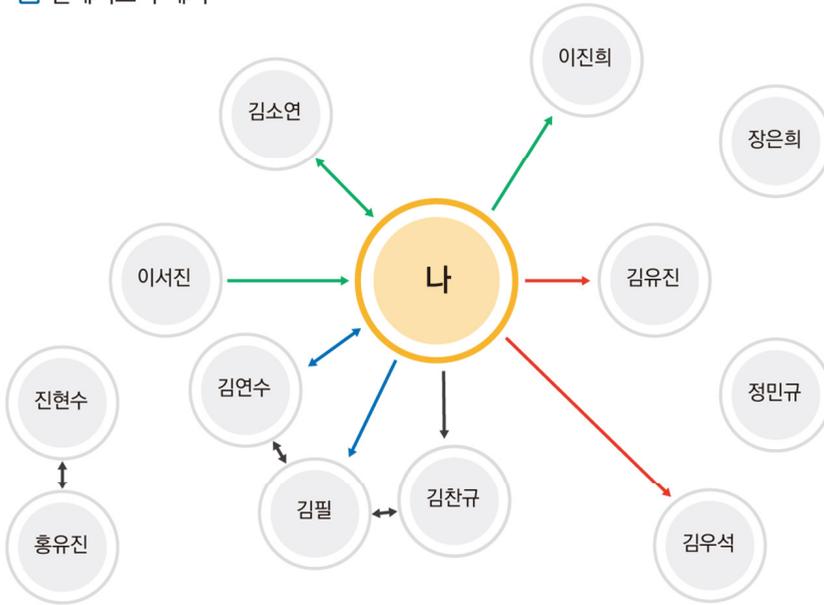
진행자용 팁

관계지도에서 상호작용이 가장 많으며 거리가 가깝게 표현된 아이와 반대로 상호작용이 가장 적으며 거리가 멀게 표현된 아이를 살펴보고 아래 사항에 대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아이와 상호작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내용의 상호작용인가?
- 이 아이와는 특별히 상호작용이 적은 이유는?
- 나(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적은 아이들이 가지는 특성과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해본다.

📎 우리 반의 관계지도 그려보기

☑ 관계지도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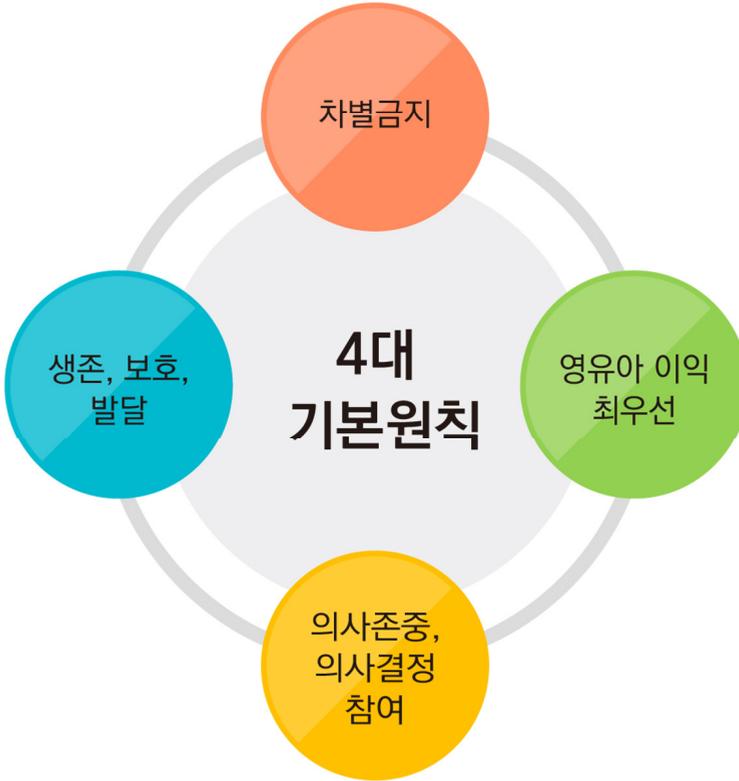


만2세 교사 '나'가 그린 우리 반 관계도입니다.

- ▶ 김연수, 김필, 김찬규는 셋이 함께 놀이를 자주 하며 연수는 교사와 서로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은 편입니다. 필과 찬규에게는 교사가 말을 먼저 건네는 편이며 찬규보다 필에게 교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 ▶ 서진이 긍정적 표현을 교사에게 먼저 하는 편이며 진희는 입소한지 얼마 안되는 원아이기 때문에 교사가 평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 ▶ 유진은 소심한 아이여서 교사가 말을 많이 건네지만 울 때마다 달래는 때가 많습니다. 우석이는 놀이감을 계속 담고 쓰는 등 또래에게 주로 방해되는 행동이 많아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말을 평소에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 ▶ 현수와 유진이는 서로가 함께 놀이하긴 하지만 교사와의 특별한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은희와 민규는 각자 놀이하지만 교사의 관심이 덜 가는 아이들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4대 기본원칙 정리하기

4대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4가지 권리를 써 보세요.



TIP 진행자용 팁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살펴봄에 교실 내 모든 아이들에게 위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편지

만 1세반 담임교사입니다.



- 저희 반 아이들은 만1세인데 너무 돌아다니기만 해요,
-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긴 있어요,
- 남자 아이인데 그 아이는 놀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돌아다니고
- 놀이감도 손에 쥐고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딱히 갖고 놀지는 않아요,
- 그런데 그 아이가 교실안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뛰어다니거든요,
- 그러면 꼭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 그 친구들은 원래 앉아서 놀이도 할 줄 아는데 결국 따라다니다가 뛰는
- 아이들이 셋 넷 늘어나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 한 아이가 교실을 어수선하게 만드니까 다른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것
- 같아 걱정됩니다.

▶ 소요시간 : 20분

▶ 활동방법

1. 사례를 읽어본다.
2. 팀원들이 함께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워크북에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교사였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 생각해 보기
3. 각 팀 별로(혹은 수가 적은 경우 교사 전체) 교사와 아이 모두의 입장이 절충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한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편지’ 활동

위 편지 내용을 읽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진행자용 팁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경험한 비슷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경험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가진 어려움	아이가 가진 어려움

내가 이 교사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왜 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걸까요? 내가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한 해결방안은?

📝 ‘첫 번째 편지’ 활동

☑ 4대 기본원칙 렌즈로 바라보기



- ▶ 소요시간 : 20분
- ▶ 활동방법

각 팀이 앞에서 정리한 해결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4대 기본원칙 중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반영되지 않은 원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 진행자용 팁

진행자는 앞에서 정리한 4대 기본원칙의 내용을 각각 언급하고 짚어보며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다. 하나의 정해진 답은 없으므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을 정리한 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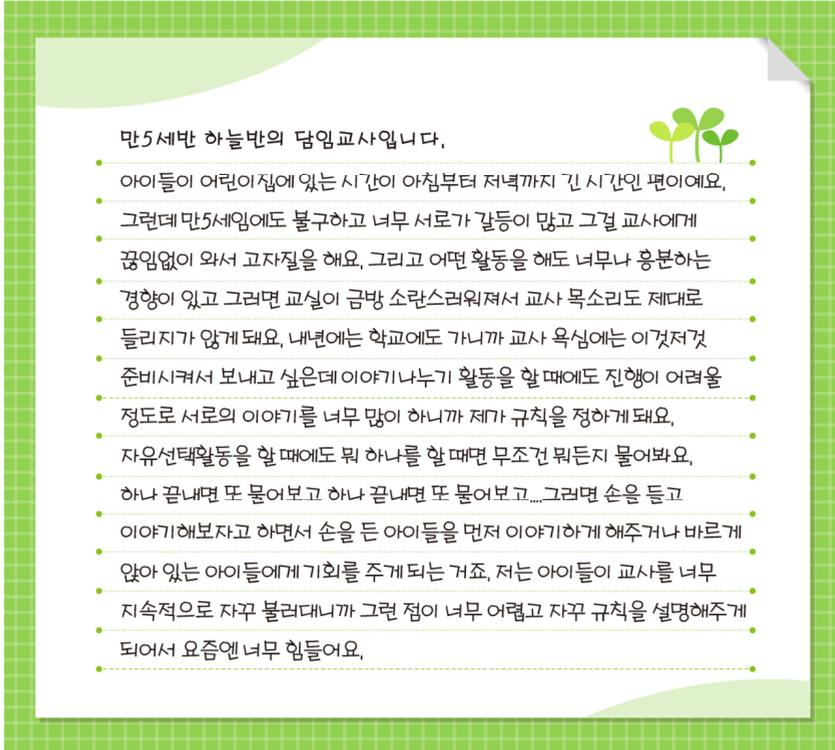
우리가 생각한 해결방안에서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반영된 원칙	반영되지 않은 원칙

💡 더 생각해 보아요!

▶ 반영되지 않은 원칙의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편지



만5세반 하늘반의 담임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인 편이에요,
그런데 만5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로가 갈등이 많고 그걸 교사에게
끊임없이 와서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도 너무나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교실이 금방 소란스러워져서 교사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게 돼요, 내년에는 학교에도 가니까 교사 욕심에는 이것저것
준비시켜서 보내고 싶은데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할 때에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규칙을 정하게 돼요,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에도 뭐 하나를 할 때면 무조건 뭐든지 물어봐요,
하나 끝내면 또 물어보고 하나 끝내면 또 물어보고...그러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서 손을 든 아이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해주거나 바르게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교사를 너무
지속적으로 자꾸 불러대니까 그런 점이 너무 어렵고 자꾸 규칙을 설명해주게
되어서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 소요시간 : 20분

▶ 활동방법

1. 사례를 읽어본다.
2. 팀원들이 함께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워크북에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교사였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 생각해 보기
3. 각 팀 별로(혹은 수가 적을 경우 교사 전체) 교사와 아이 모두의 입장이 절충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한가지로 정리한다.

‘두 번째 편지’ 활동

위 편지 내용을 읽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진행자용 팁

유아유치반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사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인들의 입장에 대입하여 공감해보도록 시도할 수 있다. '조직 내 규칙과 약속이 많아 조직의 리더가 규칙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유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가진 어려움	아이가 가진 어려움

내가 이 교사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왜 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걸까요? 내가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한 해결방안은?

‘두 번째 편지’ 활동

☑ 4대 기본원칙 렌즈로 바라보기



- ▶ 소요시간 : 20분
- ▶ 활동방법

각 팀이 앞에서 정리한 해결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4대 기본원칙 중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반영되지 않은 원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진행자용 팁

앞의 첫 번째 편지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4대 원칙의 내용을 각각 정리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 해결방안은 영유아 이익과 운영의 편의 중 어떤 점을 더 먼저 생각한 것일까’ 등과 같은 고민을 모든 교사들이 함께 다루어보는 과정과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도록 한다.

우리가 생각한 해결방안에서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반영된 원칙	반영되지 않은 원칙

더 생각해 보아요!

- ▶ 반영되지 않은 원칙의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까요?

📎 우리 어린이집의 인권나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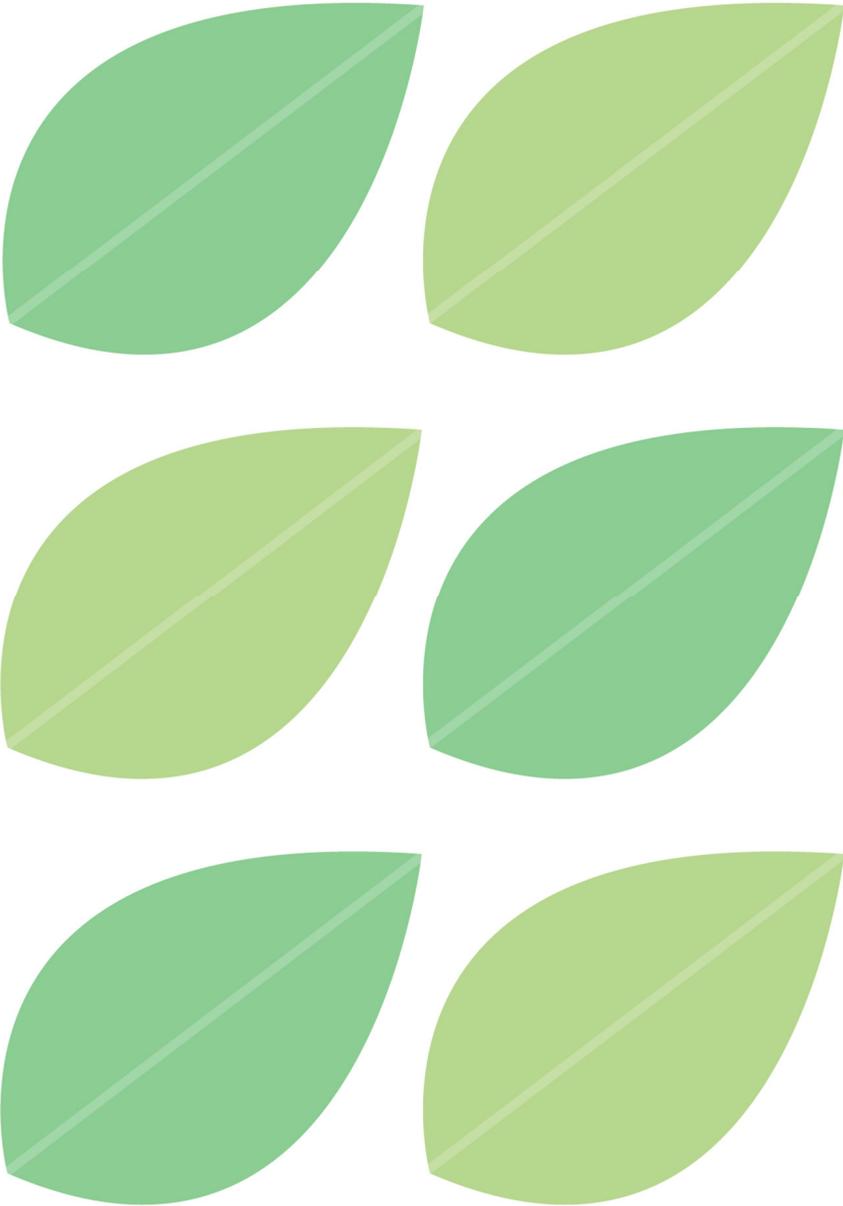
- ▶ 준비물 : 나무 그림이 그려진 큰 전지 4장, 나뭇잎 모양의 포스트 잇, 사인펜
- ▶ 소요시간 : 30분
- ▶ 활동방법

4대 기본원칙이 나무기둥에 쓰여진 전지 4장을 벽에 붙여 제시한다.
 각 팀 별로 원칙을 하나씩 정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포스트 잇에 한가지씩 사례를 적어 나무에 붙인다.
 활동 시간이 끝난 후 함께 살펴본다.

Tip 진행자용 팁

진행자는 아래 예시에서 어린이집에서 4대 기본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차별금지	생존, 보호, 발달	영유아 이익 최우선	의사존중, 의사결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 수에 충분한 놀이감 마련 -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세심한 태도 -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 - 놀이감을 성별로 구분, 제시하지 않음 -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환경의 구성 - 영유아에게 맞는 적절한 급간식 - 교실 내 휴식공간 마련 - 교실 내 마실 물을 제공 - 연령과 흥미, 발달에 맞는 놀이감, 활동 제공 - 충분한 바깥놀이 및 대근육놀이의 제공 - 개별적인 낮잠습관의 수용 - 위험한 공간의 표시, 모서리보호 대 등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 -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한 배변경험의 계획 -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 - 부모와 헤어지지 못하는 영유아가 부모와 급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공감해 줌 - 부모의 과도한 학습요구에 대해 영유아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 나누기 - 영유아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지원 - 영유아 반응을 관찰한 후 적절하게 개입 - 내가 알고 싶은 친구 옆자리에서 식사하기 - 개별적인 식사량과 식사시간, 식습관 존중 - 창의적인 미술활동 - 자연스런 놀이참여를 격려 - 계획안에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영유아 흥미나 요구에 의한 놀이를 지원





라. 2회차 교육자료: 교사용 워크북

교사용 워크북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우리 어린이집 워크샵의 목적은?

- 1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교사로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다 옹호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른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 원칙을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상황과 접목시켜 이해한다.
- 3 실제 사례들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아동권리존중으로 더 나아가는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빨간머리 앤의 생각

빨간머리 앤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림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50AozUdglU&list=PLVf3oVYZH_8vOX0supjCaCRRegPoUeoC2_&index=23

- ▶ 소요시간 : 15분
- ▶ 활동방법 :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다

내용소개

목사관에 방문한 빨간머리 앤이 그곳에 걸린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보며 자신의 감상을 말하는 장면이다.

앤은 그림 속 아이들 중, 예수님의 뒤에 멀리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아이를 고아였던 자신과 처지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앤은 그림 속 아이가 예수님의 뒤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도 다른 애들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남들 뒤에서 조심조심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예수님 이외엔 아무도 자기의 일을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빨간머리 앤의 생각’ 활동

- 우리 주변에도 그림 속과 같이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있나요?
내 주위에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아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파란 옷을 입은 아이’

우리 반의 관계지도 그려보기

우리 반의 관계지도

▶ 소요시간 : 20분

▶ 활동방법 : 위의 우리반 '파란 옷을 입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반 아이들과 교사인 나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그려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반 관계지도의 예시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교사인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의 관계지도를 그려본다.

- 내가 평소에 상호작용이 많은 아이들은 나로부터 출발하여 근접하게 그린다.
- 평소에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아이는 나로부터 멀리 있게 그린다.
- 교사인 내 쪽에서 상호작용이 출발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는 화살표방향으로 표현한다.
- 아이들끼리의 관계도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상호작용이 많은 경우 선의 굵기를 굵게, 적은 경우는 선의 굵기를 가늘게 표현할 수 있다.
- 아이들 전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일부만을 생각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 우리 반의 관계지도 그려보기

☑ 관계지도의 예시



만2세 교사 '나'가 그린 우리 반 관계도입니다.

- ▶ 김연수, 김필, 김찬규는 셋이 함께 놀이를 자주 하며 연수는 교사와 서로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은 편입니다. 필과 찬규에게는 교사가 말을 먼저 건네는 편이며 찬규보다 필에게 교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 ▶ 서진이 긍정적 표현을 교사에게 먼저 하는 편이며 진희는 입소환지 얼마 안되는 원아이기 때문에 교사가 평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 ▶ 유진은 소심한 아이여서 교사가 말을 많이 건네지만 울 때마다 달래는 때가 많습니다. 우석이는 놀이감을 계속 담고 쓰는 등 또래에게 주로 방해되는 행동이 많아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말을 평소에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 ▶ 현수와 유진이는 서로가 함께 놀이하긴 하지만 교사와의 특별한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은희와 민규는 각자 놀이하지만 교사의 관심이 덜 가는 아이들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4대 기본원칙 정리하기

4대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4가지 권리를 써 보세요.



첫 번째 편지

만 1세반 담임교사입니다,



- 저희 반 아이들은 만1세인데 너무 돌아다니기만 해요,
-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긴 있어요,
- 남자 아이인데 그 아이는 놀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돌아다니고
- 놀이감도 손에 쥐고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딱히 갖고 놀지는 않아요,
- 그런데 그 아이가 교실안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뛰어다니거든요,
- 그러면 꼭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 그 친구들은 원래 앉아서 놀이도 할 줄 아는데 결국 따라다니다가 뛰는
- 아이들이 셋 넷 늘어나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 한 아이가 교실을 어수선하게 만드니까 다른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것
- 같아 걱정됩니다.

▶ 소요시간 : 20분

▶ 활동방법

1. 사례를 읽어본다.
2. 팀원들이 함께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워크북에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교사였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 생각해 보기
3. 각 팀 별로(혹은 수가 적은 경우 교사 전체) 교사와 아이 모두의 입장이 절충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한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편지' 활동

위 편지 내용을 읽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가진 어려움	아이가 가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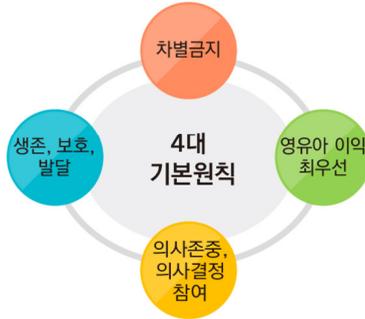
내가 이 교사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왜 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걸까요? 내가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한 해결방안은?

‘첫 번째 편지’ 활동

- 4대 기본원칙 렌즈로 바라보기



- ▶ 소요시간 : 20분
- ▶ 활동방법

각 팀이 앞에서 정리한 해결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4대 기본원칙 중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반영되지 않은 원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우리가 생각한 해결방안에서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반영된 원칙	반영되지 않은 원칙

더 생각해 보아요!

- ▶ 반영되지 않은 원칙의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편지



만5세반 하늘반의 담임교사입니다,

-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인 편이에요,
- 그런데 만5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로가 갈등이 많고 그걸 교사에게 끊임없이 와서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도 너무나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교실이 금방 소란스러워져서 교사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게 돼요, 내년에는 학교에도 가니까 교사 욕심에는 이것저것 준비시켜서 보내고 싶은데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할 때에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가 제가 규칙을 정하게 돼요,
-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에도 뭐 하나를 할 때면 무조건 뭐든지 물어봐요,
- 하나 끝내면 또 물어보고 하나 끝내면 또 물어보고...그러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서 손을 든 아이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해주거나 바르게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교사를 너무 지속적으로 자꾸 불러대니까 그런 점이 너무 어렵고 자꾸 규칙을 설명해주게 되어서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 소요시간 : 20분

▶ 활동방법

1. 사례를 읽어본다.
2. 팀원들이 함께 아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워크북에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교사였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해 보기
 - 내가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 생각해 보기
3. 각 팀 별로(혹은 수가 적을 경우 교사 전체) 교사와 아이 모두의 입장이 절충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한가지로 정리한다.

‘두 번째 편지’ 활동

위 편지 내용을 읽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교사와 아이가 가진 각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가진 어려움	아이가 가진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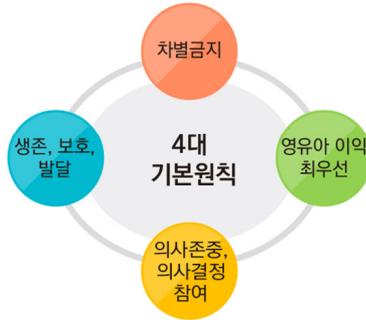
내가 이 교사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왜 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걸까요? 내가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한 해결방안은?

📝 ‘두 번째 편지’ 활동

- ☑ 4대 기본원칙 렌즈로 바라보기



- ▶ 소요시간 : 20분
- ▶ 활동방법

각 팀이 앞에서 정리한 해결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4대 기본원칙 중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반영되지 않은 원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우리가 생각한 해결방안에서 반영된 원칙과 반영되지 않은 원칙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반영된 원칙	반영되지 않은 원칙

💡 더 생각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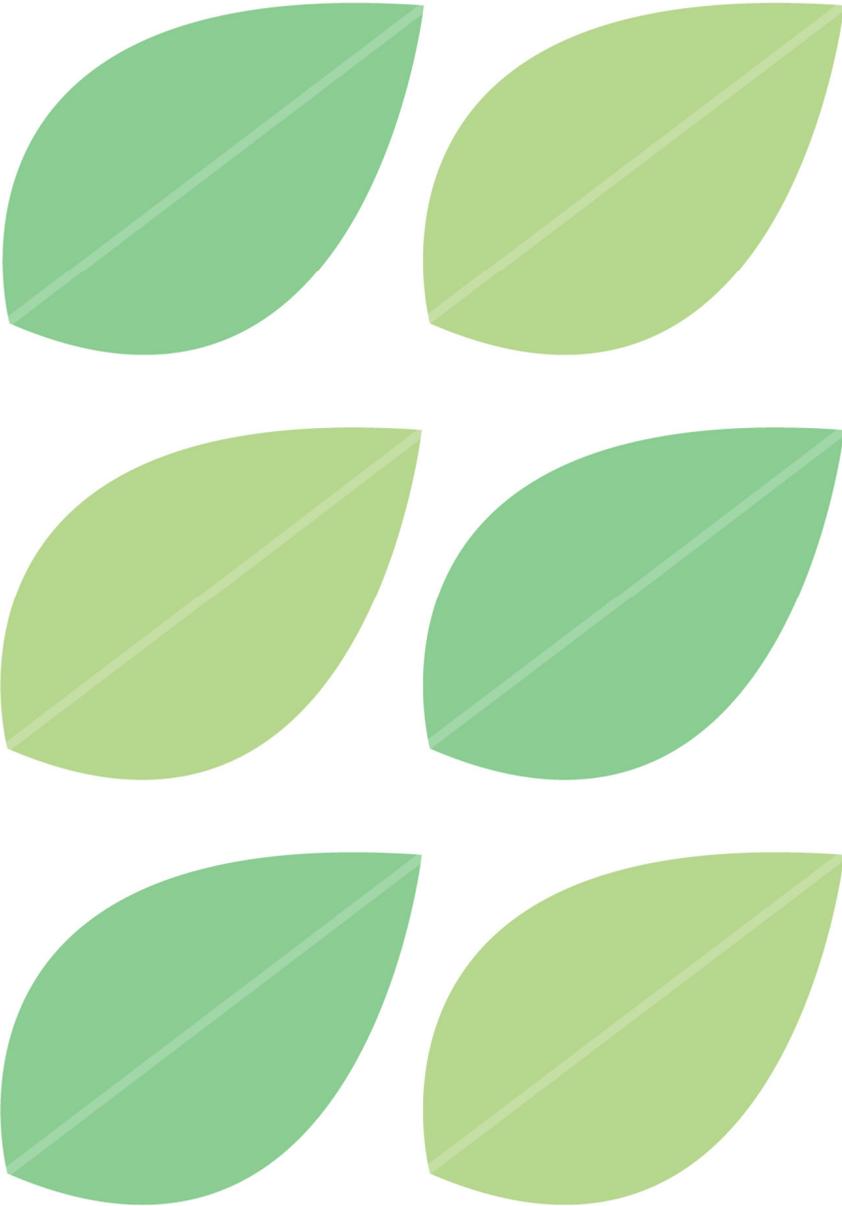
- ▶ 반영되지 않은 원칙의 경우, 어떻게 하면 그 원칙까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집의 인권나무 만들기



- ▶ 준비물 : 나무 그림이 그려진 큰 전지 4장, 나뭇잎 모양의 포스트 잇, 사인펜
- ▶ 소요시간 : 30분
- ▶ 활동방법

4대 기본원칙이 나무기둥에 쓰여진 전지 4장을 벽에 붙여 제시한다.
각 팀 별로 원칙을 하나씩 정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포스트 잇에 한가지씩 사례를 적어 나무에 붙인다.
활동 시간이 끝난 후 함께 살펴본다.





마. 4회차 교육자료

4차시



행복한 아이를 위한 동행

황인정 강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나는 이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는

이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
사랑 받고 존중 받는 것임을 안다.
어린이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은 또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 받고 보호 받으며 자란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바지 하는 사람으로 자란다.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인간이다.

Janusz Korczak 의 「아이들」중에서¹⁾

참고자료

1) 아누슈 코르차크(2002), 아누슈 코르차크의 아이들, 양철북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원칙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양육권 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²⁾

* 각 주 법에 따라 고려 내용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

- 아이의 성별과 나이
- 부모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
-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 부모의 경제적 여건
- 아이가 지금까지 지내온 환경과 그 변화로 인한 영향
- 아이 본인의 선택(12세 이상인 경우)

➡ **오늘도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진화합니다.**

참고자료 2) 이현재(2003). 자의 최선의 이익-미국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11(2) pp. 91-204.

유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별금지의 원칙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보건복지부

그림자료 <http://m.blog.naver.com/withbupyeong/221428985962>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영국 런던의 플레이스트리트(Play Street) 사례³⁾



Car Free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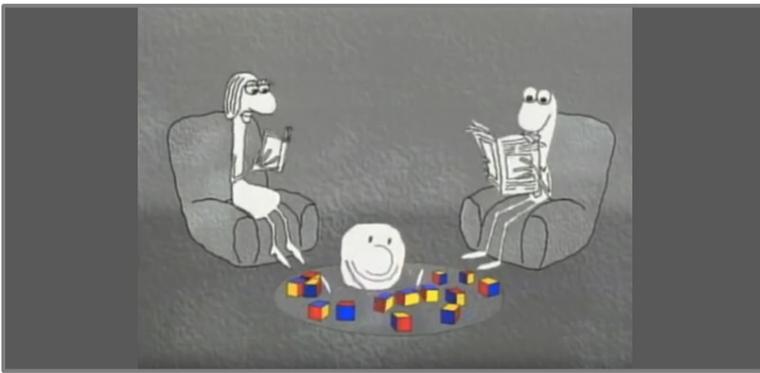


Play Street, Playing Out

참고자료 3) 20 June 2019 | London Play. www.londonplay.org.uk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의사존중 및 의사결정 참여의 원칙



➡ Children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mselves.⁴⁾
(모든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4) 유니세프 이슈 - 레옹과 어린이 권리 이야기(3:15~3:42) 27초
<https://www.youtube.com/watch?v=W5m-T-2qhVM>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의사존중 및 의사결정 참여의 원칙

자녀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참여하게 하나요?⁵⁾

-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책을 사 줄 때 내가 정한 도서목록을 강요하지 않는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할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외식을 할 때 무슨 음식을 먹을지 아이의 의견을 묻는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가족의 대화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하도록 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자녀의 개별 의견을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매일 매일 해야 할 학습지 등의 분량을 정해놓고 강요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5) 장지현, 이완정(2011). 유아 어머니의 아동권리존중 실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과 권리, Vol.15 No.3, 재구성.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어린이집에서 권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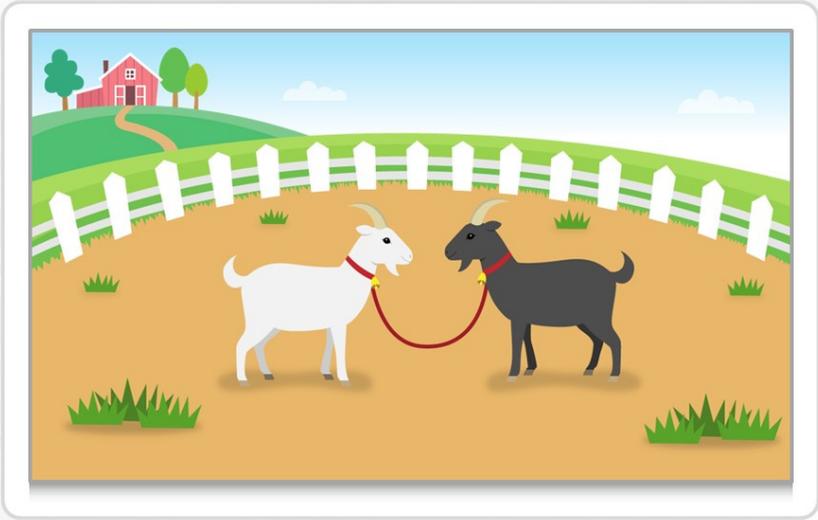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 ▶ 26개월 지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나흘째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바쁜 출근길에 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지호는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교실에서 나온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지호를 받아 안으려 하자 지호는 더 크게 울음소리를 내며 엄마품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지호에게 다정하게 달려며 지호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건넵니다. 지호는 계속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권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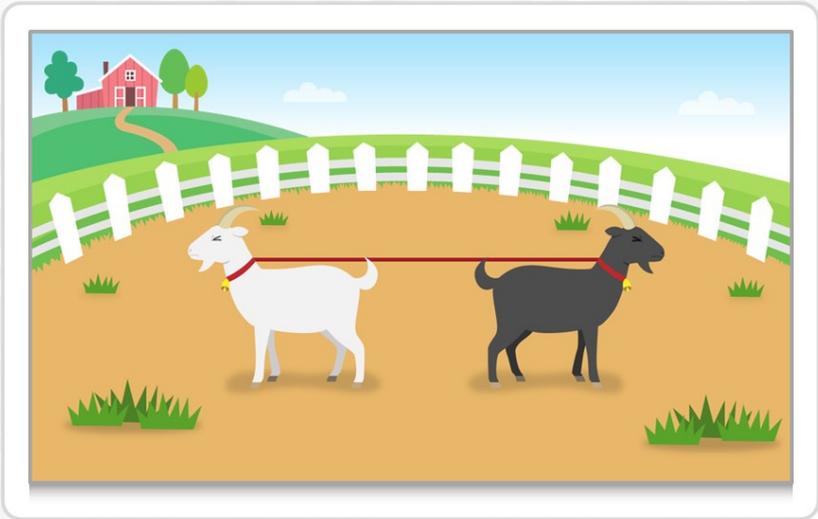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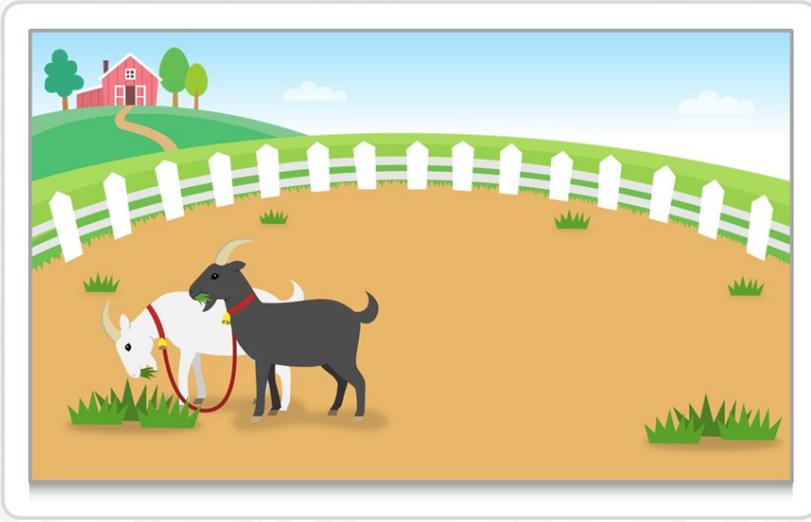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Ministry of Education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육아정책연구소
Ministry of Education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대하는 권리들

- ▶ 부모와 보육교직원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서
각자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하나의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의 행복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찾아볼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할까?

여름철 영유아의 물놀이 사례⁶⁾



참고자료 6) 구로구, 현대열린어린이집 사례 중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할까?

양육자와 아이들이 키우는 어린이집 텃밭 사례 ⁷⁾



참고자료 7) 구로구, 현대열린어린이집 사례 중에서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싫단 말이야

조정민 말 / 배창우 곡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 보고 국에 말아 줘
꼭 그래야 돼

➔ 존중 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과도 같아요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어린이를 춤추게 하는 것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노력해요.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